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 책임연구원 :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유재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발 간 사 ■ ■ ■

우리나라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1.5% 수준으로 이는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OECD 국가가 50%를 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도 결혼이라는 통과의를 거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 규범을 벗어난 심각한 일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임신 상당수가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기 보다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나 입양으로 귀결되고 있어 생명윤리문제, 아동의 인권문제, 청소년의 건강문제 등 주요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높은 학업중단율과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사회 안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많고, 생활 전반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의 특성 뿐 아니라 청소년기라는 특성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산 후 양육지원 단계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임신, 출산, 입양, 자녀양육을 연장선상에서 접근하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정책 개발과 범부처적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임신은 반복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이들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출구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연구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한 양육 청소년 한부모 뿐 아니라 입양 청소년 미혼모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생활주기별 정책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총괄보고서와 세부보고서 2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김지연 박사를 포함한 세 기관의 연구진과 연구 과정에서 자문과 여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연구위원	황여정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준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연구위원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아동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입양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입양을 둘러싸고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의 성장기, 임신과 출산, 입양 혹은 양육의 선택,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입양과 양육 간의 선택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제약 요인과 취약성 그리고 필요와 욕구 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쟁점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보다 심도 깊은 내용 분석을 위하여 입양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입양과 양육 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환경, 임신과 출산에서의 특성, 입양과 양육 간의 갈등,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시설 퇴소 후 생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최근 입양 제도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인 입양 허가 제도와 입양 숙려 제도를 중심으로 모색하고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입양과 양육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바, 본 연구의 주요 쟁점 사안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한부모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능력 강화, 현대적인 맥락에서의 가족 기능 강화, 사회적인 인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청소년 한부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입양특례법, 입양숙려제도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입양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입양을 둘러싸고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청소년 한부모의 성장기, 임신과 출산, 입양 혹은 양육의 선택,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환경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요인과 취약성 및 필요와 욕구사항을 파악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한부모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입양 아동과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가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함

2. 연구방법

-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과 양육을 둘러싸고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제약과 장애 요인을 고찰하고 입양과 관련한 제도의 변화 내용을 검토함. 학계와 시설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관련된 정책 이슈 및 쟁점 사항을 도출함
-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 현황 분석을 위해서 양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보다 심도 깊은 내용 분석을 위해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분석을 수행함
 - 양적 분석을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여건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며, 질적 분석을 위해서 입양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함
 - 주요 분석 지표는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환경, 임신과 출산에서의 특성, 입양과 양육 간 갈등에서의 특성,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시설 퇴소 후 생활, 정부 정책에 대한 사항임

-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함. 정책 방안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행적인 차원에서의 세부적인 정책 제언으로 나누어 제시함

3. 주요결과

1) 이론적 배경

- 선행 연구 결과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입양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의 연령, 사회경제학적 수준, 교육 수준과 교육에 대한 욕구, 직업과 직업에 대한 욕구, 가족 구조, 유아 입양에 대한 태도,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 월가족과 미혼부와의 관계를 포함한 사회 관계망으로 나타남
- 입양과 관련한 최근 주요 동향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가입과 가정법원허가제 및 입양숙려제도 도입 등 입양 절차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아동 유기, 청소년 한부모의 신분 노출, 입양 숙려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는 임신부터 출산 후의 전반적인 기간, 동 기간 중 임신 중 및 출산 전 기간, 그리고 출산 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문가 대상 FGI 결과 학계 전문가는 최근의 입양 관련 제도가 아동의 인권의 보장 측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시설 현장 전문가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제도 이행에 있어 청소년 한부모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함

2)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1) 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 환경 특성

- 입양 혹은 양육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족 해체와 빈곤이 가출과 학교를 중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가족과 학교라는 제도권으로 부터의 이탈은 청소년이 미혼부를 만나고 임신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후의 경제적인 자립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해체된 가족 안에서도 부모나 형제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입양을 포기하고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도 발견됨
- 취약한 환경 하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본인과 유사하게 경제적으로 자립적이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미혼부들을 만나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헤어지고, 이어서 만나게 되는 남자 역시 미혼부와 비슷한 유형으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입양이라는 악순환이 지속
- 대부분의 원가족과 미혼부 가족이 출산과 양육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적자에 대한 관념이 지배적인 한국 가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 발견됨

(2) 임신 · 출산에서의 특징

- 성관계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임신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대부분 피임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피임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황이었음
- 낙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 낙태할 것을 고려해 보았던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임신기를 보내 조산과 미숙아를 출산하고, 산전 후 우울증을 겪는 모습이 관찰됨

(3) 입양 · 양육 간의 갈등

-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 선택은 원가족 및 미혼부 가족의 반대, 미혼부 지지의 결여, 경제적인 취약성, 양육 및 부모됨에 대한 자신감 부족, 정부 지원에 대한 낮은 기대감 등 제약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강요된 선택” 인 것으로 나타남
- 불우한 청소년기, 부모됨과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 결여가 입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입양 보낸 후에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음

(4)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 입양허가제도에 따른 출생 신고 및 입양 숙려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 인지하고 있었음

- 출생 신고와 관련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입양인이 나중에 찾아 올 것이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취업 시 불이익 혹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과 같이 현재에 확실하게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이었음
 - 출생 신고 시 친부는 아니더라도 친모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양성 불평등한 상황을 모두 부당하다고 지적함
- 입양숙려제도가 입양을 포기하고 양육을 선택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 동의하고 있었지만 양육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고통의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5) 퇴소 후 생활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하고 있었음. 모성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청소년 지원 혹은 여성 지원 차원에서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퇴소 후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과업은 학업과 취업인데 적성에 대한 혼란이나 약한 의지와 같은 본인의 문제, 검정고시 이후 취업가능한 직종의 제한, 단순 기술 위주의 직업 교육 등 근로환경 제약 요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음

(6) 정부 정책과 관련한 사항

-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입양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와 비교하여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 당장에 필요로 하는 자녀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한부모 정책과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특히 청소년 상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지적하였으며,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자립 의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모든 면접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취업 시 불이익, 자녀의 건전한 발달, 또래 집단의 어울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 정부의 지원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의지를 꺾고 복지 수급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견됨
- 기타 사항으로 지자체를 통한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 미성년자로서의 제약 요인 개선 등을 지적함

4. 정책제언

-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최근 입양 제도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인 입양 허가 제도와 입양 숙려제도를 중심으로 모색하고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입양 허가를 위한 출생신고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서의 지나친 개인 정보 제공, 친양자관계등록부상에서의 친모 정보 제공, 출생 신고에서 양성 차별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입양숙려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부터 양육 및 자립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원가족 대상 상담 제공, 효과적인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입양과 양육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바, 청소년 한부모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능력 강화, 현대적인 맥락에서의 가족 기능 강화, 사회적인 인식 개선 방안을 지적함
 - 정부 지원의 사각 지대에 속하는 입양 보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미혼 임신과 입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 검정고시 비용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 홍보에서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및 방법	6
II. 이론적 배경	9
1. 주요 선행 연구 결과	11
2. 입양 및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동향	19
3. 정책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및 시설 관계자 FGI	30
4. 청소년 한부모 입양양육 선택 과정 모형 및 분석 방안	42
III.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양적 분석	45
1. 분석 개요 및 방법론	47
2. 주요 양적 분석 결과	48
IV.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질적 분석	71
1. 심층 면접 조사 개요	73
2. 주요 질적 분석 결과	79
V. 결론	149
1.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	151
2. 향후 정책 방안	162
참고문헌	169

표 목 차

〈표 II-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현황	20
〈표 II-2〉 해외입양 대상 국가별 현황	20
〈표 II-3〉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 현황	27
〈표 II-4〉 입양을 둘러싼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FGI 주요 내용	31
〈표 II-5〉 학계 전문가 및 시설 전문가 FGI 주제별 주요 내용	38
〈표 II-6〉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주요 분석 변수	44
〈표 III-1〉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 임신 및 양육 경험	49
〈표 III-2〉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 사회학적 주요 특성	50
〈표 III-3〉 부모의 경제적 수준 및 학력	51
〈표 III-4〉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 환경 특성 비교 분석	52
〈표 III-5〉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및 출산 자발성 여부	53
〈표 III-6〉 청소년 한부모의 낙태에 대한 인식	55
〈표 III-7〉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양육에 대한 인식	57
〈표 III-8〉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관	58
〈표 III-9〉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 관련 주요 특성	60
〈표 III-10〉 입양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62
〈표 III-11〉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인지도: 임신 및 출산 지원	64
〈표 III-12〉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인지도: 자녀 양육 및 한부모 지원	66
〈표 III-13〉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인지도: 일반 복지 제도	67
〈표 III-14〉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인지도: 청소년 지원 정책	69
〈표 IV-1〉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심층 면접의 주요 설문 내용	74
〈표 IV-2〉 심층면접 대상 청소년 한부모의 주요 특성	78
〈표 V-1〉 주요 분석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 환경 특성	153
〈표 V-2〉 주요 분석 결과: 임신·출산 및 입양·양육 단계에서의 특징	155

〈표 V-3〉 주요 분석 결과: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157
〈표 V-4〉 주요 분석 결과: 퇴소 후 생활	158
〈표 V-5〉 주요 분석 결과: 정부 정책 관련 사항	161

그림 목차

【그림 Ⅰ-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연구추진체계	5
【그림 Ⅰ-2】 연구 내용 및 방법	8
【그림 Ⅱ-1】 입양특례법 개정 전후 국내 입양 절차	24
【그림 Ⅱ-2】 국내외 입양 프로세스	25
【그림 Ⅱ-3】 청소년 한부모 입양·양육 선택 과정 모형	43
【그림 Ⅳ-1】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심층면접 진행 체계도	75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및 방법

제 | 장
서 |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아동 인권수준을 국격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3. 5. 24). 헤이그협약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우선 보호하되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입양이 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헤이그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그동안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국제 입양을 줄여야 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므로 아동인권 침해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헤이그협약 가입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 법원의 입양 허가제도’와 ‘입양 숙려제도’가 도입되었다. ‘가정 법원의 입양 허가제도’에서는 자녀를 입양 보내려면 가정 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하고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입양 숙려제도’ 도입 이후에는 친생모가 아동을 출생한지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입양 동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그동안 출생 신고 없이 아동을 입양 보냄으로써 입양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친생부모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 입양 아동의 인권이 한층 강화된 측면이라고 평가된다. 자녀 출산 후 1주일 간 자녀를 입양 보낼 것인지 직접 양육할 것인지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숙려기간을 둬으로써 친생 부모의 직접 양육 우선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국내 입양 제도가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강화되었지만 이러한 제도를 따라야 하는 많은 청소년 한부모들은 사회적 편견, 보수적인 가족 문화, 경제적인 취약성, 자립의 어려움 등 난관에 직면해 있다. 최근 개정된 입양 관련 제도들은 신생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또 다른 “아동”인 청소년 한부모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는 친생모는 출산한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미혼 청소년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해 청소년들은 출산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취업과 결혼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따라 한부모는 자녀 출산 후 최소 1주일 이상 스스로 자녀를 돌보아야 하지만 자녀를 잘 돌볼 수 없는 주거환경에 처해 있거나, 미혼, 기출, 학업 중단, 원가족과의 단절, 자립능력 부재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입양 당사자는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이다. 하지만 입양 보내지는 아동을 낳은 친생모를 배제하고 진정한 입양 아동의 권리를 논하기는 불가능하다. 바람직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친생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친생 부모 보호의 원칙을 따를 수 있고 아동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다. 친생모가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아동을 입양 보내는 경우에도 친생모와 사후에 건강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입양 아동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입양 아동과 친생모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친생모의 정확한 개인 정보가 입양아동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친생모가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여 입양 된 자녀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동의 인권과 청소년 한부모의 인권이 상충되지 않고 상생하는 관계여야만 한다. 이러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입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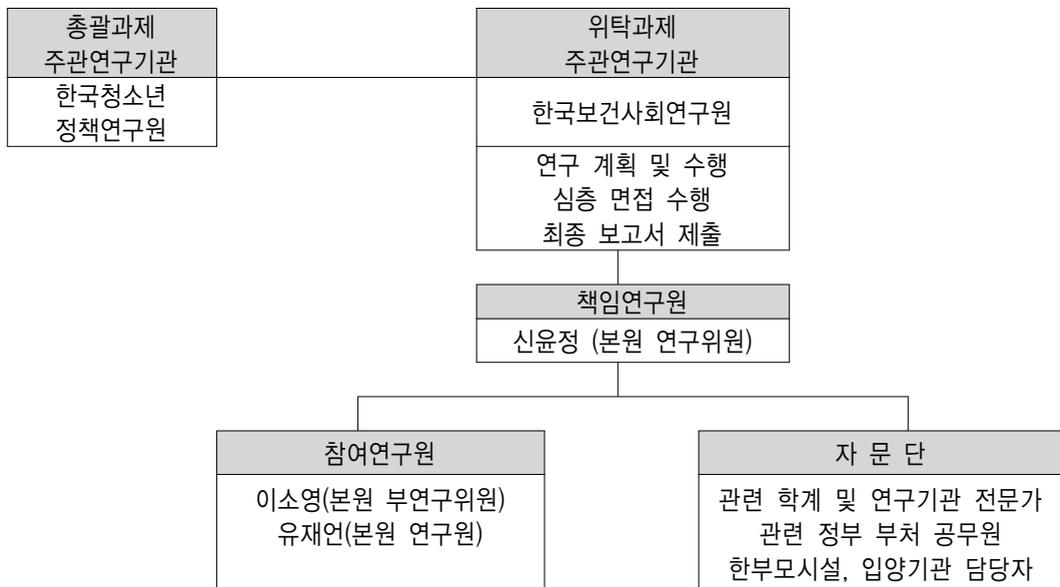
현재 국내 청소년 한부모 정책은 주로 모성주의적 관점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녀를 입양 보냈거나 혹은 위탁모에게 맡겨 직접 돌보고 있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의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청소년의 상당수는 출산 이전부터 학업을 중단하였고, 경제적인 환경도 매우 취약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일반 청소년 정책과 한부모 지원 정책 양쪽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녀를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치 않은 임신과 입양이 재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입양을 둘러싸고 현재 대두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려면 보다 폭 넓은 시각을 가지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입양 제도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을 심도 깊게 파악함으로써 입양을 둘러싸고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한부모가 성장 과정, 임신과 출산, 입양 혹은 양육의 선택, 그리고 그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사회·환경적인 특성, 제약 요인과 취약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 한부모들의 정책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자녀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갈등 상황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시설 퇴소 후 잘 알려지지 않은 뒷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인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2차년도 연구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협동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총괄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은 세부과제 중 하나를 책임지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추진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및 방법

“한부모지원법”에서는 24세 미만의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청소년 한부모”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법률적 개념을 광의로 적용하여 임신 상태에 있는 미혼 청소년, 출산하여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최근 혹은 청소년기에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는 미혼 여성까지도 청소년 한부모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과 양육을 둘러싸고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제약과 장애 요인들을 고찰한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 혹은 양육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입양 보내고 난 후 느끼는 후유증에 관한 연구 결과도 검토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의 가입, 최근 개정된 입양 특례법 및 입양 관련 제도 변화 내용을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한다. 그밖에 정부 발간물과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국내 입양 제도 변화와 청소년 한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4회에 걸친 전문가 FGI를 실시한다. 전문가 FGI는 학계 전문가와 시설 현장 전문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입양특례법 개정, 헤이그협약 가입, 입양 허가 제도에 따른 출생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입양숙려제도, 기타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된 정책 이슈와 쟁점 사항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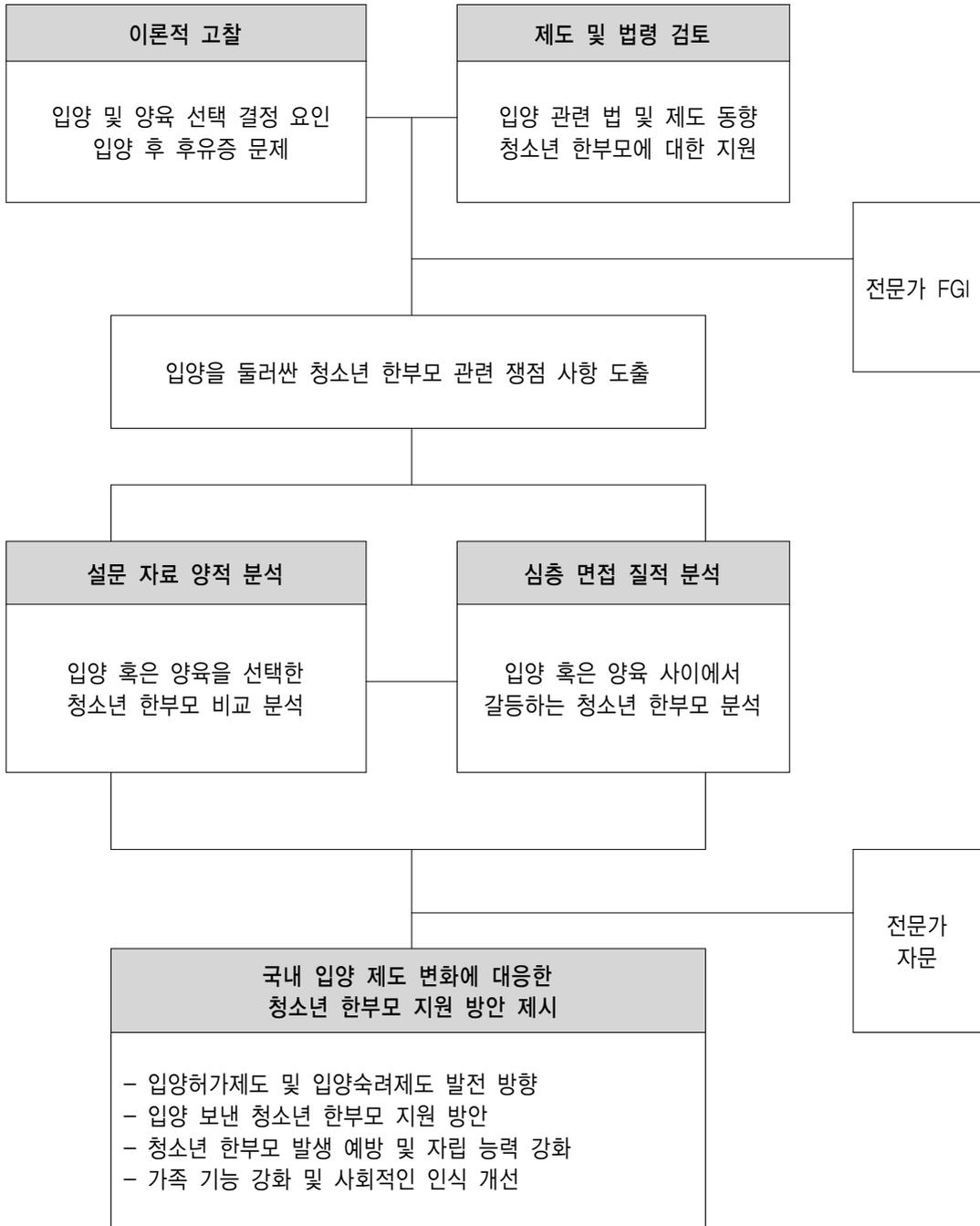
둘째,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보다 심도 깊은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분석을 수행한다.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주요 분석 지표는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환경 특성, 임신·출산에서의 특성, 입양·양육 갈등에서의 특성,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시설 퇴소 후 생활, 정부 정책에 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적인 분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여건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입양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양적자료는 기술 분석, 교차 분석, 카이검증을 통한 집단 간 차이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입양 관련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시설 관련자들을 통해 섭외한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연구진이 개발한 반구조화된 문항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녹취하여 전사하며 특징적인 점은 현지에서 수기로 기록하고 면접 후 연구진들은 모든 사례에 대한 각자의 분석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삼각검증 과정을 거친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방안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사항들을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거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행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인 정책 제언을 한다.



【그림 1-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주요 선행 연구 결과
2. 입양 및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동향
3. 정책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및 시설 관계자 FGI
4. 청소년 한부모 입양·양육 선택 과정 모형 및 분석 방안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주요 선행 연구 결과

1) 청소년 한부모 입양 및 양육 선택 요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여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가 그다지 풍부하지 않은 실정이다. 많지 않은 선행 연구들도 청소년이라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전 연령의 한부모에 관해 연구를 진행해 연구대상을 청소년 한부모로 한정할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발행된 한부모 관련 연구는 주로 한부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 자녀 양육비에 관한 연구(김미숙, 박민정, 이상현,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 2000; 김미숙, 2006; 김수정, 2003; 김혜영, 윤홍식, 2005; 박복순, 2004; 송다영, 2006; 윤홍식, 2004), 비양육부모의 부모역할에 관해서 진행되었다(유희정, 2001). 이들 연구대상의 초점은 청소년 한부모보다는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 한부모에 맞춰져 있다.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연구들은 발생 요인, 경로 및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김만지, 2000;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도미향, 정은미, 2001; 배미영, 2000; 윤미현, 이재연, 2000; 정경순, 2008; 천혜정, 배선희, 송말희, 송현애, 전길양, 2002)과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권(제석봉, 석창훈, 차명진, 이해정, 윤희정, 2008; 홍순혜 외, 2007)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도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왔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연구들은 출산과 양육(김혜영, 2010; 김혜영, 이미정, 이택면, 김은지, 선보영, 장연진, 2010), 생활실태, 원가족 경험, 지원 방안(남미애, 홍봉선, 2011; 박숙희, 2001; 사연경, 2002; 이현주, 2011; 이재정, 2003; 이종수, 2003; 정용순, 2003)을 연구하였다. 이에 반해 입양을 선택한 입양 청소년 한부모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한부모가 성인 한부모에 비해 위험 집단이며 취약계층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임신한 후 낙태, 학업중단, 출산, 입양 및 양육 등 중대한 의사 결정을 연이어 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가장 먼저 출산을 할 것인지 낙태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된다. 출산과 낙태의 선택지 중에서 출산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또다시 입양과 양육이라는 의사결정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 첫 번째 선택의 순간에서 다수의 청소년은 출산보다 낙태를 결정하고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여학생의 0.3%가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 중에서 약 30%만 출산을 선택하였다. 이 조사가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높은 비중의 청소년들이 임신, 출산, 낙태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양육보다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김혜영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커진다. 여전히 높은 비중의 임신 청소년들이 입양을 선택하고 있으나, 양육을 선택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늘어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1998년 전국 8개 시설에 입소한 양육 한부모 중 청소년 양육 한부모의 비율은 약 23%에서 2001년 약 41%로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강영실, 2002).

본 절에서는 임신과 출산 전후의 의사 결정, 즉 양육 및 입양의 선택에 있어서 청소년 한부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입양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은 모의 연령, 사회경제학적 수준, 교육 수준과 교육에 대한 욕구, 직업과 직업에 대한 욕구, 가족 구조, 유아 입양에 대한 태도,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 원가족과 미혼부와의 관계를 포함한 사회관계망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한부모의 연령과 직업 유무가 한부모의 양육 및 입양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안재진, 김지혜 20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한부모가 무직인 한부모에 비해 양육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낮았다. 노충래와 김원희(2004)의 연구에서도 여러 결정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나이가 어린 한부모일수록 양육보다는 입양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혜영 외(2009)의 연구도 한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직업, 그리고 교육수준이 아이를 양육하며 자립하는데 중요한 여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 계획된 임신인지의 여부, 임신 인지시기 등도 한부모들의 입양 및 양육선택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한부모가 이전에 임신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임신 경험이 있는 한부모보다 입양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노충래, 김원희 2004). 한편 임신 경로에서 10대 한부모의 경우 성폭행에 의한 임신인 경우 그렇지 않은 임신일 때보다 입양을 선택한다고 보고되었다(윤미현, 이재연, 2000).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들은 양육을 선택한 한부모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인 경우가 많았고, 임신 인지 시기가 늦은 경우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김혜영 외, 2009).

원가족의 구조와 동거여부도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 및 양육 선택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안재진과 김지혜(2006)의 연구에서 양육을 선택한 한부모의 경우 입양을 선택한 경우보다 원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들은 통제했을 때 원가족과의 동거는 입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원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가족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한부모에게 입양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안재진, 김지혜 2006). 반면 한부모의 원가족이 이혼, 별거, 사망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있거나 모두 없는 구조인 경우 양부모가족인 경우보다 입양선택 비율이 높았다(안재진, 김지혜 2006).

정용순(2003)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인 요인도 입양 및 양육의 선택에 중요한 결정요인이자 한부모의 양육 결정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이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입양을 결정한 한부모의 경우 입양결정이유로 경제적인 능력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강은숙, 김은나, 이숙자, 2010).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들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개선된다면 자녀 양육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김혜영 외, 2009).

(2) 심리·정서적 요인

자기결정권의 정도, 유아입양태도,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와 양육 가치관, 한부모의 장래에 대한 기대, 사회적 편견인식이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입양 및 양육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한부모의 양육 및 입양 선택에서 자기결정권은 양육 및 입양의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 강은숙 외(2010)의 연구에서는 양육을 선택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약 90%의 한부모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으며 타인결정권의 순위는 시설·기관 상담원, 미혼부, 원가족 순으로 보고되었다(강은숙 외, 2010). 한편,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의 경우는 원가족, 미혼부, 시설·기관 상담원 순이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자신의 의지로

양육을 결정하였고, 미혼부, 원가족 순으로 양육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김유순, 김은영, 원혜경, 이성희, 2008). 종합해보면 한부모의 양육 및 입양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크기가 크면 양육을 선택하게 되고 타인의 결정권이 크면 입양을 선택하게 된다.

유아입양태도란 한부모가 아기의 입양과 양육의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입양이라는 제도에 대해 갖는 관심 혹은 기대를 포함하는 태도를 뜻한다(노충래, 김원희 2004; Donnelly & Voydanoff, 1991). 우리나라의 10대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윤미현과 이재연(2000)의 연구에서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가 그렇지 않은 한부모보다 유아입양태도가 긍정적이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노충래와 김원희(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노충래와 김원희(2004) 연구에서도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의 경우 양육을 선택한 한부모에 비해 유아입양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는 한부모가 아기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 및 태도(Donnelly & Voydanoff, 1991)를 의미한다. 성영혜, 한성심(1996)의 연구에 따르면 10대 한부모가 부모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할 경우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입양을 선택한 10대 한부모들이 양육을 선택한 10대 한부모에 비해 부모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부모역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와도 일치한다(윤미현, 이재연, 2000). 이명순과 박주현(2008)의 연구에서도 본인의 부모역할 능력의 부족을 입양의 결정요인으로 꼽았다. 유아를 입양시키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유아를 기르는데 따른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유아를 기르는 것이 결혼 등의 장래의 삶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입양을 선택한 10대 한부모가 양육을 선택한 10대 한부모 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윤미현, 이재연, 2000; 천혜정 외, 2002). 이처럼 한부모의 장래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과 양육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다(윤미현, 이재연, 2000). 입양을 선택한 10대 한부모는 희망 교육수준, 이상적인 출산연령, 이상적인 결혼연령 항목에서 양육을 선택한 10대 한부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숙희(2006)의 연구에서도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의 경우 학업지속을 입양 결정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이숙희, 2006).

양육가치관에 관해서는 김혜영 외(2009)의 연구는“자녀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모로서의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규범적인 양육가치관을 가진 한부모들이 “좋은 부모로서의 사회적 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적인 양육가치관을 가진 한부모에 비해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양육가치관도 입양 및 양육의 선택에 있어서의 결정요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양육을 선택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다수가 양육 선택 이유로 “낳은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응답한 한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강은숙 외, 2010).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부모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및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들의 경우 사회적 편견이 개선된다면 자녀 양육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강은숙 외, 2010; 김혜영 외, 2009). 김혜영(2010)의 연구에서도 한부모의 양육결정시 방해요인의 하나로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을 지목하였다.

(3) 사회적 요인: 사회적 지지체계 및 관계망

사회적 지지나 관계망은 사회에서 제공되는 공식적·비공식적, 긍정적·부정적, 언어적·비언어적, 정서적, 물질적 지지와 도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노충래, 김원희, 2004; Tracy & Whittaker, 1990). 백혜정 외(2012)의 연구에서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대부분은 자녀 양육 및 자립에 대한 정부 지원 정보와 입양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 중 많은 수가 정부의 지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입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물질적인 지지가 입양과 양육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백혜정 외, 2012). 안재진과 김지혜(2006)는 사회적 관계망을 개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조직망 통합 정도인 구조적 측면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인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개인의 사용 가능한 지지출처, 지지형태, 만족도등을 포함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한부모에게 원가족과 미혼부는 출산 및 입양과 양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이다(노충래, 김원희 2004). 안재진과 김지혜(2006)의 연구에서는 특히 한부모의 입양 및 양육의 선택에 미혼부의 지지수준이 낮거나 미혼부와의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입양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원가족의 지지는 한부모의 양육과 입양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족과의 갈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부정적인 지지체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안재진, 김지혜 2006). 가족과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의 양육선택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원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원가족의 입양권유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한부모의 양육 및 입양의 선택에 있어서 원가족의 조언은 양육 및 입양 선택의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인 조언 내용 중에는 입양권유가 가장 많았다(김혜영, 2010; 김혜영 외, 2009). 정용순(2003)의 연구에서도 한부모의 양육 결정시 방해가

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원가족의 반대를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하나로서 원가족의 임신사실 인지도가 입양과 양육의 선택에 있어서 결정요인이었고 양육을 선택한 한부모 원가족이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보다 임신사실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김혜영 외, 2009). 원가족의 임신인지여부와 함께 미혼부와의 연락여부도 입양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노충래, 김원희 2004). 즉, 원가족이 임신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뿐만 아니라 미혼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도 양육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외(2009)의 연구에서는 미혼부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미혼부의 임신사실 인지 여부와 미혼부와의 교제기간, 그리고 미혼부와의 현재 관계가 입양과 양육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양육을 선택한 한부모의 경우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보다 미혼부의 임신사실 인지도가 높았으며, 교제 기간도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혼부와의 관계는 양육을 선택한 한부모가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보다 미혼부와 더 많이 교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부모의 입양과 양육의 선택에 있어서 미혼부와의 관계도 중요한 결정요인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부의 지지와 갈등은 모두 유의미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미혼부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양육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임신사실에 대해 미혼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그리고 미혼부와의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입양선택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김혜영 외, 2009; 이숙희 2006).

2)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 후 후유증 문제

우리나라의 한부모들은 약 80%가 출산한 자녀를 입양 보낸다(최승희, 2008).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외 입양아 가운데 한부모 아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고, 2008년에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 2,556명 가운데 한부모 자녀의 비중은 84.9%에 달하였다. 국내 입양 역시 한부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75% 이상이었다(이미정, 2008). 아이를 양육하는 제반 여건이 형성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청소년 한부모만을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 혹은 한부모의 규모 및 입양 보낸 그들의 자녀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없다. 그 이유는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남아 있어 한부모들은 자칫 피해를 입을까 출산과 입양에 관련된 일들을 비밀로 간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그 실태를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자녀를

입양 보내고 난 후 청소년 한부모의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연구도 별로 없다.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의 후유증에 관해서는 최승희(2002, 2003, 2008), 이명순과 박주현(2008)이 연구를 하였다. 노충래와 김원희(2004)도 시설설거주 한부모의 입양결정요인을 탐색하였으며, 허남순과 노충래(2005)는 입양을 선택한 한부모의 자녀 입양 후의 후유증을 일부 다루었다. 이러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자녀를 입양 보낸 청소년들은 상실감, 죄책감, 우울 등 입양 후의 정서적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부모가 자녀를 입양 보낸 후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억압되고 부인되어 정상적인 슬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최승희, 2008). 즉 한부모의 경우 자녀를 입양을 보낸 후 슬프기도 하지만 죄책감, 불안, 분노 등도 함께 경험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국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10대에 입양을 결정한 한부모들이 양육을 결정한 한부모들보다 더 슬퍼하며(Donnelly & Voydanoff, 1996), 자녀를 입양 보낸 후 겪게 되는 한부모의 심리적인 후유증은 미혼부와 원가족에 의해 강요는 입양 결정일 때 더 심해진다(Simone,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친생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 공개 입양이 많은 서양 한부모에 비해 출산과 자녀입양 사실을 숨겨야 하는 우리나라의 한부모의 심리적 후유증 정도가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부모들은 입양 후 5단계의 슬픔을 경험한다고 한다(Roles, 1989a, Roles, 1989b; 최승희, 2003 재인용). 슬픔의 첫 번째 단계는 무감각(numbness)과 부인(denial)의 단계로서 아이를 입양 보내고 생기는 상실의 고통을 방어하기 위해 심리학적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슬픔에 대한 감정을 차단시키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의 폭발(eruption of feeling)의 단계로서 감정 조절이 잘 안되어 우울, 슬픔, 공포, 두려움, 분노, 절망, 죄책감, 수치심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 단계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신적인 반응들은 두통, 알레르기, 근육통, 소화불량, 척추통증, 기타 통증 등의 신체적 반응을 일으킨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수용(accepting)하고 인정하는 단계이다. 이 때 자녀의 입양 결정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후회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자책과 분노로 연결되어 자신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슬픔의 세 번째 단계로 이행되지 못한다. 네 번째 단계는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accommodation and living with uncertainty)이다. 쉽게 말해 입양으로 인한 자녀의 상실을 받아들이고 불확실한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방법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이다. 슬픔의 마지막 단계인 재평가(reevaluation)와 재정립(rebuilding)의 단계는 스스로의 감정을 다시 평가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주위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단계이다. Blanton과 Deschner(1990)의 연구에 따르면 비공개입양을 선택한 친생모의 경우 공개입양의 경우보다 부정이나 부인(denial) 반응을 더 많이 보이며 수면장애, 식욕부진, 원기상실, 절망, 의존심 등이 더 심각했다. 입양의 대부분이 비공개입양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한부모 역시 이러한 부정적인 신체적 반응과 부정 및 부인의 심리적인 반응은 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를 입양 보낸 159명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최승희(2008)의 연구를 통해 한부모의 슬픔,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자녀를 입양 보낸 뒤에 겪는 한부모의 정신적 후유증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슬픔, 대처의 어려움, 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먼저 슬픔은 입양결정을 번복하고 후회할수록, 미혼부의 지지를 받을수록, 외적통제소¹⁾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커졌다. 대처의 어려움의 경우에는 입양결정을 번복할수록, 미혼부의 지지를 받을수록, 외적통제소가 높을수록, 미혼부의 입양 압력이 높을수록 커졌다. 또한 입양결정을 번복하고 후회할수록, 외적통제소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좌절의 크기는 커졌다. 이와 더불어 출산 후의 자녀관계와 슬픔대처행동에 따라 입양을 보낸 한부모의 정신적 후유증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유를 경험한 경우, 자녀와의 미래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클 경우, 이별식을 치루지 않은 경우 슬픔이 더 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양특례법과 함께 생긴 입양숙려제도를 고려해 보면 입양숙려기간 동안 자녀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입양을 선택한 경우 한부모가 느끼는 슬픔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처럼 한부모들이 자녀를 입양 보내고 난 후의 정신적 후유증은 슬픔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에 다 포함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한부모들이 출산 후 자녀와 첫 조우를 하면서 자신의 입양 결정에 대해 갈등과 후회,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자녀를 입양 보낸 후 강한 모성과 자녀를 잃은 상실감, 신체적 고통,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죄책감 등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다. 10대 청소년인 경우 성인에 비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데 출산과 입양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겪으면서 정신적 후유증도 더욱 깊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1) 자신이 수행하는 일과 자신의 생활이 운명이나 타인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드리는 정도(최승희, 2008)

2. 입양 및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동향

1) 입양 관련 법·제도의 최근 동향

(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이하 “헤이그협약”)은 국제 입양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의 매매 혹은 약취 행태가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것에 대한 우려 하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국제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93년 국제사법에 관한 제17차 헤이그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86년 국제 연합이 채택한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 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과 이를 기초로 1989년에 마련 및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연합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석광현, 2012).

헤이그협약은 1993년에 체결된 후 1995년부터 발효되어 201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90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이다. 한국과 국제 입양을 진행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6개 국가가 모두 협약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요 입양국가 중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2013년 5월 24일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서명하고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협약의 당사국으로 포함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5.24.).

표 II-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현황 (2013. 5 현재)

구분	당사국 현황
아시아태평양 (11개국)	Australia , Cambodia, China, India, Fiji, Mongolia, New Zealand,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Vietnam
아프리카 (15개국)	Burkina Faso, Burundi, Cape Verde, Guinea, Kenya, Lesotho, Madagascar, Mali, Mauritius, Rwanda, Senegal, Seychelles, South Africa, Swaziland, Togo
아메리카 (19개국)	Belize, Bolivia, Brazil, Canada , Chile, Colombia, Costa Rica, Cuba, El Salvador, Ecuador, Dominican Republic, Guatemala, Mexico, Panama, Paraguay, Peru, Uruguay, United States of America , Venezuela
유럽 및 중양아시아 (45개국)	Albania, Andorra, Armenia, Austria, Azerbaijan, Belarus, Belgium , Bulgar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 Estonia, Finland, France , Macedonia, Georgia, Germany ,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 Kazakhstan,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 Malta, Moldova, Monaco, Montenegro, Netherland , Norway , Poland, Portugal, Romania, San Marino,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 Switzerland , Turkey, United Kingdom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5. 24). “보건복지부 진영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 주: 우리나라와 국제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음영처리 함

표 II-2 해외입양 대상 국가별 현황

(단위: 명)

년도	계	미 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2008	1,250	988	8	76	20	45	18	78	16	1
2009	1,125	850	8	84	21	40	34	67	17	4
2010	1,013	775	6	74	21	43	18	60	12	4
2011	916	707	4	60	16	33	21	54	15	6
2012	755	592	4	49	10	26	13	45	9	7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5. 24). “보건복지부 진영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헤이그협약의 주요 목적은 국제 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 및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입양을 통한 유괴 및 인신 매매를 방지하고, 계약국 간의 중앙 당국에 의한 입양 승인을 통해 입양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다(헤이그국제사법위원회, 2011, 노충래 2012에서 재인용). 주요 내용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가정 보호 우선 정책을 추진하여 친가정 보호 및 입양 및 가정 위탁을 포함한 국내가정보호를 적극 추진한 후 여의치 않을 때 아동을 해외 입양 보내는 것을 고려할 것, 둘째, 입양 대상은 일상 거소(habitual residence)의 아동의 필요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할 것, 셋째, 친양자 제도의 추구, 넷째, 국제 입양을 담당하는 중앙 당국을 지정할 것, 다섯째, 입양 아동 출신국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진행된 입양은 아동 수령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할 것이다. 입양의 효력은 입양국의 입양 결정이 다른 계약국에서도 인정되며,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 신청을 위해서는 양친이 될 자가 본인 거소지의 중앙 당국에 신청하며, 양부모 조사를 위하여 수령국 중앙 당국이 입양 신청자의 적격 여부 및 입양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동 출신국에 송부해야 한다. 입양 결정을 위해 출신국 중앙 당국은 아동의 신원 및 입양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양 동의를 확보하고 입양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한다. 아동의 이동을 위해 양부모가 아동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국가기관은 출입국과 이주에 대한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국제 입양을 담당할 기관으로서 계약국가는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나의 중앙국가기관을 중앙 당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중앙 당국의 업무를 공적 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인 인가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목적과 주요 내용을 볼 때 헤이그 협약이 갖는 주요 의의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강조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친 가정보호를 우선시 하며 협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의 책임이 강조된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헤이그 협약 전문에서 천명하였듯이 “입양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근본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정부 당국을 비롯하여 공적·사적 사회복지기관, 법원, 사법기관,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 관련 있는 모든 당사자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 아동이 발생한 경우 가정 보호 우선 원칙을 고수하여 가정 위탁과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에 그렇지 못할 경우 해외 입양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제 입양의 당사국간 협력과 승인을 통해 입양과 관련한 남용을 방지하고 각 국가에서는 입양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 당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양과 관련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입양 제도 현황²⁾

우리나라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위해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입양 특례법 및 민법을 개정하고 대표적인 제도로써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 숙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아동 입양 절차의 주요 내용, 입양 특례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을 고찰해 본다.

우리나라의 가정입양지원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 아동 입양과 관련한 제도와 법률은 1950년대 초반부터 제정되어 오랜 역사를 보이고 있다. 이는 6·25전쟁 이후 전쟁 고아들을 해외 입양 보내면서 관련된 법 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수립한 이래 1961년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과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고 1976년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다.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2011년 「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의 가정입양제도는 2011년 8월 4일 개정하여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입양특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가정입양제도의 기본방향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입양 혹은 가정 위탁 등 가정 보호를 지원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시설 보호 보다는 입양 등 가정 보호 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 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입양 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며,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 비밀 입양 위주, 입양 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요건 성립을 위하여 양자 될 자격 및 양친될 자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1년 법 개정에 따라 입양 숙려제도 및 입양 동기가 입양 성립을 위한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³⁾. 기존에는 원가정 보호의 원칙보다 입양 상담이 먼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입양이 친모의 출산 후 병원 입원 기간 3일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정된 이후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 본 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2013) “아동분야사업안내”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양친될 자격(법 제10조)도 강화되어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될 자의 친생 부모 동의를 필요한데 이러한 입양 동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라는 “입양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숙려기간 동안에는 친생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동 숙려기간 동안 입양기관은 친생 부모가 입양에 동의하기 전에 직접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내용, 입양의 효력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숙려기간이 끝나고 친생 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를 위한 구비서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에는 친생 부모의 입양동의서, 친생 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국내 입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친생 부모 혹은 후견인이 입양기관에 아동의 보호를 의뢰하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인수하여 입양이 완료될 때 까지 후견인 직무를 행한다. 입양시설의 장은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아동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양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등록, 양친될 자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 가정법원 허가, 친양자 입양 신고, 사후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가 늘어났다. 이러한 추가된 절차 중에서 청소년 한부모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 입양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등록, 가정법원 허가, 친양자 입양 신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보호 의뢰를 받은 아동 및 친생 부모의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친생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양 사유와 입양 동의 및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하여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로서 입양동의서,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범죄 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입양 대상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입양을 신청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은 후 출생 신고하여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한다. 입양 대상 아동이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기 전까지 아동은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서 계속 기재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자격을 갖게 된다.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 부모는 가정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친양자 입양 신고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입양 아동이 친양자 지위를 갖게되면 한부모와 입양 아동 간의 친생 관계는 종결된다.

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 입양 기관의 장은 입양 아동과 아동의 기록 및 소유물품을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하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아동의 인도 결과를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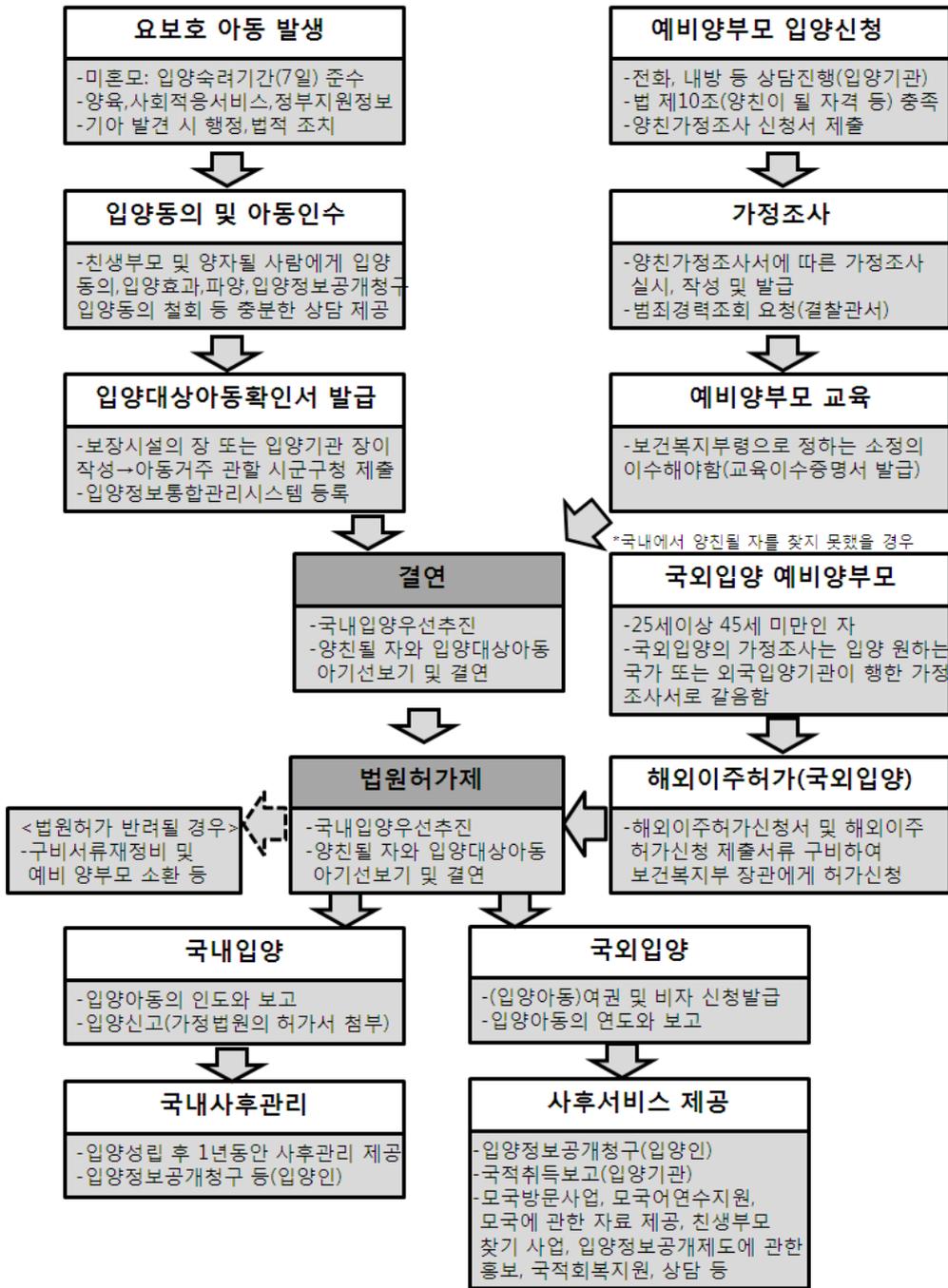
입양이 성립된 이후 1년 기간 동안 입양 시설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사후 관리의 내용으로는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 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입양 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 요원 배치가 포함된다.

한편,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혹은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파양 청구에 대한 판결을 확정하고 심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은 가정법원 소재지 지자체에 통보된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3. 8). “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그림 II -1】 입양특례법 개정 전후 국내 입양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2013). 「아동분야사업안내」

【그림 II-2】 국내외 입양 프로세스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제도 현황⁴⁾

본 절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임신부터 출산 후, 임신 중 및 출산 전, 그리고 출산 후로 구분하였다. 임신부터 출산 후 전반적인 기간에는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정보 제공, 각종 상담과 교육 사업을 포함하는 초기위기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임신 중과 출산 전에는 산모의 건강과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숙식 및 분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미혼모자 시설을 통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입양숙려기간 동안 산후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자녀를 출산 한 이후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청소년미혼모의 학습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지원, 자립 지원, 주거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러한 단계별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3>과 같다.

(1) 임신 ~ 출산 후

초기위기지원은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부모의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체계이다. 수행기관은 전국 16개 시도 소재의 미혼모가족지원센터, 미혼모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7개소이다.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병원비와 생필품 등 경제적인 지원과 자조모임, 문화 활동, 교육 등이다. 사업은 한부모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하며, 한부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 출산과 양육 시 응급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에 있다.

4) 여성가족부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에서 주요 내용을 참조하였다.

표 II-3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 현황

시기	사업명	지원 내용
임신~출산 후	초기위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발생시 출산비, 아이병원비, 분유/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 • 상담을 통한 한부모/부자의 정서 지원 • 자조모임,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임신 중 출산 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카드)	•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에게 산전 진찰 등 의료비 지원 (50만원 이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 이내)
	미혼모자시설 입소	•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양육 지원이 필요한 여성 숙식 및 분만혜택 지원
출산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후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 지원 - 가정 내 보호: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경우(35만원) - 한부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한부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25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최대 70만원)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원(25만원)
	출산장려금	• 지자체별 출산장려 축하금, 양육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월 5만원) - 부 또는 모가 만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자녀 추가지원 (월 10만원)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추가지원(월 5만원)
	생활보조금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월5만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드림스타트	• 0세(임신부) ~ 만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가정을 우선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검정고시학원 등록비 등 지원(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자립지원촉진수당	•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 자립지원(월 10만원)
	모자보호시설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및 자립 지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13) 「가정양육지원」

주요 사업으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 자녀 출산양육 및 응급상황발생 시 아이 병원비, 생필품 등 지원, 상담을 통한 한부모부자의 정서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공공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제공이다. 아이 병원비, 생필품 지원과 관련하여 1인당 70만 원 이하로 지원하며 생필품의 경우 1회당 1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다. 출산비, 아이 입원 등 병원비용의 경우 수행 기관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토록 하고 있다.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에 대해서는 수행 기관에서 직접 구입하여 지원하거나 구입 대상처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2) 임신 중 및 출산 전

정부는 임신부터 출산하기까지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모든 임신부(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포함)는 고운맘 카드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 의료비에 대해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맘편한카드”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산모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최대 120만원 (1일 10만원 범위 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분만으로 인한 진료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일 사용 한도와 관계없이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이 가능하다.

미혼의 임신부 또는 출산후 6개월 미만의 한부모는 미혼모자시설 이용을 신청하여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 현재 미혼모자 시설은 전국에 걸쳐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782명이다. 미혼모자시설에서의 보호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보호 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더 연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미혼모자시설에서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숙식 무료 제공, 분만의료혜택, 기타 경비 지원, 자립 지원 등이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분만 의료 혜택은 청소년 한부모를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며 지역 내 병원 및 보건보 등을 지정하여 검진받도록 하고 있다. 이상 분만 등 의료 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한부모 특수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미숙아를 분만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보장시설의 수급자로 지정될 경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자립지원으로 바리스타, 네일아트, 미용 등 직접 교육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성

교육과 상담 지도도 하고 있다.

한편, 2013년 4월 5일부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입양 숙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로서 숙려기간 1주일 동안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한다. 가정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미혼 한부모에 대해서는 산후지원인력 가정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경우 35만원을 지원받는다. 한부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한 미혼 한부모에 대해서는 산후지원인력 인건비로 25만원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4.5.).

(3) 출산 후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 후에는 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주거생활지원, 학습지원, 자립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서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축하금으로 다양한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0~2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 소득계층에 무관하게 “양육수당”으로 월 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는다.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가족 중 만 12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 월 1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자녀의 보육을 위해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경우 정부지원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⁵⁾. 아동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의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학업이 단절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로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에게 학원 등록비 및 교재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검정고시

5)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 보육시설이 별도로 특별 활동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본인 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학습비를 연 154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대안학교 등록비도 검정고시 학원비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이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배우는 청소년 한부모 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를 포함한 고등학교 교육비 실비 전액이다.

자립촉진수당으로서 자녀 생후 만 24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기초수급권자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가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조기 자립 기회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생활 지원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과 모자 보호시설이 있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이면서 일정기간 숙식 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2년 이내이며 연장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한부모이지만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미혼모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2년 이내이며 보호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총 23개소,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은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모자보호시설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혼모자시설 혹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역시 모자가족으로 시설 입소 대상자에 포함된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보호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3. 정책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및 시설 관계자 FGI

본 연구는 2013년 4~5월 중 4차례에 걸친 전문가 FGI를 통하여 아동 입양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과 관련 논의를 하였다. 이 FGI에는 학계 전문가와 시설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4회에 걸친 전문가 FGI는 본 연구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입양을 둘러싼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관련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FGI의 주요 주제는 아래 <표 II-4>와 같다.

표 II-4 **입양을 둘러싼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FGI 주요 내용**

일시	주요 논의 사항	전문가 명단	비고
1차 ('13 4. 5)	- 개정 입양 특례법 현황 및 주요 이슈 - 아동권 대 부모권 - 아동 유기 문제 및 해결 방안 - 아동 입양 관련 현행 이슈	법 관련 전문가 4명 아동·가족 전문가 2명	전문가 FGI
2차 ('13 4.12)	- 입양특례법 및 입양숙려제도 현황 - 아동 입양 및 청소년 한부모 현황 - 입양 기관 및 한부모 시설에서의 지원	법 관련 전문가 2명 사회복지 전문가 2명	
3차 ('13 4. 24)	- 입양특례법 개정 후 한부모자 시설 및 입양 시설 현황 - 양육 청소년 한부모의 애로사항 -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방향성 - 청소년 한부모 심층면접에 대한 조언	미혼모 시설 담당자 3명	시설 관계자 FGI
4차 ('13 5. 9)	-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기관 현황 - 입양허가제에 따른 출생신고 이슈 - 입양 아동 기록 보관 및 정보 열람 - 입양숙려제도 및 관련 정책 이슈 - 청소년 한부모 심층면접에 대한 조언	미혼모 시설 담당자 1명 입양 시설 담당자 2명	

1) 전문가 FGI 주요 내용

(1) 개정 입양 특례법

전문가들은 현재의 개정된 법 자체가 문제없다고 보았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동권리협약(CRS) 준수 및 아동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입양특례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선진적으로 개정된 현행법을 다시 후진적으로 재개정 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았다.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그동안 입양절차가 비정상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입양현실과 현행 입양특례법 간 괴리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법체계를 다시 개정하는 건 입양기관들의 이익을 보호할 뿐 한부모와 입양인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고 있는 아동의 증가와 같은 문제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았다. 최근에 아동유기가 급증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모권 포기를 인정하도록 입양특례법을 재개정하여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동유기가

증가하는 현상은 입양허가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출생 신고 작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어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수를 줄이는 단기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출산을 하지 않고 낙태를 선택할 한부모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현행 입양특례법을 유지하면서 어떤 정책안이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현재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입양 감소 통계는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허가까지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입양 통계가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 시점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일정 수준까지 점차 늘어갈 것으로 보았다.

(2) 헤이그 협약 가입

입양되는 아동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헤이그 협약 가입은 아동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입양 당사자는 친부모가 아니라 입양을 하는 부모와 아동이며 다만, 친생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아동과 아동의 복리가 충돌된다는 점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부모권 보다는 여성의 권리라는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다고 하였다. 이에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모가 자녀를 키워야 할 권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키우지 않을 권리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권리를 강화하고, 키우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낙태 허용 등)보다 폭넓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입양허가제도와 입양숙려기간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일 뿐 헤이그 협약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입양숙려기간 조정과 입양허가제를 수정하는 건 헤이그 협약 가입에 방해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였다. 헤이그 협약 자체에는 숙려기간을 7일로 정하지 않고 출산 후에 입양 동의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입양숙려기간 7일은 국내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숙려기간은 현실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점으로 인해 헤이그 협약 가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3) 입양 허가를 위한 출생 신고

출생신고는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아동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름으로 출생신고 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입양특례법은 양육권을 강화하고자 한 측면이 있었으나 실행되는 과정에서 아동 출산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신원노출 문제는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는 시기부터 제기된 문제였으나 그 당시에는 묻혀 있다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출생신고의 문제와 입양 문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았다.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공시’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공시 정보가 지나치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법무부도 일부사안 기재 등에 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법률, 규칙,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 관장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주장만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법원,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한편, 현행 입양허가제하에서는 입양까지의 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입양기관이 그 기간 동안 아동을 돌볼 여건이 안 되므로 입양특례법에서 입양허가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양을 기다리는 동안 입양할 예정인 부모를 위탁가정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4)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한 사항

현재 체계로는 친생모와 입양 아동간의 관계가 친생자입양증명서에서만 기록이 남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일부증명 제도를 이용하면 혼인 외 자녀와 전혼자녀는 기록이 되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일부 증명’이라는 제목이 기재되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목에서 ‘일부 증명’이라는 문구를 빼다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조문 일부만 수정해도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창설창본이 가능한 기아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찾을 방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친모가 동의했을 때만 입양인이 친모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으나 친양자입양관계등록부에는 ‘입양인이 성인이 되면’이라는 조건만 있어 두 법 조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5) 입양 숙려제도와 관련된 사항

입양숙려제도 7일 동안 모든 한부모의 입양 선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낙인 등의 이유로 입양을 결정한 한부모들은 출산 후 입양결정 의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신 기간 충분한 정보제공과 출산 후 자녀양육 경험이 늘어난다면 양육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양숙려기간에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신생아가 아픈 경우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70만원을 지원하려는 정책안은 현금이 아니라 의료비 등 현물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한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기관의 평가와 한부모들의 평가가 상이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십대 임신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보다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는 입양숙려제 제외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 숙려제도기간에 제공되고 있는 지원을 볼 때 동 정책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배제시키는 것이 청소년 한부모들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입양동의와 입양배치 동의를 구분한다면 입양숙려기간에 아동유기가 되는 걸 줄일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인도의 사례와 같이 입양숙려기간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배치 동의를 한 달 정도로 늘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6) 기타 제도 개선 사항

출산한 부모의 신원을 비밀로 보호하는 익명출산제도 도입이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익명의 영아 유기가 불가피하다면 유럽의 경우처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입양기관들은 기아호적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한부모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되 입양 동의가 이뤄지면 입양기관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2) 시설 관계자 FGI 주요 내용

학계 및 담당 부처 공무원들은 현재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에, 시설 관계자들은 아동 인권 보장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들이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너무나 서둘러서 이루어져서 해당 기관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았다.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정 입양 특례법

대부분 시설관계자들은 입양특례법 개정의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성급하게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아동의 권리는 강화시켰지만 친생모의 인권은 충분히 존중되지 않았으며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보육원에 입소하는 아동이 늘고 있다고 하였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망 없이 시행되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입양특례법 개정 준비과정에서도 준비가 미흡하였으며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아호적’을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다가 2012년 7월에 갑자기 ‘기아호적’ 도입이 무산된 것을 예로 들었다.

(2) 헤이그 협약 가입

헤이그협약 가입을 위해 입양 관련 제도들이 현재처럼 진행되는 것을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입양특례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헤이그협약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건 맞지만,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온전한 가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청소년 한부모가 보호받고, 가정이 탄탄해지면 자연스럽게 아동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한부모자시설은 2015년 기관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며 사회적 분위기가 입양은 그르고 양육이 옳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입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면 입양특례법 개정 직후 혼란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3) 입양 허가를 위한 출생 신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부모 입장에서는 출생신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우려하였으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은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아동 입양 거래를 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남아, 장애아의 경우 입양선호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입양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겨둬야 하는 친생모 입장에서는 부담된다고 하였다.

(4)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한 사항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성인 입양인이 친생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일부 친생모들은 입양인이 찾아올까봐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입양인이 성인이 되어 친생모를 찾고자 할 때 친생모의 반응은 제각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입양인이 친생모를 찾고자 할 때 친생모 주민등록번호를 입양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일부 숫자를 ***으로 표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친생모 입장에서는 입양인이 친생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예고 없이 찾아올까봐 우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양특례법을 재개정 하기 보다는 입양특례법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성인이 되어 한국에 돌아와 친생모를 찾으려 목소리를 높이는 입양인의 경우는 이들이 입양된 시점이 정보 관리가 부족한 1980년대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입양기관이 친부모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어 1990년대 이후 입양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입양기관이 성인 입양인과 친생모를 연결해 주거나 친생모가 입양인을 만나길 거부할 때 서로의 입장을 설명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친양자제도 서식에 친생부모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입양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개정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성인 입양인이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자입양관계등록부로 친생모 정보를 열람하게 되면 친생모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양인이 정보 열람을 청구했을 때 친생모가 정보 공개 수준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친양자 입적 등에 관하여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입양특례법 체계에서 파악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입양아동이 파악되는 경우 친생모 가족관계등록부에 다시 기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악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이 어느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지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5) 입양 숙려제도와 관련된 사항

기본적으로 시설 전문가들은 입양숙려제를 찬성하고 있었다. 입양기관에서도 법적기한은 7일이지만 실제로는 8박 9일 이상으로 입양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실제로 입양보다 양육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인 것으로 보았다. 입양기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입양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에 양육으로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양숙려기간 일주일 동안 이미 내린 입양 결정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동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는 맞지만 숙려기간 마지막 날 친생모는 대성통곡을 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픔을 두 번 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오히려 원가족 부모들이 친생모의 입양의사가 양육으로 바뀔까봐 숙려기간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6) 기타 제도 개선 사항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의 복잡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주소지인 경우에는 등록 처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리지만, 다른 주소지인 경우 보름 이상 걸려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등본에서는 기관장 밑으로 출생신고 되도록 완화되었다. 입양숙려기간과 입양허가에 대한 관할부처의 행정기준이 입양특례법 시행 초기보다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로 보았다.

미성년자인 청소년 한부모들은 부모 동의가 없으면 입양을 시킬 수 없어 부모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부모 동의가 없으면 청소년은 입양을 보내지 못하는데 부모와 단절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친생모가 청소년인 경우 친생부가 성인이라든 원가족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부모에게 출산을 알리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부모 동의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았다.

출생신고를 할 때 친생부 이름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친생모 이름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도 지적하였다.

일시	학계 전문가	시설 전문가
입양 특례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변화로서 개정된 법에는 문제가 없으며 재개정은 후진적인 발상임 • 베이비박스 아동 유기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입양 특례법을 재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아동유기는 입양허가제 도입 때문이 아니라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임 • 현행 입양특례법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개정의 방향성은 맞으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성급하게 추진되었음 •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망 없이 시행되어 아동 유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임 • 아동의 권리는 강화시켰지만 친생모 인권은 존중되지 않았음
헤이그 협약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인권보호측면에서 당위성 있음 •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는 여성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함 • 입양허가제도와 입양숙려기간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헤이그협약의 요구 사항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친모가 보호받고 가정이 건실해야 함 • 헤이그협약 가입을 위해 입양 관련 제도들이 현재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음 • 입양기관 운영 한부모자시설은 2015년에 폐쇄되는 상황이라 큰 문제 발생될 우려가 있음
입양 허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신고는 개인 인권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 • 출생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문제로서 공시 정보가 지나치다는데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입장에서는 출생신고가 부담스러운 상황임 • 취업에서의 불이익, 불법 입양의 부작용 우려 • 입양 보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계속 남아 있게 됨
가족관계등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부증명제도에서 “일부증명” 문구 기재 삭제 필요 • 입양특례법에서와 같이 친모 동의 하에서만 친모 인적사항이 공개되도록 “친양자 입양관계등록부” 요건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인이 정보 열람을 청구했을 때 친생모가 어느 정도까지 정보 공개를 원하는지 수준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파양되는 경우 친생모 가족관계등록부에 다시 기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정법원의 개입을 통한 판단이 필요
입양숙려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결정 후 의사가 달라질 수 있어 양육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입양숙려기간 현금 70만원 산후조리지원보다 의료비 등 현물 지원이 더 적절함 • 숙려기간 중 한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 • 청소년 한부모를 입양숙려제도로부터 제외시키는 방안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내린 입양 결정은 숙려기간 일주일 동안 별로 크게 바뀌지 않음 •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맞지만 청소년 부모에게 아픔을 두 번 주고 있음 • 양육을 원하지 않는 원가족 부모들도 입양숙려제도에 반대하고 있음
기타 제도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 출산제도 도입 고려 • 기아호적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의 복잡성 • 미성년자 한부모가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 출생 신고시 친부는 아니더라도 친생모 이름은 반드시 기재해야 양성 차별 문제

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강화 방안

미혼모자시설과 입양 기관 담당자들이 제시하는 정책 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청소년 한부모는 원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원가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쉽게 연애를 선택하여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게 된다. 시설에 입소하여 지낼 때는 아동을 돌봐 줄 사람도 있고, 주변에 또래친구도 많아 잘 지내지만 원가족에 복귀해야 하는 시점에 문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한부모자시설, 공동시설, 모자원에서 생활하다가 아동이 6~7살 됐을 때 갈 곳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공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한부모시설, 한부모자시설도 시설 입소를 꺼리고 있어 특수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시설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간혹 엄마가 아동을 폭행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러한 걸 예방하려면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임신기간에 부모 교육이 필요하며 현재 시설에서는 양육을 결정했거나 양육을 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입양기관에서는 원가족 부모가 친생모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오히려 원가족에서 한부모자를 받아주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교육 지원을 할 때 이들이 기초 학력이 없다는 걸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평준화된 교육을 하는 학원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교와 연결되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청소년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배타적인 학교문화와 학교장의 보수성으로 인해 대안학교나 검정고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는 낙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입양을 선택하는 청소년 한부모 뿐만 아니라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고등학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출생신고에 부담을 느끼며 실제로 학교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한 학생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지원 금액의 현실화

사회적 분위기가 입양보다 양육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부모들이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지원책을 보다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았다. 이에 자립촉진수당 10만원, 검정고시 학원 150만원, 양육도우미 100만 원 등 지원 항목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거와 생계비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 현재의 지원액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기저귀, 분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되기 때문에 기저귀, 분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4) 자립 지원

자립 준비는 한부모자시설 기간보다는 원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네일아트, 미용, 바리스타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효과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소년 한부모가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맡아서 키워주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어린이집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를 안받아주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 입소에서 최우선순위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생후 100일이 지나야 이용 가능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한부모는 이 기간 동안 검정고시 준비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였다.

(5)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에 대한 의존 문제

한부모가 근로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는 경우가 생겨 자립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하여 4대보험을 적용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립을 안 하고 수급권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청소년 한부모

입장에서는 병원 의료비 등 지원이 많은 수급권이 저소득 근로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서 수급 유예기간을 준다면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근로할 수 있고 저축을 하고 주택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청소년 한부모가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수급권과 근로권이 상충하는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하였다 (은평구 ‘엔젤스토어’ 자립 사례 참고 필요).

(6) 사후 관리 프로그램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재임신 방지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입양을 보낸 청소년들을 위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입양을 보낼 때의 친생모 슬픔을 달래줄 수 있는 ‘건강하게 헤어지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입양 보낸 후 힘든 한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입양을 보낸 한부모에게 미술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입양을 시킨 한부모들은 시설을 서둘러 떠나고 떠난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된다고 하였다. 수요자 욕구와 기호를 고려한 문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제기되었다.

(7)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시설 담당자들은 앞으로는 청소년 한부모의 80~90%가 양육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3~4년 후에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제는 자립과 취업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양육 한부모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편견 개선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 개선은 전문가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한부모들이 자립하는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스스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여 한부모도 엄마라는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을 늘리고자 한다면 입양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입양을 보낸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청소년 한부모가 한부모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내실 있는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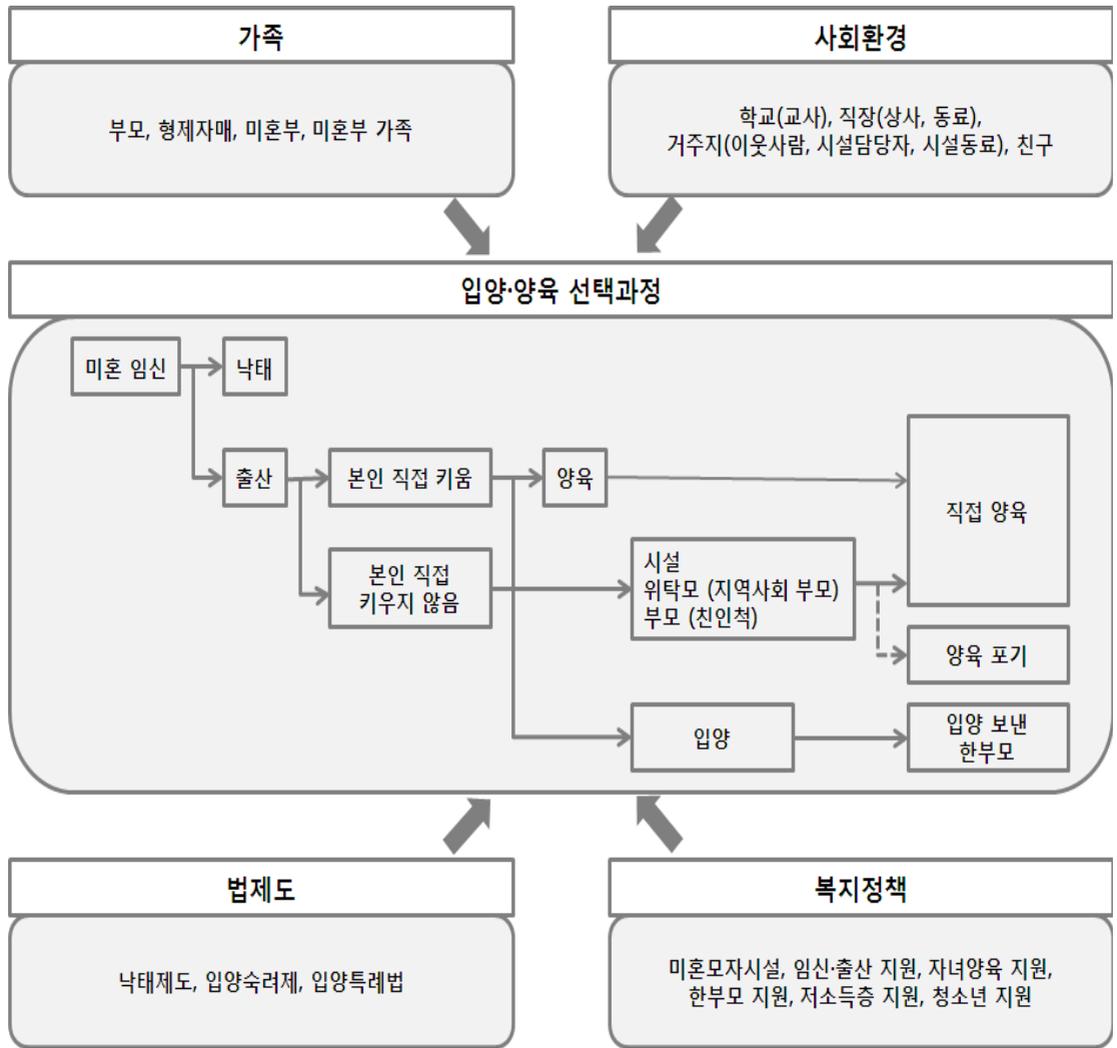
강조하였다. 사후 프로그램 내용에는 양육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지 말고 보다 앞으로 닥칠 양육의 어려움 등 폭넓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피임교육 등 사후관리도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4. 청소년 한부모 입양·양육 선택 과정 모형 및 분석 방안

앞서 고찰한 선행 연구 결과와 관련 정책 현황 그리고 FGI 결과 도출된 쟁점 사항들을 기초로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입양 혹은 양육 선택까지에 이르는 과정과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모형화하였다. 이러한 모형 설계 구조에 따라 양적 조사 자료와 질적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각 단계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관련된 다양한 사회 환경적 영향력을 고찰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과 양육간의 선택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임신 전 생활부터 출산 후 입양 혹은 양육 선택까지의 과정은 미혼 임신 - 낙태/출산 - 입양/양육 - 이후 생활의 단계로 설정하였다. 미혼으로 임신하게 된 청소년 한부모들은 각 단계마다 낙태를 할 것인가 혹은 출산을 할 것인가, 출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입양을 보낼 것인가 혹은 양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한다. 이러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 사회환경, 법·제도, 복지 정책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가 설정한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양육 선택 과정 모형은 <그림 II-3> 와 같다.

동 모형의 분석 방법으로 양적인 자료를 통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후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보다 심도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기로 하였다. 양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질적인 분석을 위해서 미혼모자 시설에 입소하여 있거나 입양 기관에 입양을 의뢰하여 자녀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에서 사용한 주요 분석 변수는 <표 II-6>과 같다.



【그림 II-3】 청소년 한부모 입양·양육 선택 과정 모형

표 II-6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주요 분석 변수

구분	양적 분석 주요 분석 변수	질적 분석 인터뷰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여부 취업 여부 · 학업지속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연도 및 나이 학교 생활 가출 및 학교 중퇴
가족 환경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경제적 수준 및 학력 가족 구조 및 가족 해체 경험 피해·가해 경험 초등중학교 시기 부족했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족의 특성 남자 친구의 특성 남자 친구 가족의 특성 형제 · 자매와의 관계
임신·출산에서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자발성, 출산 자발성 낙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전 생활 특징 임신 과정 특징 출산 과정 특징 시설 생활의 특징
입양·양육 갈등에서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 경험 입양 · 양육에 대한 인식 가족관 및 부모관 입양 관련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족의 양육 반대 남자친구 및 남자친구 가족의 양육 반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의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인 취약성, 부족한 부모 기술, 가족의 양육지지 체계 결여,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결여, 입양에 대한 기대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도 인지도 입양 숙려제도에 대한 인지도 입양 숙려 기간에 대한 의견 입양 숙려 제도의 자녀 양육 선택 도움 입양 숙려 제도의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신고 관련 의견 입양 숙려제도에 대한 의견 입양에 대한 인식 및 기대 공개 입양에 대한 의견
시설 퇴소 후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계획 시설을 통해 받는 지원 자립 생활 및 미래 계획
정부 정책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인지도 자녀 양육 및 한부모 지원 정책 인지도 일반 저소득층 복지 지원 정책 인지도 청소년 지원 정책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지원, 시설, 사회문화개선, 가정위탁제도 등 복지 정책에 대한 의존 현행 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

제 III 장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양적 분석

1. 분석 개요 및 방법론
2. 주요 양적 분석 결과

제 III 장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양적 분석

1. 분석 개요 및 방법론

본 절에서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3년 7~8월에 실시한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과 관련한 경험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배경 및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다⁶⁾.

양적인 분석에서는 조사 대상 청소년 한부모를 입양 경험이 있는 한부모와 입양 경험이 없는 한부모 두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와 비교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징, 가족 환경, 임신·출산에서의 특징, 가족관 및 부모관, 입양과 양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를 비교 집단으로 두고 집단 간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과 직면하고 있는 제약 요인들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입양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역시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와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 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입양 정책 관련 이슈를 조명해 본다. 입양 정책 이외에도 정부의 복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두 집단 간에 비교 분석함으로써 복지 제도 인지도에서 차이가 있는가 분석한다.

입양 결정 이유, 입양 결정에 영향 미친 사람, 입양 후 필요한 지원 등 입양 관련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관련된 주요 특성을 파악한다.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교차 분석을 통한 카이 검정을 하였으며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의 입양 관련 경험에 대한 분석은 빈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통계 분석 패키지는 SPSS 버전 18.0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수에 대한 정리는 <표 II -6>를 참조하기 바란다.

6) 조사 방법론, 샘플 수집 등 조사 개요에 대해서는 총괄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2. 주요 양적 분석 결과⁷⁾

1) 입양 경험

입양 관련 경험 관련해서는 “귀하는 출산 후 아기를 입양 보낸 경험이 있거나 입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파악하였다. “입양 보냈다,” “입양을 고려 중이다,” 혹은 “입양 보낸 경험이 있고 현재도 입양을 고려 중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 한부모를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으며, “입양을 보낸 경험도 없고 입양을 고려하지도 않는다”로 응답한 청소년 한부모를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⁸⁾. 이러한 정의를 따르는 경우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 한부모 378명 중 “입양 경험 있음”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총 106명(28%)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양 경험 없음”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272명 (72%)를 차지하고 있다. “입양을 보냈다”고 응답한 36명의 청소년 한부모들이 입양 보낸 연도는 대부분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인 것으로 나타나 2013년 16명, 2012년 11명, 2011년 3명, 2010년 5명, 2003년 1명 이었다. “입양을 보냈다” 혹은 “입양 보낸 경험이 있고 현재도 입양을 고려 중이다”에 응답한 청소년 39명 중 과거 입양을 보낸 횟수는 모두 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신 혹은 양육 여부에 따라 입양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입양 선택에 대한 갈등은 임신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단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경우 자녀를 입양 보낼 것을 고려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임신 중에 자녀를 입양 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는 비중은 52.8%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입양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비중은 46%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는 입양을 고려하지 않는 비중이 86.1%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단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입양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7) 양적 분석에 활용한 주요 분석 변수의 범주는 보고서 44페이지 <표 II-6> 참조

8) 본 연구는 “입양 경험”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여 실제로 자녀를 입양 보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이외에도 입양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는 등 입양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청소년까지도 입양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III-1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 임신 및 양육 경험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여부				합계	χ^2 (df)	
	입양 보냈다	입양 고려	입양경험 혹은 입양 고려중	입양경험무 혹은 입양고려 않음			
전체	36 (9.5%)	67 (17.7%)	3 (0.8%)	272 (72.0%)	378 (100.0%)	0.000 (4) ^{***}	
임신 및 양육 여부	임신중	1 (1.1%)	45 (51.7%)	1 (1.1%)	40 (46.0%)		87 (100.0%)
	양육중	14 (5.3%)	21 (7.9%)	2 (0.8%)	229 (86.1%)		266 (100.0%)
	임신혹은 양육중	0 (0.0%)	0 (0.0%)	0 (0.0%)	2 (100.0%)		2 (100.0%)
	기타	18 (94.7%)	1 (5.3%)	0 (0.0%)	0 (0.0%)		19 (100.0%)
	무응답	3 (75.0%)	0 (0.0%)	0 (0.0%)	1 (25.0%)		4 (100.0%)

구분	임신 및 양육여부					합계	χ^2 (df)	
	임신중	양육중	임신 혹은 양육중	기타	무응답			
전체	87 (23.0%)	266 (70.4%)	2 (0.5%)	19 (5.0%)	4 (1.1%)	378 (100.0%)	0.000 (3) ^{***}	
입양 경험 여부	입양 보냈다	1 (2.8%)	14 (38.9%)	0 (0.0%)	18 (50.0%)	3 (8.3%)		36 (100.0%)
	입양 고려	45 (67.2%)	21 (31.3%)	0 (0.0%)	1 (1.5%)	0 (0.0%)		67 (100.0%)
	입양경험 혹은 입양고려중	1 (33.3%)	2 (66.7%)	0 (0.0%)	0 (0.0%)	0 (0.0%)		6 (100.0%)
	입양경험무 혹은 입양고려 않음	40 (14.7%)	229 (84.2%)	2 (0.7%)	0 (0.0%)	1 (0.4%)		272 (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1): * p(0.1, ** p(0.05, *** p(0.001

2): 설문지에서의 응답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입양고려”는 “입양을 고려중이다”, “입양경험 혹은 입양고려중”은 “입양 보낸 경험이 있고 현재도 입양을 고려중이다”, “입양경험무 혹은 입양고려 않음”은 “입양을 보낸 경험도 없고 입양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고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을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와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로 나누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과 취업 여부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비교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38.7%로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25.4%보다 높았다. 취업 여부에 있어서도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하고 있는 비중이 15.1%인데 반해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보다 낮은 8.5%에 불과하였다. 두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청소년 한부모들의 학업 지속 여부는 두 집단 모두 학업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 경우 더 높았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⁹⁾. 이 사실은 입양을 선택하였거나 양육을 선택하였거나 무관하게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에서는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표 III-2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 사회학적 주요 특성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χ^2 (df)
	입양경험 있음	입양경험 없음		
만19세 여부	만 19세 미만	41 (38.7)	69 (25.4)	6.551 (1)**
	만 19세 이상	65 (61.3)	203 (74.6)	
	합계	106 (100.0)	272 (100.0)	
취업 여부	예	9 (8.5)	41 (15.1)	2.880 (1)*
	아니오	97 (91.5)	231 (84.9)	
	합계	106 (100.0)	272 (100.0)	
학업 지속 여부	예	19 (17.9)	64 (23.5)	1.398 (1)
	아니오	87 (82.1)	208 (76.5)	
	합계	106 (100.0)	272 (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 $p < 0.1$, ** $p < 0.05$, *** $p < 0.001$

3) 가족 환경 특성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 혹은 보호자의 경제적인 수준을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모가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약 10% 내외에 불과하였다. 동 변수들에 대하여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두 집단 간 통계적인

9) 입양 경험이 있으면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 19명 중에서 일반정규학교 10명, 대안학교 2명, 원격교육 4명, 검정고시 학원 1명, 독학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입양 경험이 없는 양육 청소년 한부모 64명 중에서 일반 정규학교 22명, 대안학교 11명, 원격교육 15명, 검정고시학원 5명, 독학 4명, 기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분석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한부모들은 입양 경험과 상관없이 모두 대부분 취약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취약 청소년이라는 걸 보여준다.

표 III-3 부모의 경제적 수준 및 학력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χ^2 (df)	
	입양경험 있음	입양경험 없음			
경제적 수준	저소득층	54 (50.9)	165 (60.7)	219 (57.9)	3,507 (3)
	중산층이상	46 (43.4)	98 (36.0)	144 (38.1)	
	양친 없음	5 (4.7)	8 (2.9)	13 (3.4)	
	무응답	1 (0.9)	1 (0.4)	2 (0.5)	
	합계	106 (100.0)	272 (100.0)	378 (100.0)	
부모의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 (6.6)	30 (11.0)	37 (9.8)	10,305 (7)
	중학교 졸업	11 (10.4)	46 (16.9)	57 (15.1)	
	고등학교 졸업	42 (39.6)	99 (36.4)	141 (37.3)	
	전문대학 졸업	4 (3.8)	2 (0.7)	6 (1.6)	
	대학교 졸업 이상	9 (8.5)	25 (9.2)	34 (9.0)	
	모름	21 (19.8)	51 (18.8)	72 (19.0)	
	안계심	11 (10.4)	18 (6.6)	29 (7.7)	
	무응답	1 (0.9)	1 (0.4)	2 (0.5)	
	합계	106 (100.0)	272 (100.0)	378 (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 p<0.1, ** p<0.05, *** p<0.001

청소년 한부모가 성장한 가정환경을 입양 경험 유무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양 집단 모두 양친 모두가 있지 않은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으며, 약 66%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별거·사별 등 가정 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피해 혹은 가해를 경험한 평균 건수는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2.7건, 입양을 선택하지 않은 청소년 2.8건으로서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입양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취약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가족 해체와 다양한 피해 및 가해의 경험을 가진 집단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초등·중학교 시기 부족했던 지원은 집단 모두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다.

표 III-4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 환경 특성 비교 분석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χ^2 (df)	
	입양경험 있음	입양경험 없음			
청소년기를 보낸 가족 구조	양친 가정	40 (37.7)	118 (43.4)	158 (41.8)	6.355 (7)
	한부모 가정	44 (41.5)	97 (35.7)	141 (37.3)	
	계부모 가정	8 (7.5)	12 (4.4)	20 (5.3)	
	조손 가정	7 (6.6)	22 (8.1)	29 (7.7)	
	위탁가정(친인척 포함)	1 (0.9)	6 (2.2)	7 (1.9)	
	대안가정(그룹홈, 보호시설 등)	6 (5.7)	11 (4.0)	17 (4.5)	
	기타	0 (0.0)	5 (1.8)	5 (1.3)	
	무응답	0 (0.0)	1 (0.4)	1 (0.3)	
	합계	106(100.0)	272(100.0)	378 (100.0)	
부모의 이혼·별거·사별 경험 여부	있다	71 (67.0)	181 (66.5)	252 (66.7)	0.007 (1)
	없다	35 (33.0)	91 (33.5)	126 (33.3)	
	합계	106(100.0)	272(100.0)	378 (100.0)	
피해·가해 경험	가출	60 (56.6)	166 (61.0)	226 (21.5)	-
	학업중단	57 (53.8)	156 (57.4)	213 (20.3)	
	자살 생각	47 (44.3)	130 (47.8)	177 (16.9)	
	자살 시도	23 (21.7)	67 (24.6)	90 (8.6)	
	학교폭력	20 (18.9)	56 (20.6)	76 (7.2)	
	청소년 쉼터 입소	19 (17.9)	42 (15.4)	61 (5.8)	
	성폭력(성매매 포함)	17 (16.0)	24 (8.8)	41 (3.9)	
	인터넷 중독	17 (16.0)	43 (15.8)	60 (5.7)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	13 (12.3)	47 (17.3)	60 (5.7)	
	기타	15 (14.2)	31 (11.4)	46 (4.4)	
	합계 ²⁾	288(271.7)	762(280.1)	1,050(100.0)	
초등·중학교 시기 부족했던 지원	경제적 도움	34 (32.1)	100 (36.8)	134 (35.4)	10.985 (11)
	진로·적성 탐색	22 (20.8)	39 (14.3)	61 (16.1)	
	고민상담	13 (12.3)	23 (8.5)	36 (9.5)	
	가족상담(부모자녀 관계 등)	9 (8.5)	41 (15.1)	50 (13.2)	
	학습지도	9 (8.5)	12 (4.4)	21 (5.6)	
	여가활동지원	6 (5.7)	12 (4.4)	18 (4.8)	
	방과후 보호	5 (4.7)	17 (6.2)	22 (5.8)	
	인성교육	2 (1.9)	7 (2.6)	9 (2.4)	
	아동청소년의 인권 교육	0 (0.0)	3 (1.1)	3 (0.8)	
	기타	2 (1.9)	4 (1.5)	6 (1.6)	
	무응답	1 (0.9)	6 (2.2)	7 (1.9)	
합계	106(100.0)	272(100.0)	378 (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1) * p<0.1, ** p<0.05, *** p<0.001

2) 다중 응답 결과로 케이스 페센트임

4) 임신·출산에서의 특성

(1) 임신 및 출산 자발성

임신 및 출산 자발성 여부를 입양 경험 유무로 비교해 본 결과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에 비해 임신 및 출산 자발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한 부정의 응답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임신 자발성 여부에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경우는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93.4%,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83.1%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발적이지 않은 임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 중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비중은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6.6%로서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30.9% 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를 입양 보내는 청소년들의 과반 수 이상이 임신 과정에서 비 자발적인 경우가 매우 많았고 임신을 원하지 않았던 정도도 매우 강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표 III-5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및 출산 자발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χ^2 (df)
	입양 경험 있음	입양 경험 없음		
임신 자발성	전혀 그렇지 않다	60 (56.6)	84 (30.9)	23.093 (3) ^{***}
	그렇지 않다	39 (36.8)	142 (52.2)	
	그렇다	5 (4.7)	38 (14.0)	
	매우 그렇다	2 (1.9)	8 (2.9)	
	합계	106(100.0)	272(100.0)	
출산 자발성	전혀 그렇지 않다	11 (10.4)	8 (2.9)	30.332 (3) ^{***}
	그렇지 않다	21 (19.8)	20 (7.4)	
	그렇다	50 (47.2)	118 (43.4)	
	매우 그렇다	24 (22.6)	126 (46.3)	
	합계	106(100.0)	272(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1) * p<0.1, ** p<0.05, *** p<0.001

2) 임신 자발성은 “임신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다,” 출산 자발성은 “출산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에 대한 응답

출산에 대한 자발성은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대부분인 89.7%가 스스로 출산을 결정하였고,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중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인 69.8%가 스스로 출산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자발성에 대해서는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강한 긍정 반응을 보인 경우가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에 46.3% 응답), 반대로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에 22.6% 응답). 이러한 사실은 출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입양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발성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 낙태에 대한 인식

청소년 한부모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경험 유무에 따라 낙태에 대한 인식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통계적으로도 두 집단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양육과 낙태 간의 선택지에 대한 질문인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도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여 낙태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경우는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2.5%로 낙태에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경우인 35.8%보다 높았다. 반면에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는 낙태에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경우가 43.4%로 낙태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경우 33.8%보다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양육과 낙태의 선택에서 입양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양육보다 낙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며, 입양을 경험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양육을 낙태보다 선호하고 있다는 걸 뜻한다. 하지만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두 집단에서 모두 낙태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경우가 각각 42.5%와 33.8%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한편, 낙태와 입양 간의 선택지에 대한 질문인 “(불법)낙태보다 차라리 출산 후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낫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중이 입양을 경험한 청소년 22.7%, 입양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28.3%로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낙태보다는 자녀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기는 하지만 낙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 질문의 응답 결과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청소년 한부모의 낙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χ^2 (df)	
	입양 경험 있음	입양 경험 없음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도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17.0)	34 (12.5)	52 (13.8)	2.788 (4)
	그렇지 않다	27 (25.5)	58 (21.3)	85 (22.5)	
	보통이다	23 (21.7)	62 (22.8)	85 (22.5)	
	그렇다	24 (22.6)	75 (27.6)	99 (26.2)	
	매우 그렇다	14 (13.2)	43 (15.8)	57 (15.1)	
	합계	106(100.0)	272(100.0)	378(100.0)	
(불법)낙태보다 는 차라리 출산 후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낫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10.4)	21 (7.7)	32 (8.5)	4.483 (4)
	그렇지 않다	13 (12.3)	56 (20.6)	69 (18.3)	
	보통이다	27 (25.5)	58 (21.3)	85 (22.5)	
	그렇다	28 (26.4)	76 (27.9)	104 (27.5)	
	매우 그렇다	27 (25.5)	61 (22.4)	88 (23.3)	
	합계	106(100.0)	272(100.0)	378(100.0)	
모든 출산은 이유에 관계없이 당당하고 정당한 일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7)	3 (1.1)	8 (2.1)	11.608 (5)*
	그렇지 않다	5 (4.7)	27 (9.9)	32 (8.5)	
	보통이다	31 (29.2)	54 (19.9)	85 (22.5)	
	그렇다	32 (30.2)	87 (32.0)	119 (31.5)	
	매우 그렇다	33 (31.1)	99 (36.4)	132 (34.9)	
	합계	106(100.0)	272(100.0)	378(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 p<0.1, ** p<0.05, *** p<0.001

한편 “모든 출산은 이유에 관계없이 당당하고 정당한 일이다”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비중은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61.3%,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68.4%로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는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9.2%로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19.9%보다 높았다. 이는 혼인 여부를 떠나 출산의 정당성에 대해서 입양을 경험한 청소년의 많은 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수가 별다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

5) 입양·양육 갈등에서의 특성

(1) 입양·양육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는 입양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양육과 입양에 대해서는 입양 경험 유무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양육과 입양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선택 혹은 고민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양육과 입양에 대해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94.8%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84.9%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13.2%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해서 입양을 경험한 청소년의 많은 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별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입양과 양육에 대한 태도는 입양을 경험한 청소년과 입양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는 마땅히 친부모가 키워야 한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비중은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60.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는 26.4%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인 응답은 보인 비중은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37.7%로 나타나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11.4%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의 친가정 양육에 대하여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인식도가 낮다는 사실을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친가정 양육에 대하여 지지하는 비중이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사이에서 높기는 하지만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도 27.9%로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양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자녀의 친가정 양육에 대하여 어느정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하면 입양 보내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에 대해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73.6%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5.6%만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는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응답 비중 50.3%보다 높으며, 부정적인 응답도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 응답한 21.0%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인 50.3%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28.7%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자녀 양육을 포기할 가능성이 양육 청소년 한부모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7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양육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χ^2 (df)
		입양 경험 있음	입양 경험 없음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0.9)	0 (0.0)	1 (0.3)	13.716 (5)*
	그렇지 않다	1 (0.9)	1 (0.4)	2 (0.5)	
	보통이다	14 (13.2)	12 (4.4)	26 (6.9)	
	그렇다	44 (41.5)	111 (40.8)	155 (41.0)	
	매우 그렇다	46 (43.4)	147 (54.0)	193 (51.1)	
	무응답	0 (0.0)	1 (0.4)	1 (0.3)	
	합계	106(100.0)	272(100.0)	378(100.0)	
자녀는 마땅히 친부모가 키워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7)	7 (2.6)	12 (3.2)	50.897 (4)***
	그렇지 않다	35 (33.0)	24 (8.8)	59 (15.6)	
	보통이다	38 (35.8)	76 (27.9)	114 (30.2)	
	그렇다	20 (18.9)	87 (32.0)	107 (28.3)	
	매우 그렇다	8 (7.5)	78 (28.7)	86 (22.8)	
	합계	106(100.0)	272(100.0)	378(100.0)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하면 입양 보내는 것이 낫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2.8)	16 (5.9)	19 (5.0)	21.556 (4)***
	그렇지 않다	3 (2.8)	41 (15.1)	44 (11.6)	
	보통이다	22 (20.8)	78 (28.7)	100 (26.5)	
	그렇다	45 (42.5)	89 (32.7)	134 (35.4)	
	매우 그렇다	33 (31.1)	48 (17.6)	81 (21.4)	
	합계	106(100.0)	272(100.0)	378(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 p<0.1, ** p<0.05, *** p<0.001

(2) 가족관 및 부모관

출산을 한 청소년 한부모 268명이 가지고 있는 부모관을 입양 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의 친가정 보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과 동시에 자녀 양육과 부모됨에 대해서 자신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내 자녀는 내가 마땅히 키워야 한다”는 질문에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7.4%가 긍정적인 응답은 보인 반면,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59%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앞으로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의 91.3%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반면에,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53.8%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는 질문에 수긍하고 있는 비중은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71.8%로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 56.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8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관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χ^2 (df)	
	입양 경험 있음	입양 경험 없음			
내 자녀는 내가 마땅히 키워야 한다	전혀 아니다	5 (12.8)	3 (1.3)	8 (3.0)	79.585 (4) ^{***}
	아닌 편이다	11 (28.2)	1 (0.4)	12 (4.5)	
	그런 편이다	12 (30.8)	79 (34.5)	91 (34.0)	
	매우 그렇다	11 (28.2)	144 (62.9)	155 (57.8)	
	무응답	0 (0.0)	2 (0.9)	2 (0.9)	
	합계	39 (100.0)	229(100.0)	268(100.0)	
앞으로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전혀 아니다	7 (17.9)	1 (0.4)	8 (3.0)	66.323 (4) ^{***}
	아닌 편이다	14 (35.9)	17 (7.4)	31 (11.6)	
	그런 편이다	13 (33.3)	131 (57.2)	144 (53.7)	
	매우 그렇다	5 (12.8)	78 (34.1)	83 (31.0)	
	무응답	0 (0.0)	2 (0.9)	2 (0.7)	
	합계	39 (100.0)	229(100.0)	268(100.0)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전혀 아니다	6 (15.4)	25 (10.9)	31 (11.6)	9.654 (4) [*]
	아닌 편이다	5 (12.8)	73 (31.9)	78 (29.1)	
	그런 편이다	17 (43.6)	98 (42.8)	115 (42.9)	
	매우 그렇다	11 (28.2)	31 (13.5)	42 (15.7)	
	무응답	0 (0.0)	2 (0.9)	2 (0.7)	
	합계	39 (100.0)	229(100.0)	268(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 p(0.1, ** p(0.05, *** p(0.001

(3) 입양 관련 특성

입양과 관련한 특성은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 1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입양을 결정하게 된 주요 이유로 “아이를 키울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전체 응답 비중 중 가장 높은 60.4%를 나타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아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래서”로 전체 14.2%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의 미래를 생각해서”로서 10.4%의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입양을 결정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입양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은 “나 혼자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인 61.3%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청소년 한부모 원가족 19.8%,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은 아이 아버지 10.4%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는 입양 결정에 청소년 한부모의 원가족과 미혼부가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원하는 유형의 입양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과반수가 넘는 57.5%가 국내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는 10.4%의 청소년 한부모가 국외 입양을 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하지만 국내입양이든 국외입양이든 관계없다고 응답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비중이 32.1%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상당수가 국내가 아닌 국외 입양을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입양 결정에서 어려웠던 점으로 60.4%가 “아기에 대한 미안함”을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입양과 양육 사이의 갈등 (19.8%),” “입양 가정에 대한 불신 (12.3%)”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입양 결정 과정에서 모성에 대한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입양 후 정신적 후유증 여부에 대하여 “매우 심했다” 혹은 “심했다”로 응답한 비중은 42.4%로 적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를 입양 보낸 후에 정신적인 후유증을 심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적인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42.4%),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도 (30.6%)로 그치고 있었다. 전문 기간의 상담, 병원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는 8.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자녀를 입양 보낸 후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39.6%),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26.4%), 직업 훈련 및 직장 알선 등 취업 지원(17.0%) 응답도 있었다.

표 III-9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 관련 주요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입양 결정 이유	아이를 키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64	60.4
	아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래서	15	14.2
	나의 미래를 생각해서	11	10.4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3	2.8
	주위의 권유로	3	2.8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1	0.9
	부모 노릇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1	0.9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므로	1	0.9
	기타	2	1.9
	합계	106	100.0
입양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	나 혼자 결정	65	61.3
	내 가족	21	19.8
	아이 아버지	11	10.4
	아이 아버지 가족	3	2.8
	기관/시설 상담원	2	1.9
	입양 경험자	2	1.9
	친구/선후배	1	0.9
	인터넷	1	0.9
	합계	106	100.0
원하는 유형의 입양	국내 입양	61	57.5
	국외 입양	11	10.4
	관계 없음	34	32.1
	합계	106	100.0
입양 결정에서 어려웠던 점	아기에 대한 미안함	64	60.4
	입양과 양육 사이의 갈등	21	19.8
	입양 가정(부모)에 대한 불신	13	12.3
	어려운 점 없음	4	3.8
	입양 절차의 까다로움	2	1.9
	기타	2	1.9
	합계	106	100.0
입양 후 정신적 후유증	매우 심했다	26	24.5
	심했다	19	17.9
	약간 있었다	40	37.7
	거의 없었다	12	11.3
	전혀 없었다	9	8.5
	합계	106	100.0
입양 후 정신적 후유증 해결 방법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6	42.4
	친구 등 주변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26	30.6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13	15.3
	전문기관의 상담, 병원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다	7	8.2

구분		빈도	백분율
입양 보낸 후 필요한 지원	기타	3	3.5
	합계	85	100.0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한 정보 제공	42	39.6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28	26.4
	직업 훈련 및 직장 알선 등 취업 지원	18	17.0
	학습 지원(학교복합 절차 안내 포함)	6	5.7
	기타	6	5.7
	피임 방법을 포함한 성교육	4	3.8
	모름/무응답	2	1.9
	합계	106	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 p<0.1, ** p<0.05, *** p<0.001

6) 입양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입양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은 입양을 경험한 청소년 한부모와 입양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로 나누어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경우는 27.0%였고, “들어 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46.8%로 73.8%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입양숙려기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44.2%, “들어 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33.6%로 전체 조사 대상 집단 중 77.8%가 입양숙려기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입양 경험 유무에 따른 입양관련제도와 입양숙려기간 집단별 인지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 법원의 입양허가 제도 그리고 입양 숙려 기간에 대한 인지도가 70%가 넘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을 경험하였는지 혹은 경험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입양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표 III -10 입양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χ^2 (df)	
	입양 경험 있음	입양 경험 없음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인지도	전혀 모른다	25 (23.6)	72 (26.5)	97 (25.7)	2.162 (3)
	들어 보았으나 구체적 내용 모른다	55 (51.9)	122 (44.9)	177 (46.8)	
	잘 알고 있다	26 (24.5)	76 (27.9)	102 (27.0)	
	무응답	0 (0.0)	2 (0.7)	2 (0.5)	
	합계	106(100.0)	272(100.0)	378(100.0)	
입양 숙려제도에 대한 인지도	전혀 모른다	18 (17.0)	64 (23.5)	82 (21.7)	3.914 (3)
	들어 보았으나 구체적 내용 모른다	34 (32.1)	93 (34.2)	127 (33.6)	
	잘 알고 있다	54 (50.9)	113 (41.5)	167 (44.2)	
	무응답	0 (0.0)	2 (0.7)	2 (0.5)	
	합계	106(100.0)	272(100.0)	378(100.0)	
입양 숙려 기간에 대한 의견	매우 짧다	12 (11.3)	48 (17.6)	60 (15.9)	18.568 (5)**
	짧은 편이다	13 (12.3)	75 (27.6)	88 (23.3)	
	적당한 편이다	41 (38.7)	82 (30.1)	123 (32.5)	
	긴 편이다	25 (23.6)	34 (12.5)	59 (15.6)	
	매우 길다	15 (14.2)	31 (11.4)	46 (12.2)	
	무응답	0 (0.0)	2 (0.7)	0 (0.5)	
	합계	106(100.0)	272(100.0)	378(100.0)	
입양 숙려 제도의 자녀 양육 선택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 (15.1)	38 (14.0)	54 (14.3)	2.460 (5)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 (13.2)	27 (9.9)	41 (10.8)	
	보통이다	37 (34.9)	105 (38.6)	142 (37.6)	
	도움이 된다	32 (30.2)	78 (28.7)	110 (29.1)	
	매우 도움이 된다	7 (6.6)	21 (7.7)	28 (7.4)	
	무응답	0 (0.0)	3 (1.1)	3 (0.8)	
	합계	106(100.0)	272(100.0)	378(100.0)	
입양 숙려 제도의 개선점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28 (20.6)	122 (32.0)	150 (40.0)	-
	숙려기간(현행 1주일)	27 (19.9)	89 (23.4)	116 (30.9)	
	숙려기간 중 출생 아동의 대리보호 지원	30 (22.1)	83 (21.8)	113 (30.1)	
	모르겠다	39 (28.7)	63 (16.5)	102 (27.2)	
	개선이 필요한 점이 없다	6 (4.4)	11 (2.9)	17 (4.5)	
	기타	6 (4.4)	13 (3.4)	19 (5.1)	
	합계 ²⁾	136(100.0)	381(100.0)	517(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1) * p<0.05, ** p<0.01, *** p<0.001

2) 다중 응답 결과임

입양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입양 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정책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입양숙려기간에 대한 의견에서 “매우 길다” 혹은 “긴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 중 37.8%인 반면,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는 이보다 낮은 23.9%가 응답하였다. 반면에 “매우 짧다” 혹은 “짧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 23.6%,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 45.2%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현행 입양숙려기간 일주일의 길게 느껴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입양을 고려하지 않고 양육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입양을 보내기 전에 심사숙고할 기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양숙려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간의 차이를 보였다.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입양숙려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응답을 보인 비중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양육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32.0%)” 그리고 “숙려기간”(23.4%)으로 지적하여 양육에 대한 강한 필요성과 욕구를 보였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숙려기간 중 출생 아동의 대리 보호 지원”은 각각 약 20%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7) 정부 정책 관련 사항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 출산 및 영아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았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탐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반대로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를 혼자서 양육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녀 양육을 하지 않고 입양 보낼 것으로 이미 결정하였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보 탐색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성인 한부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5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학습비 혹은 교육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의 인지도는 높지만 기타 청소년 상담 서비스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1) 임신 및 출산 지원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과 “출산 및 양육시 위기 지원”에 대해서는 출산 경험을 한 청소년 한부모 모두 인지도가 높았다. “출산 및 양육 시 위기 지원”은 양육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 한부모도 대상이 되는 바,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의 인지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에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산모신생아 지원은 주로 저소득 기혼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들의 접근성이 낮아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플러스 지원은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인지도가 더 높았으며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11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인지도: 임신 및 출산 지원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x ² (df)
	입양 경험 있음	입양 경험 없음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공단)	안다	71 (67.0)	208 (76.5)	3,553 (1)
	모른다	35 (33.0)	64 (23.5)	
	합계	106(100.0)	272(100.0)	
출산 및 양육시 위기 지원	안다	53 (50.0)	171 (62.9)	5,231 (1)*
	모른다	53 (50.0)	101 (37.1)	
	합계	106(100.0)	272(10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안다	37 (34.9)	111 (40.8)	1,116 (1)
	모른다	69 (65.1)	161 (59.2)	
	합계	106(100.0)	272(100.0)	
영양 플러스 지원	안다	13 (12.3)	105 (38.6)	24,644 (1)***
	모른다	93 (87.7)	167 (61.4)	
	합계	106(100.0)	272(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 p<0.1, ** p<0.05, *** p<0.001

표 III-12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인지도: 자녀 양육 및 한부모 지원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chi^2(df)$
	입양 경험 있음	입양 경험 없음		
영유아 보육료	안다	50 (47.2)	236 (86.8)	64.937 (1)***
	모른다	56 (52.8)	36 (13.2)	
	합계	106(100.0)	272(100.0)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다	40 (37.7)	228 (83.8)	78.525 (1)***
	모른다	66 (62.3)	44 (16.2)	
	합계	106(100.0)	272(100.0)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안다	45 (42.5)	194 (71.3)	27.344 (1)***
	모른다	61 (57.5)	78 (28.7)	
	합계	106(100.0)	272(100.0)	
아이돌보미	안다	41 (38.7)	192 (70.6)	32.845 (1)***
	모른다	65 (61.3)	80 (29.4)	
	합계	106(100.0)	272(100.0)	
미혼부 상대 친자확인 및 자녀 양육비 이행소송 지원	안다	25 (23.6)	148 (54.4)	29.203 (1)***
	모른다	81 (76.4)	124 (45.6)	
	합계	106(100.0)	272(100.0)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안다	53 (50.0)	147 (54.0)	0.501 (1)
	모른다	53 (50.0)	125 (46.0)	
	합계	106(100.0)	272(100.0)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 정보 안내 및 상담	안다	40 (37.7)	137 (50.4)	4.888 (1)*
	모른다	66 (62.3)	135 (49.6)	
	합계	106(100.0)	272(100.0)	
복지시설 입소	안다	87 (82.1)	244 (89.7)	4.079 (1)*
	모른다	19 (17.9)	28 (10.3)	
	합계	106(100.0)	272(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 p<0.1, ** p<0.05, *** p<0.001

(3) 일반 복지 제도

일반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지원과 의료수급권자 신청 및 건강 보험료지원에 대해서는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인지도가 각각 87.1%와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빈곤 지원에 대해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대다수가 알고 있다는 걸 뜻한다. 두 집단 간의 차이도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인지도: 일반 복지 제도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chi^2(df)$
	입양 경험 있음	입양 경험 없음		
기초생활수급 지원	안다	67 (63.2)	237 (87.1)	27.731 (1)***
	모른다	39 (36.8)	35 (12.9)	
	합계	106(100.0)	272(100.0)	
의료수급권자 신청 및 건강보험료 지원	안다	51 (48.1)	191 (70.2)	16.184 (1)***
	모른다	55 (51.9)	81 (29.8)	
	합계	106 (100.0)	272(100.0)	
자립촉진수당	안다	16 (15.1)	109 (40.1)	21.503 (1)***
	모른다	90 (84.9)	163 (59.9)	
	합계	106(100.0)	272(100.0)	
자산형성계좌 지원	안다	6 (5.7)	69 (25.4)	18.626 (1)***
	모른다	100 (94.3)	203 (74.6)	
	합계	106(100.0)	272(100.0)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 대출	안다	21 (19.8)	105 (38.6)	12.121 (1)***
	모른다	85 (80.2)	167 (61.4)	
	합계	106(100.0)	272(100.0)	
임대 주택 지원	안다	24 (22.6)	149 (54.8)	31.740 (1)***
	모른다	82 (77.4)	123 (45.2)	
	합계	106 (100.0)	272(100.0)	
저소득 복지자금 대여	안다	16 (15.1)	71 (26.1)	5.217 (1)*
	모른다	90 (84.9)	201 (73.9)	
	합계	106 (100.0)	272 (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 p<0.1, ** p<0.05, *** p<0.001

반면에 취약 계층 자립과 관련한 지원인 “자립촉진수당”과 “자산형성계좌”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 경험 있는 청소년 한부모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인지도를 보였지만, 그 비중은 각각 40.1%와 25.4%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 전세 자금 대출” 및 “임대 주택 지원”은 자녀 양육을 위해 주거지가 필요한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입양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하여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도 현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주거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소득층 복지자금 대여” 정책에 대해서도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인지도가 높았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 지원 정책

청소년 한부모들의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20~30% 수준으로 높지 않았으며 집단 간의 인지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66.9%와 45.2%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중은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36.8%, 24.5%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동 정책들은 대부분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입양을 선택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입양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들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청소년 상담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헬프콜 청소년 전화 1588,”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Wee클래서, Wee센터,” “두드림존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위기 청소년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들의 대다수가 임신과 출산 이전 청소년기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동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사실은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해 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표 III-14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인지도: 청소년 지원 정책

단위: 명, %

구분	입양 경험		합계	$\chi^2(df)$
	입양 경험 있음	입양 경험 없음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안다	39 (36.8)	182 (66.9)	28.495 (1) ^{***}
	모른다	67 (63.2)	90 (33.1)	
	합계	106(100.0)	272(100.0)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안다	26 (24.5)	123 (45.2)	13.676 (1) ^{***}
	모른다	80 (75.5)	149 (54.8)	
	합계	106(100.0)	272(100.0)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안다	38 (35.8)	90 (33.1)	0.260 (1)
	모른다	68 (64.2)	182 (66.9)	
	합계	106(100.0)	272(100.0)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안다	34 (32.1)	77 (28.3)	0.522 (1)
	모른다	72 (67.9)	195 (71.7)	
	합계	106(100.0)	272(100.0)	
Wee클래스, Wee 센터	안다	23 (21.7)	40 (14.7)	2.685 (1)
	모른다	83 (78.3)	232 (85.3)	
	합계	106(100.0)	272(100.0)	
두드림존 지원	안다	34 (32.1)	76 (27.9)	0.632 (1)
	모른다	72 (67.9)	196 (72.1)	
	합계	106(100.0)	272(100.0)	
심리 상담 서비스	안다	48 (45.3)	151 (55.5)	3.203 (1) [*]
	모른다	58 (54.7)	121 (44.5)	
	합계	106(100.0)	272(100.0)	

* 출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 여건 실태조사(2013)”

* 주: * p<0.1, ** p<0.05, *** p<0.001

제 IV 장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질적 분석

1. 심층 면접 조사 개요
2. 주요 질적 분석 결과

제 IV 장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질적 분석

1. 심층 면접 조사 개요

1) 심층 면접 조사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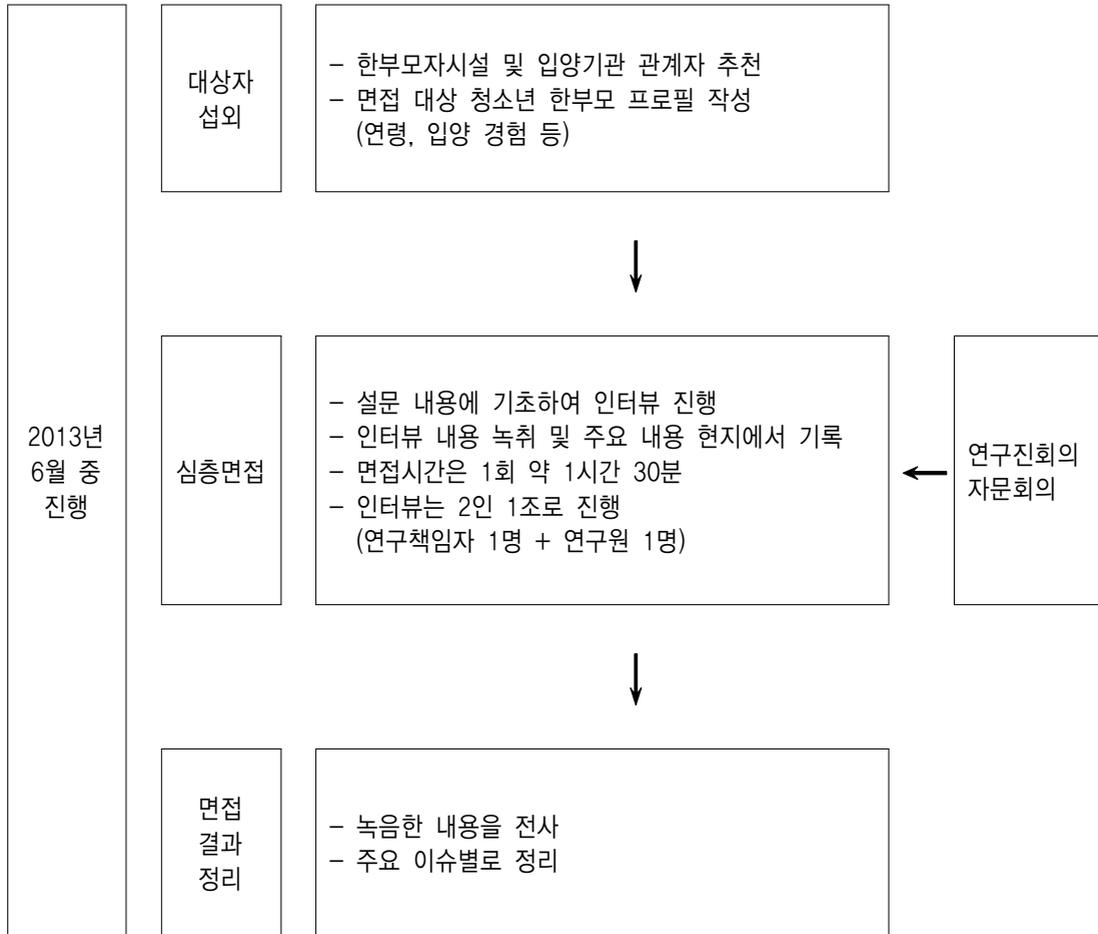
심층 면접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입양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입양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혹은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면접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서울 소재 미혼모자 시설 A, B, D 와 입양 기관 C에 의뢰하여 13명을 섭외하였다¹⁰⁾. 심층 면접은 2013년 6월 한 달 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13명의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후의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한다.

심층면접 진행 체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원이 해당 시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면접 대상자를 섭외하고 대상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징인 연령, 입양 관련 경험, 자녀 수 등을 파악하였다. 면접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면접 시간 및 면접 장소를 정하였다. 면접 장소는 해당 시설 혹은 면접 대상자가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면접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 (예를 들면 시설 내 상담실)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에서의 심층인터뷰는 연구책임자 1명과 연구원 1명이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마련한 설문 내용에 기초하여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주요 설문 내용은 <표 IV-1>과 같다.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면서 연구원은 특징적인 사항을 현지에서 기록하였다. 면접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고 사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였다. 면접 후 연구진은 회의를 하여 사례에 대한 분석을 논의하여 삼각검증 하는 과정을 거쳤다. 삼각검증은 질적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심층 면접 진행 과정을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IV-1>과 같다.

10) 심층 면접 대상자들은 모두 시설을 통해서 표집한 청소년 한부모로서 이들이 전체 청소년 한부모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 결과는 모든 청소년 한부모들의 현황을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표 IV-1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심층 면접의 주요 설문 내용

시간	항목	내용	세부 내용
	본인	가족가치관	부모가치관, 자녀가치관 심리적 상태 성격 미래계획(취업, 학업, 가족)
		가출경험	가출동기 및 가출시기
↑ 임신 전	가족	원가족 부모	이혼, 재혼, 사별, 별거 등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계 및 친밀도 직업, 소득수준, 학력
		형제자매	형제자매유무 및 성별 형제 자매 관계 및 친밀도
· 임신 중	미혼부 (미혼부 가족)	미혼부와의 관계	나이, 만남 계기, 교제기간 경제활동여부, 가족사항 과거 동거여부 및 기간 임신인지 후 관계
		학교생활	임신사실 인지 검정고시 및 대안학교
· 출산	성관계 및 피임	성관계 및 피임	성관계 자발성 여부 피임여부 및 방법
		신체 변화: 성관계임신 출산	임신 원인 임신인지 후 지지 임신 후 어려움 건강상태
· 입양	출산	출산	가족 및 주변 지인의지지 과거 낙태 및 출산경험 건강상태
		입양결정	입양결정에 영향 미친 사람 입양결정 과정 양육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양육을 선택하게 만드는 지원 입양결정 후 받은 지원 입양 후유증 자녀 파양에 대한 생각
· 현재	입양	입양결정	입양결정에 영향 미친 사람 입양결정 과정 양육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양육을 선택하게 만드는 지원 입양결정 후 받은 지원 입양 후유증 자녀 파양에 대한 생각
		입양특례법	제도 인지도 여부 출생신고 및 입양허가제 입양숙려제도 인지도 여부 입양숙려제도에 대한 의견 입양특례법 개선 방안
· 미래	사회적 지원 제도	기관	기관 선택 및 입소 경로 사회복지기관 서비스 퇴소 후 계획 가장 필요한 지원 사회적 편견
		기관	기관 선택 및 입소 경로 사회복지기관 서비스 퇴소 후 계획 가장 필요한 지원 사회적 편견
↓	사회적 지원 제도	기관	기관 선택 및 입소 경로 사회복지기관 서비스 퇴소 후 계획 가장 필요한 지원 사회적 편견



【그림 IV-1】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심층면접 진행 체계도

2) 면접 대상 청소년 한부모의 특징

미혼모자시설 A와 B는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섭외된 면접 대상자들은 시설의 특성상 입양을 어느정도 고려하고 시설에 입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양 혹은 양육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면접참여자에는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청소년과 이미 출산한 청소년 한부모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면접 당시에는 입양 혹은 양육을 일단 결정한 상태였지만 모두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

미혼모자시설 A에서 섭외한 청소년 한부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1은 임신한 상태에서

입양을 계획하고 있지만 양육도 고려하고 있었다. 가출하여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다가 임신하였는데 지금의 아기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한차례 출산하고 입양 보낸 경험이 있다. 현재 아기 아빠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다가 입소하였다. 아르바이트 고용주에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으며 남자친구 가족들로부터도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A2는 임신한 상태인데 처음에는 입양 보낼 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 양육할 것으로 마음을 돌린 경우이다. 아기 아빠는 10살 연상의 성인이고 현재 관계가 두절된 상태이다. 원가족과 단절된 상태이고 신체에 문신을 새기는 등 방어기제가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인지 정부의 한부모 지원 정책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A3는 출산한 청소년 한부모인데 처음에는 양육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현재 입양할 것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가출한 남자 친구와 동거 생활을 하였으며 현재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남자친구 원가족과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지만 가족들은 출산을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미혼모자시설 B에서 섭외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B1과 B4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이후 미혼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였다. 두 사례의 특징은 임신한 사실을 모두 부모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으며 입양 결정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B2는 임신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면접 대상 청소년 한부모의 원가족 그러한 것처럼 해체된 반면에 가정해체를 경험하지 않았다. B2는 아기를 양육하고 싶어 임신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임신 말기 부모에게 알려져 현재 부모의 반대로 입양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남자친구와도 왕래하지만 양쪽 가정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 위탁 가정 지원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는 등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B3는 출산한 상태인데 임신기에는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다가 출산하고 입양 숙려기간에 마음이 바뀌어 양육으로 결정한 경우이다. 면접 당일 날 아기를 데리고 시설을 출소하였으며 이혼한 엄마와 형제들로부터 양육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현재 아기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친구가 있으며 남자친구도 지금은 양육을 허락하고 있었다.

입양시설 C를 통해 섭외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모두 출산하고 나서 입양을 의뢰한 청소년 한부모들이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들은 입양 시설에서 입양 부모가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입양시설에 아기를 만나기 위하여 방문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양시설 C의 면접 대상자들은 입양을 의뢰하기는 했지만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부모들로 볼 수 있다. C2와 C4는 출산 후 바로 입양을 의뢰하였으나 자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입양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C1은 출산 후 양육을 선택하였으나 곧 포기하고 입양을 의뢰한 경우이다. C3는 만 1세까지 양육하였지만 이후에 입양을 의뢰한 경우이다. C3는 청소년기부터 미혼상태로 자녀를 낳고 입양 보낸 경험이 3차례 있었으며 세 자녀 모두 한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특징이 있다.

미혼모자시설 D는 주로 양육을 선택하는 한부모가 입소하는 시설이었다. 따라서 동 시설을 통해 섭외된 한부모들은 모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들이었다. D1은 자녀를 임신한 후 한번도 입양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없으며 현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상당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이고 대학교에 입학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D2는 임신기에 자녀를 입양 보낼 것을 고려하였으나 출산하고 나서 양육으로 결정하여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다. 한부모 지원과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고 복지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었다.

면접 대상 청소년 한부모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2 심층면접 대상 청소년 한부모의 주요 특성

기관	대상자	입양 관련 경험	과정	출생년 (만나이)	친부	비고
A (미혼 모자 시설)	A1	입양 계획이나 양육도 고려 중	임신 9개월 (출산1회)	90년생 (22세)	27세 (헤어짐)	새 남친 교제 중 고용주로부터 노동 착취
	A2	처음에는 입양을 보낼 생각이었다가 양육으로 생각 바꿈	임신 8개월	91년생 (21세)	32세 (헤어짐)	문신, 방어기제, 폐쇄적인 성격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
	A3	처음에는 양육을 할 생각이었으나 입양으로 생각을 바꿈	출산	93년생 (19세)	21세 (만남)	출산 후 기관입소 남자친구 가족과 교류
B (미혼 모자 시설)	B1	입양 선택	임신 8개월	90년생 (22세)	헤어짐	대학교 중퇴 후 임신 임신사실에 대해 비밀 유지
	B2	입양 선택	임신 10개월	92년생 (20세)	24세 (왕래함)	해체되지 않은 원가족 아이에 대한 미련을 못버림
	B3	입양을 고려하였으나 양육 선택	출산함	97년생 (16세)	21세 (연락 두절)	새 남친 교제중 (양육 허락) 양육에 대한 원가족 지지
	B4	입양 선택	임신 중	93년생 (19세)	24세 (연락만)	고교 졸업 후 취업 생활 임신사실에 대해 비밀유지
C (입양 기관)	C1	양육 포기하고 입양선택	출산함	94년생 (18세)	19세 (연락만)	양육 선택 후 어려움을 경험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해당
	C2	입양 의뢰하였으나 양육도 고려하고 있음	출산함	94년생 (18세)	모름	출산 시 아버지사망 새 남자친구 교제 중
	C3	만12개월 양육 후 입양원에 아기 입소 의뢰	출산함	91년생 (21세)	23세	세 번의 입양 의뢰 경험 새로운 남자 친구 교류
	C4	입양 의뢰하였으나 양육도 고려하고 있음	출산함	94년생 (18세)	21세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있음 계획을 실행해 가는 중임
D (미혼 모자 시설)	D1	처음부터 양육 결정	출산함 (자녀 4세)	92년생 (20세)	22세	자립 및 양육의지 강함 대학교 입학 준비 중
	D2	입양을 고려하였으나 현재 양육 함	출산함	93년생 (19세)	30세	한부모 및 차상위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강한 의존도

2. 주요 질적 분석 결과¹¹⁾

1) 원가족과의 관계

(1) 해체된 가족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은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여 해체된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이혼 사유도 배우자의 외도(A3, C1), 폭력(A3), 경제적인 이유(C2) 등 가정 불화에 기인한 것이 많았다. 이혼한 부모들은 다시 재혼 혹은 동거를 하여 아이를 낳아 재구성된 가족인 경우도 있었다. 재구성된 가정에서 청소년들은 가족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 많았다.

“친 아빠가 총각행사를 하고 여자를 만나러 다니느냐고 엄마를 많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제가 7살 때 헤어지셨고 그 때부터 엄마하고 새 아빠랑 살고 있었어요. 형제는 여동생 하나랑 남동생 하나 있는데 여동생은 아빠가 같은 제 핏줄이구요 남동생은 엄마만 같은 새 아빠 핏줄이에요.”(A3)

“엄마하고 같이 안 산지 오래 됐어요. 법적으로 이혼을 한 지는 4월달에 따로 사진지는 오래 됐죠. 중학교 때 엄마가 외도를 해서. 언니하고 동생은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좋아서 연락 안하고 살아요.”(C1)

“엄마 아빠가 저 초등학교 이학년때 이혼 하셨어요.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노는데 정신이 팔린 거예요. 엄마가 돈을 몇 천 만원인가 몇 백 만원인가 그 사람들이 놀러 다닌다고 빌려달라니까 빌려준 거예요. 사람 잘 믿고 잘 그런단 말이에요 빌려줬는데 그걸 또 못 받은 거예요. 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지도 못하고 달라고도 못하고. 아빠랑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하다가 이혼 하셨어요.”(C2)

11) 질적 분석에 활용한 주요 분석 변수의 범주는 보고서 44페이지 <표 II-6> 참조

(2) 가난한 가족

이혼한 부모들은 혼자서 배우자 없이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이혼 후 가정은 빈곤한 상태에 빠졌고 (C3), 이혼을 한 부모는 남겨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힘겹게 경제생활을 유지해야 했다(C2). 자녀들 역시 집안일을 하거나 경제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짐을 떠안게 된다(C3). 이러한 취약한 상황은 부모와의 대화 부족, 관계 악화 등으로 이어져 청소년 가출, 학교생활 중단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출과 중퇴 등 가족과 학교라는 제도권 영역에서 이탈함으로써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된다.

“엄마가 이혼하고 나서 그때는 많이 가난했어요.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없고 먹고 싶은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형제도 많고 하나까 위로 언니 하나에 밑으로 남동생이 세 명이었어요. 시골로 처음 내려왔을 때 저는 초등학생, 언니는 중학생 바로 밑에 동생은 이제 초등학교 막내는 유치원생 다 돈 나가는 학년이었어요 아무래도 막내들은 어렸고 저희는 큰 상태여서 엄마는 일을 하고 저희가 집안일을 다 하고...”(C3)

“이혼 하시고 아빠는 회사를 저녁에 가서 아침에 오고 그러셨어요. 그 회사를 그만 두고 나서 막노동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시고 술도 많이 먹고 힘드시니까...”(C2)

(3) 대화 없는 가족생활

해체된 가족 속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부모와의 대화가 없고 단절된 청소년기를 보낸다 (B3). A1 같이 다양한 가족 관계 속에서 보호자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성장하게 된다.

“저의 집에 가면 외롭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작은 엄마 작은 아빠랑 살 때는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있었으니까 집에서 그냥 TV만 봤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 불러 가지고 놀고 집 안 나갔을 땐 새벽에 탈출도 하고 그랬어요.”(B3)

“새엄마가 데려온 오빠들 세 명이 있는데 그 오빠들하고 우리 아빠랑 바로 친해져서 우리 삼남매는 신경을 안 써요. 친엄마는 새 아빠하고 또 애기 세 명 또 놓고 수원 쪽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고등학교 때 18살 땐가 19살 땐가 보고 그게 끝이거든요. 친엄마가 가정꾸리고 살고 있는데 대뜸 엄마 찾아갈 수도 없고... 집에 다시 들어가자니 또 새엄마하고 세 오빠들이 좀 많이 싫어서...”(A1)

(4) 가정 폭력 경험

A3, C2와 같이 파괴된 가족 속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가족 폭력의 희생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C2의 경우 부모들 간 배우자 학대 등을 경험하면서 자라난다.

“제가 사고를 많이 쳤는데 새 아빠한테 되게 많이 맞았어요. 뭐 하나 잘못하면 먼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부터 날아오셨거든요. 엄마도 새 아빠한테 많이 맞고 사셨어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찾아가서는 아니다 나는 내 와이프를 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엄마도 덩달아서 아니다 안 맞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A3)

“아빠랑 엄마랑 저 초등학교때 이혼 하셨어요. 아빠가 또 되게 무서우시거든요. 막 진짜 되게 화가 나시면 칼도 드시고 그랬어요.”(C2)

“갑자기 엄마가 없으니까 저희 둘 다 너무 힘들고 해서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도 그랬어요. 엄마가 저희 좀 컸을 때 내가 애들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이만큼 키워 놓았는데 어딜 데리고 가냐고 또 싸우다가 아빠가 뜨거운 물 엄마 머리에 붓고 막 그랬어요.”(C2)

D2와 A3의 경우와 같이 가족 폭력 이외에도 이혼한 부모들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 증상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저희 엄마가 정신분열증이라는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친구랑

밥 먹을 때 밥 바꿔먹어라 독 탔을 수도 있다 핸드폰 도청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대화가 안 통했어요. 저희 엄마가 피부관리사 가게를 하셨는데 가게가 돌아가질 않았어요 .당연히 망했죠. 15년 동안 하셨는데..."(D2)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나서 아빠가 빗진 사람들이 엄마를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엄마가 제 밑의 여동생이랑 함께 죽겠다고 방에 선풍기 틀어놓고 창문도 안 열어놓고 에어컨도 그냥 틀어놓고 죽겠다고 그러신 적이 많거든요.”(A3)

(5) 단절된 가족

이혼한 부모는 자녀들과 거의 연락이 없거나 자녀들 역시 별다른 애정을 갖고 있지 않아 연락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D1, C4, B4). 이러한 원가족과의 해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낳고 스스로 키우려고 할 때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엄마 아빠가 네 살 때 헤어지셨고 할아버지랑 함께 살았어요. 엄마랑 고1 땀가 그 때 연락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엄마 기억 자체도 없고, 애정도 없고.”(D1)

“엄마 아빠 원래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엄마는 그냥 엄마 나름대로 돈 벌러 산으로 가셨어요 민박하시러...”(C4)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엄마가 만나자고 하는데 불편해서 안 만나요. 어릴 때 헤어져서 별로 기억도 없고 그냥 어색해서 싫어요. 미운 건 아닌데 정이 없어요.”(B4)

(6) 자녀의 부모관에 미치는 영향

부모들의 가정불화는 자녀에게 투영되어 청소년 한부모들의 가족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B2와 같이 미혼 임신, 이혼을 경험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을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고, D2의 경우 자녀들 역시 본인이 한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게 된다. D4는 본인들이 임신하게 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

“제가 오남매거든요 오남매 중에 넷째예요 부모님도 제 나이 또래에 큰 언니 가졌었고 힘든 걸 잘 아서가지고. 부모님은 결혼하셨는데 전 안된다고 하셨어요.”(B2)

“이거 말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맨 날 세뇌시키거든요 열심히 살라고. 결혼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래요. 요즘에 결혼해도 막 이혼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저털 바에 결혼하지 말고 너 혼자 잘 먹고 잘살라고 연애만 하라고.. 저도 어렸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이혼해서 따로 사시거든요 성격차이가 커서 엄마도 아빠도 간섭 받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B4)

“저까지 해서 엄마 혼자서 젊은 22살에 저희언니를 낳았거든요. 저희 엄마도 미혼모여서 저를 힘들게 키우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버려서 실망시킬까봐 이야기 못하고 있었어요.”(D2)

(7)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및 학교 중퇴

B3, C2, C4, A3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정 파괴와 가정불화는 결국 청소년 한부모들이 임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가출 및 학교 중퇴 등으로 이어진다. C1은 위기 상황에 있는 본인에게 학교로부터 아무런 지원과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토로하였다. 가출은 청소년 한부모 본인 들 뿐만 아니라 같은 가족 환경 내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A1).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었어요. 그거 한번 하고 나서 그 뒤로는 가출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제일 길게 가출 했었던 기간이 4개월 정도 되요.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기 겁겁하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보고 싶었던 거 다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국 일주 했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있었는데 혼자 사는 친구들도 있었구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며칠만 있다가...”(B3)

“고등학교 일 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두었어요. 그때 한창 말썽 부리고 아빠랑 싸움을 많이 해서 집 나가고 그랬어요. 아빠가 진짜 무서우셨거든요. 아빠랑 저랑 성격도 안 맞고 하니까 무슨 말만 하면 싸우고 한 달 동안 말 안하고 저 한 달 동안 방안에서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집을 나가 있다가 또 집에 들어가서 또 좀 있다가 또 나갔다가 계속 그랬어요.”(C2)

“자퇴를 하고 자퇴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때부터 나와 살았어요 계속.” (C4)

“엄마 아빠랑 더 트러블이 생기다가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때 부터 나와서 살았어요.”(A3)

“그런 거 없었어요. 너 학교 나가고 싶으면 학교 나가라 이런 거였어요.”(C1)

“그러다 보니까 아빠한테 소홀감도 많이 들고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왔 거든요 17살 때 나왔고 우리 언니는 성인 되서 얼마 안 되가지고 나오고 내동생도 제 동생도 집에서 나오려고 태권도 학원 사범으로 일하고 있어요. 언니도 새엄마 때문에 아빠하고 사이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집에서 지내기 싫어서 기숙사 들어간 거거든요. 제 남동생도 지금 집에서 나오려고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남매가 다 아빠하고 멀어졌어요. 새엄마 때문에.”(A1)

2) 미혼부의 특성

(1) 만나게 된 경위

아기 아빠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 배경은 B1, D2, C4, B2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부분 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취약한 배경 하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친구 역시 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남자친구의 경제적인 취약성은 임신한 여자친구와 태아에 대한 무책임성, 원가족에 대한 의존 및 비독립성으로 이어진다. 대부분 남자친구와의

교제는 1년 미만으로 짧은 기간 안에 종결되고 이후에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와 같은 연인관계는 더 이상 아니다.

“학교 그만두고 일하면서 아기 아빠를 알게 되었어요.”(B1)

“학교를 안다녀서 바로 애기 아빠를 만나서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D2)

“고등학교 일학년 때 자퇴하고 같이 일하다가 사귀었어요.”(C4)

“작년에 5월 달 쯤 일하면서 만나서 이제 한 만남 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B2)

아기 아빠가 교제 하던 사람이 아니라 우연하게 만나게 된 경우(C4)와 여러 명의 남자와 심각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갖으면서 아기 아빠가 불분명한 경우(C2)도 있었다.

“애 아빠는 사귀던 사이가 아니라 제가 그냥 술 먹고 실수로 남자애랑 잤는데 진짜 그렇게 딱 된 거예요.”(C4)

“애 아빠도 없어요. 그때 작년 여름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났던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명 중에 누군지 확실하지 않아요.”(C2)

(2) 남자 친구의 경제적 취약성

남자친구의 대표적인 특성은 경제적인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A3, C1 사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남자친구 역시 대부분 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직인 경우(B3),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A2),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시 복학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B2)도 있었다.

“남자 친구는 호프집에서 야근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 출산 하기 3개월 전부터 일을 안 했어요.”(A3)

“옛날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C1)

“아기 아빠는 원래 학교 복학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가 지금 알바하고 이제 9월 달에 복학 준비하고 있어요.”(B2)

“남자 친구는 일을 구하고 있긴 한데 거의 노는 식예요. 고등학교 졸업은 안 했고...”(B3)

“아이 아빠는 육 개월 정도 사귄 사람인데 10살 더 많고 버는 돈은 일정하지 않아요.”(A2)

아기 아빠 역시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임신한 청소년과 태아에 대해 무책임하고 유아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D2, C4). 남자 친구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은 여자 친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C1, C3).

“무능력 했어요 책임감이 하나도 없고. 아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기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기를 제일 먼저 걱정해주고 하는데 자기만 힘들다고 하니깐.”(D2)

“제가 혼자 사니까 돈 좀 쪼들리게 살았거든요 애들이 남자친구한테 말하라고 해서 말 했는데 육바가지로 먹고 끝났어요. 개 책임감 없는 거 알고 더 이상 육먹기도 싫고 해서...”(C4)

“임신 중에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그때예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도 애기 아빠가 돈 다 가져가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삼천 원이 있었는데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사먹으려고 그 돈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 아빠가 담배 값이 없다고 그 돈을 뺏어 갔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가 솔직히 제일 힘들었어요.”(C1)

“만났을 때 동안 계속 되게 잘해줬으니까 지한테만 헌신 했으니까 그걸 바라고 헌신적인 여자가 그냥 필요했던 거겠죠. 남자 친구는 아무 일도 안했어요. 제가 다 벌

어서 했죠.”(C3)

남자들과 사귀는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A3와 C3는 미혼부로부터 폭력을 당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손찌검 했을 때 그래도 제가 좋아하니까 잡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손찌검 하고 한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게 맞더라고요.”(A3)

“저를 때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아니다 싶어서 헤어졌어요. 한번은 집에 찾아와서 죽이려고 해서 죽을 뻔도 했어요. 목 조르고 칼로 막 난동질을.. 엄마집으로 도망갔다가 납치당해서 되게 많이 맞기도 했어요.”(C3)

(3) 원가족에 대한 의존성

A1과 A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남자친구의 유아기적 태도와 경제적인 무능력은 원가족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남자의 원가족이 출생을 반대하는 경우 남자친구는 자기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그대로 원가족의 말을 따르게 된다.

“소극적 성격이다 보니까 자기 엄마한테도 뭐라 딱 잘라서 얘기를 못하고 자기가 끝맺음이 안 되니까...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없고 되게 소극적이고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하면 싫은데도 싫다고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바보같이 착한 게.”(A1)

“저는 오빠 군대 가기 전까지만 오빠랑 같이 살고 싶죠. 근데 오빠도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또 같이 산다고 하면 시어머니 난리 나실까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정말 중학생 이에요. 저는 오빠가 성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빠가 아빠 무서워서 자기주장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해요.”(A3)

“좀 어머니가 집착이 심해요 아들한테. 금전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집착도 되게 심하고 남자친구가 거기에 얽매여서 계속 살다보니까 좀 오빠가 어머니 쪽으로 휘둘리는 편이에요. 지금 어머니한테 꼬박 생활비 30만원씩 주고 있어요.”(A1)

(4) 남자 친구에 대한 의존

미혼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대상자들은 미혼부와 단호하게 헤어지는 행동을 보이지 못한다 (D2). 이는 면접 대상자들 주변에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으로 청소년 한부모들은 남자 친구들의 무책임성, 경제적인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로서의 모성애도 이러한 행태에 기여한다(A3, C3).

“애기 아빠가 입양을 보내자고 할 정도로 무능력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내가 이 애기를 키운다고 결심을 했지만 혼자이기 너무 무서운 거 예요. 애기 아빠가 진짜 무능력한 상태인데도 제대로 된 돈 100만원도 조차도 못 모아오는 사람을 가지고 계속 못 놓고 있었어요.”(D2)

“제가 정이 되게 많아요. 정을 정말 제가 못 떼요 한번 정든 사람한테는... 정 때문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A3)

“저 뱀에 수술을 했거든요 같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를 감싸주다가 머리 수술을 했어요. 머리에 피가 고였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큰 수술도 아닌데 좀 책임감을 느낀 거 같아요. 그래서 사귀자고 해가지구. 나 뱀에 다쳤으니까 저는 책임감으로 사귀었어요. 그 뒤로 제 청춘을 바치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인생이 다 망친 거죠...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하는 점이요? 아이 아빠를 만난 거요.”(C3)

“대부분의 경우 아기 아빠와는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는 상태였다. 본인이 더 이상 만나기 원하지 않아서 헤어진 경우(A2, B4),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남자가 보이는 무책임성 그리고 출산 반대 등으로 인해 다투게 되어 헤어진 경우도 있었다.”(B1, C1)

“연락은 오는데 제가 번호 수신을 차단해서 연락 안 받아요. 아기 아빠는 생각하는 것이 평범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달라서 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애가 있는지 알고 낳자고 그러는데 저는 입양 보낸다고 거짓말 했어요. 제가 확실하게 양육할 거지만.”(A2)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저 원래 남자를 막 좋아하고 그런 편이 아니어서.. 그냥 금방 질려요.. 다 옛날에 남자친구 다 그랬어요 금방 질렸어요. 그냥 한 달이나 오십 일만 되도 뭔가 흥미가 없어요. 이제 다 알아 버린 거 같아요.”(B4)

“이번 이 일 때문에 이제 싸우고 계속 그러다가 애 아빠는 안 만나요. 애 아빠는 형편도 안되고 애를 계속 지우라고만 하고... 저는 입양을 보내든 우리 내가 키우든 낳자는 위주였는데 애기 아빠는 회피만 하고 그러니까 계속 싸우다가 인제 헤어지게 된 거죠.”(B1)

“남자친구가 8개월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되게 막막했어요. 남자 친구는 현실 좀 보라고. 아무래도 어린나이에 애기를 키우겠다고 하는 게... 솔직히 30대 결혼하신 분들도 애기 키우기 힘들어서 돈 좀 많이 벌어놓고 애기 낳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기가 그렇게 생겼으니...저는 이제 개랑 같이 살 그런 계획을 다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C1)

미혼부와 헤어진 이후의 관계를 보면 B4는 헤어졌지만 연락은 유지하고 있었으며, D1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출산 후 연락해 보았지만 별다른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A1은 미혼부의 연락처가 바뀌어서 친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임신 한 것은 헤어지고 나서 알았는데...근데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 상태예요.”(B4)

“아기 아빠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고. 나중에 입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입양 보낼 때 아빠가 필요하다고 애기를 들었거든요.”(A1)

“애기 낳고 아기 아빠에게 연락 해보긴 해봤어요. 몇 번.. 근데 전혀 애기한테 너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건 물어보는데 애기는 어떠냐 이런 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D1)

(5) 새로운 남자 관계

아기 아빠와 헤어지고 난 후 남자와의 교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B3, A1, C2, C3와 같이 임신 중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사귀는 경우와 C1, A3, B4와 같이 당분간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상반된 형태이다. 남성에 대한 미움과 의존성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

아이 아빠 이외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경우 임신 중에 만나게 되어 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날 당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 만남의 초기에는 자녀를 함께 키우자고 한다 (B3, C3). 하지만 함께 키우자고 하다가 나중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C2). 새로운 남자친구 역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A1). 하지만 C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주변의 지지망이 없는 면접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남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남자친구는 제가 임신 8개월 때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시설에서 나와서 집에 있을 때였어요. 남자 친구는 만났을 때 제가 임신했는지 몰랐는데 애기 낳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이번 남자친구는 애기 낳은 거 알고서 같이 키우자고 해요.”(B3)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하자고 해요. 내가 키운다고 하면 키운다고 하더라도 구요.”(C3)

“그 애기 아빠 말고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따로 있거든요. 남자친구는 자기 아기 아닌 거 알아요. 남자친구는 지금 생활용품 파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월 150을 받는데요. 20만원씩 그 팀장님께서 방세 보증금으로 빼가세요.”(A1)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애 아빠가 아니에요. 임신했을 때부터 알았어요. 8개월 때. 원래 애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싸우고 나서 화나게 하려고 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애기 하면 헤어지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 해줬어요. 남자친구가 미혼모센터에 데려다 주고 가끔 와서 보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중간에 또 헤어졌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헤어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붙잡았어요.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좋아하니까 계속 붙잡았어요.”(C2)

남자를 다시 사귀고 싶은 않다는 사람은 아기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 다른 남자를 사귀고 싶지 않다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C1, A4, B4).

“남자 만날 생각이 없어요. 아마 저는 그런 애기 아빠 같은 똑같은 남자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남자를 가까이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C1)

“저는 지금 오빠랑 헤어지면 남자 만나기 싫어요. 정말 남자 못 믿겠어요. 다른 남자들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저는 지금 아가한테 미안해서 다른 아가는 못가질 것 같아요.”(A3)

“지금은 남자친구 사귀고 싶지 않는데요.”(B4)

3) 미혼부 가족의 특성

남자친구 역시 결혼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았다(A1, C3). 대부분의 남자 친구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 이유도 이러한 파괴된 가정 때문이었다. 남자친구의 형제들도 복잡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C3).

“솔직히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한 관계인데 가족 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셋째 언니하고 남자친구 아버지하고 아들을 낳아 가지고...”(A1)

“남자친구 부모님이요? 두 분도 재혼 하신 분들이라 아빠만 친아빠고 여자가 새엄마고 이제 새엄마한테도 애들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하는 거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좀 어렵네요. 그냥 자신이 없어요.”(C3)

“애기 아빠의 형이 있었고 형 와이프도 있었고 일곱 살 정도 된 애기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다가 보단 그냥 같이 산거예요. 남자 쪽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둘째도 지우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났어요.”(C3)

임신 한 사실을 알게 된 남자 친구 부모들은 대부분 면접 대상자들을 좋아하지 않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다(B2, A1). 면접 대상자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해서도 혈육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A3). 임신한 면접 대상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었다(C1).

“부모님은 이번에 이번 일 때문에 제 남자친구를 처음 아셨어요. 그런데 좋아하시진 않죠. 남자 쪽 부모님들도 만났는데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B2)

“지금 상황에서는 입양을 보낸다고 한들 호적상의 혼인관계로 해서 지내게끔 해 줄 건지 안 해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A1)

“오빠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저를 못 받아들여서 아가를 입양 보내라 이런 식 이거든요. 제가 아직 고졸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땀에 탐탁지 않아서... 시어머니 정말 먼저 연락 안 주세요. 자기 아들 없을 때 자기 아들이 저랑 있다고 생각 할 때에만 전화오세요.”(A3)

“남자 친구 집에서 저 임신한 것 아시고 아르바이트하는 피시방으로 오셨는데 저는 그때 평생 살면서 들을 욕은 다 들은 거 같아요.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사장 나오라고 하면서 애 임신했는데 우리 아들 뺏으려고 한다. 우리 아들 발목잡지 말라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저한테 고모님이 막 칼을 이렇게 들이 대면서 내가 니 배 찌를 거라고.”(C1)

4) 형제·자매와의 관계

C2, C3, A3 경우와 같이 청소년 한부모들의 형제 역시 비슷하게 학교를 중퇴하거나 가출한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한부모들과 같은 배경의 가정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동생이 학교 안가고 몰래 빠지고 애들 때리고 다니고 핸드폰 훔치고 편의점 털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 많이 연락 왔었거든요. 가끔 뭐하나 연락해도 그냥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제 컸다고 돈 주는 거나 먹을 거 사주는 거 아니면...”(C2)

“근데 다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다들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더라구요. 저보다 한참 늦게. 언니도 고 2때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계속 살고 있고 동생도 이제 졸업하기 얼마 안 되서 그만 두어서 아쉬운 게 좀 있어요.”(C3)

“둘째 동생은 중 3인데 지금 가출해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언니는 돈 필요 할 때만 연락하니까 연락 안 왔으면 좋겠어요.”(A3)

청소년 한부모의 형제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앞의 C2, C3, A3에서와 같이 가출한 형제들과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경우와 C1과 C3와 같이 가족생활의 불화로 인하여 형제들끼리 모여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이다.

“언니는 따로 나가 산지 좀 되었어요. 저랑 동생이랑 아빠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동생이 먼저 언니 집으로 내려오고 저는 미혼모 시설에 가게 되고 퇴소를 해서 이제 언니한테 오게 되었어요.”(C1)

“솔직히 다 내가 겪었던 것들이고 그냥 눈에 훤히 다 보여요.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눈에 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원래 따로따로 다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나쁜 애들하고 자꾸 막 여관에서 자고 그래서 그게 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같이 살자 그랬어요.”(C3)

5) 학교 생활

(1) 학교 생활 중퇴

청소년 한부모들은 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C1, C3). 학교를 중퇴하게 된 원인은

가족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C1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친구들과 밤늦게 까지 어울려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C3는 가족의 경제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학교 다니는 것 보다는 그만 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었다.

“저는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한번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또 다른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었어요. 맨 날 자느라 학교 못 갔어요. 선생님들이 이불 갖고 베게 갖고 와서 자도 되니 학교에만 와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안 간 거예요.”(C1)

“저는 학교를 일찍 그만 뒀어요. 중 1때요. 엄마는 많이 반대 했는데 돈도 없고 학비도 계속 나가고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학비도 계속 나가고 좀..싫었어요. 이제 집도 가난한데 뭐하러 학교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계속 했어요.”(C3)

청소년 한부모의 원가족 역시 면접 대상자들의 학업 유지에 별다른 지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퇴를 방관하는 경우도 있었다(A3, B3). 원가족들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속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원인도 역시 가족 해체와 빈곤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집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친 아빠한테 갔어요. 근데 친 아빠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구요. 친 아빠가 재혼도 하셨고 학교가 저한테는 적응이 안 되는 거 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여기 학교 못 다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욱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친 아빠가 원래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전학 취소장을 써주셨으면 됐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서 안 오신 거예요. 또 전학 갈 학교에서는 빨리 자퇴신청서라도 안내면 퇴학처리 된다 이렇게 돼서 자퇴서를 낸 거예요.”(A3)

“학교에 별로 뜻이 없어서 중학교 끝나고 계속 집에 있었어요. 부모님도 맨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다고 이제 별 신경 안 쓰시고...”(B3)

(2) 출산 이후 학업 생활

출산한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학교 중퇴로 마치지 못한 학업 때문에 시설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A2, A3와 같이 공부에 뜻이 없어 검정고시 준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고졸 학위 취득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부에 취미가 없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형식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공부 재미없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기초가 아예 없어서 독학이 안 돼요. 선생님들도 빨리 안 구해지고요. 검정고시 8월 달에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굳이 지금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취업 상담을 받으려면 시설 번호가 있어야 되요. 시설번호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 데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대학은 모르겠어요. 대학 거기까지는...” (A2)

“검정고시를 하라고 학원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공부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공부부터 하라고 검정고시부터 들이미셨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정말 공부를 정말정말 싫어해요. 검정고시 시험은 딱 두 달 남았어요...붙고 싶지만 붙어야죠. 고졸을 해야 뭐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A3)

D1은 정규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도 학교 측의 반대로 인해 입학하지 못했다. 대안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였으나 시설이 있는 서울 소재 대안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서울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야만 했다. 면접자의 경우 지방에서 서울로의 전학 처리가 되지 않아서 대안학교에도 입학하지도 못했다. 면접 대상자는 검정고시 보다 정규 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노동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지방에서 다니던 학교를 휴학 했어요. 서울 올라와서 미혼모 시설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다니다가 교장선생님이 받아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전학 상담 하시는 선생님이 굳이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자고 했었는데 그래도 담임선생님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게

교장선생님 귀에 들어가서...인권위원회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학 상담 선생님이 불이익을 받으실 거 같아서 제가 증언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게 됐어요. 선생님도 그만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D1)

“대안학교도 알아봤었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소재로 알아봤는데 그러면 서울소재 학교로 다니고 있어야 된대요. 제가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서울 학교에는 아직 전학 처리도 안됐고, 그래서 전학 갔던 학교에 입학 한 것처럼만 해 달라 그랬더니 그걸 빌미로 입학 하지 않겠냐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렇게 돼서 대안학교도 포기하게 되서 결국 검정고시로 간 거 였어요.”(D1)

(3) 교우 관계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는 임신 전과 임신 후로 크게 나뉘게 된다. B3, C1과 같이 임신 전에는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의 부족으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는 경향을 보인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학교 중퇴와 가출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임신하면서부터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된다. C1, A3는 임신한 상태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다. D2는 출산 후에 본인이 한부모라는 피해의식으로 인해 학교 친구들을 멀리 하게 되었다. 이러한 또래 친구들과의 단절은 청소년 한부모들의 고립성과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집 들어가는 거 싫어서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요.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이랑 더 좋아요 친구들하고는 집 들어가기 싫어하는 게 공통점이구요.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친구들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인터넷 친구들은 한 번씩 보면 다 진짜 친구가 되는 거고.”(B3)

“그때 친구들이랑 그때는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계속 밤늦게까지 노니까 학교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C1)

“영화를 보면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술도 먹을 수 없고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노래방 가고 피시방 가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저는 카페 같은데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것도 지루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친구들도 대부분 잃었던 것 같아요.”(C1)

“친구는 원래 많았는데 그만두고 다 끊겼어요. 다시 연락해도 못 만날 것 같아요. 개네들은 졸업해서 일하는 애들은 일하고 대학 다니는 애들은 대학 다니고 있는데...저는 지금 미혼모 센터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창피해요. 그렇게 생각 안하려고 해도 자꾸 위축 되요.”(A3)

“남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랬다는 거에 자신에 너무 자책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연락을 안 해요 제가 또래 친구들 한명도 연락이 없어요. 스무살 나이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어느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어요.”(D2)

6) 임신·출산 단계

(1) 임신 전 생활 특성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A1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느정도 경제적인 자립을 하게 된다. D2와 C3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빈곤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였다.

“집 나와서는 평택에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24시간 풀 근무 뛰었어요. 원래 편의점에서 일하면 칠팔십 밖에 못 벌어요. 근데 24시간 일하니까 야간도 같이 해서 야간에는 오천 원 이거든요. 많이 받으면 백만 원 넘게 받았었어요.”(A1).

“고등학교 입학할 해야 할 때 저희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만 계속 했죠. 그냥 저희 집이 너무 힘드니까 나도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받은 월급으로 제 것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벌은 돈으로 엮매이지 않고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한달 월급 받아서 한 번에 다 쓰고 이런 거 있었어요.”(D2)

“중학교 그만 두고 처음 일 시작했던 게 고깃집 서빙이었어요. 고깃집 서빙을 하고 그때가 열다섯 살이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직원으로 열 몇 시간씩 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백 삼십 정도 받았거든요 백 삼십이면 솔직히 그 나이에 정말 많이 번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피씨방 아르바이트도 하고, 토스트 가게 패스트푸드점에서 일도 하고... 차라리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고 제가 쓰기 위해서 일했어요.”(C3)

면접대상자의 임신 직전 거주 특성은 원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A1, B4, B1) 혼자 사는 생활로 인해 가족의 보호 및 지지 부족은 더욱 심화된다.

“집은 편의점 사장님이 보증금 내주시고 잡아주셨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내가 집 나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안했어요. 집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 내고 살았어요.”(A1)

“서울에서 저 혼자 학교 졸업 했어요 부모님은 따로 계시고. 중학교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고등학교 오면서 서울로 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고모 집에 있었어요.”(B4)

“서울로 대학교를 오게 되었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친구랑 같이 자취했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학교를 1년만 다니고 그만 둔 후 계속 그때부터 일을 했어요. 아무래도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집 나와서 생활비며 학비며 만만치가 않았어요. 부모님은 등록금을 대출 형편이 못되고 집에서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왔는데 인제 생활이 안 되니까.”(B1)

A1과 A3의 사례에서와 같이 남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쫓겨 나가지구 나와서 있다가 남자친구가 같이 집나왔었어요. 남자친구도 제가 집 나온 다음에 저를 찾아서 나왔나 봐요. 저하고 만나서 3일 4일 같이 있다가 수원으로 몰래 집을 구했어요. 같이 살려고.”(A1)

“남자 친구 집은 원래 잠실인데 저랑 같이 살겠다고 고시원에서 함께 살았어요.”(A3)

(2) 임신 과정

임신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비록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졌으나 음주 후 관계를 갖거나(C2, C3, C4), 정확한 성교육 또한 받지 못한 상태로 예기치 못한 임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가출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새 남자친구와 현재 교제 중이기도 한데(A1, A2, B3, C2, C3). 면접 참여자의 대부분은 이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C2의 경우는 잠깐 만난 사이에서 임신을 했으며 미혼부가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그땐 그런 생각 없었어요.”(C2)

“그냥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D1)

“삼 개월 정도 있다가 내려오게 됐는데 연락이 오더라구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그 연락을 피했어야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직히 궁금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밥을 먹고 했는데 남녀가 술 먹고 그러다 보면 모텔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수였던 거 같아요.”(C3)

“그땐 몰랐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시기가 불안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불안하다고 이야기 했어요. 설마 했죠. 생명이 그렇게 쉽게 생길 수 있겠냐고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B1)

실제로 피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B3와 C3의 경우 피임 방법의 부주의로 인해 실패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C2와 같이 성관계에서 피임 부주의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피임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콘돔하고 약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약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B3)

“그 당시에 피임을 했었는데 딱히 만날 남자도 없었고 어차피 생리 주기도 맞춰졌

졌다 해서 약을 안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술 먹다가 그렇게 됐다가 덜컥 임신 된 거고.”(C3)

“처음에 원하지 않던 임신을 했었어요. 이제 열일곱 살에. 열아홉 들어설 때 쯤 두 번째,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는 세 번째예요.”(C2)

(3) 임신에 대한 인지

면접 참여자들은 대부분 임신 인지의 시기가 늦은 경향을 보인다. 비록 임신 1개월 이내의 초기(B2, C4, D1, D2)에 인지한 경우도 있었지만, 3~4개월(A1, A3, B1, C1, C3), 6개월(B3), 8개월(B4, C2) 혹은 오랫동안 임신한지 몰랐다고 응답한 경우(C3)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계획된 임신이 아니므로 임신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 대부분 임신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은 임신 전부터 생리불순이었거나(A1, B3, B4) 불편한 증세를 느껴서 병원에 갔어도 미혼이기 때문에 임신을 염두에 두어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B4)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가 늦었다.

“배도 안 나왔고 입덧이랑 그런 것도 아무것도 그런 게 없고 해서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니까 친구 중에 아들 있는 애가 있는데 보더니 너 임신한 거 같다고 테스트기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러고 있다가 뭔가 너무 이상해서 8개월 정도 되니까 태동 느껴지고 하니까 이상해 갖고 산부인과 갔는데 왜 여태까지 몰랐냐고 했어요.”(C2)

“제가 배가 별로 안 나와서 조금 살찐 정도 그렇게 보여서 학교를 임신 7개월까지 다닐 수 있었어요. 졸린 거 빼고는 크게 힘든 것도 없었어요.”(D1)

“임신 한지 6개월 때 처음 알았어요. 제 주위에 애들이 생리 끊긴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스트레스로 끊기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인 줄만 알았어요. 입덧도 별로 안했고 매스껌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어지러운 것도 없었어요. 근데 6개월 때 태동이 느껴지니까 배에서 뭐가 움직인다고 느껴지니까 나중에 그냥 에이 설마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아 임신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가 알고 나선 산부인과에 같이 갔어요. 그때 산부인과 갔을 때가 28주하고 4일되던 때였어요.”(B3)

A1은 임신 징후가 보여도 병원을 찾지 않았고, B4는 병원에서도 미혼 여성이기 때문에 임신 여부를 진단해 주지 않았다. 이러한 모성보건에 대한 낮은 지식은 임신 후기에야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생리가 한 달 걸려서 한번 나오고 했던 게 그게 착상되면서 피가 나온 거래요. 근데 저는 그게 생리인줄 알아서 뒤늦게 알았거든요. 4개월 할 때 정도? 그러니까 원래 제가 불규칙하거든요. 생리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되게 불규칙해요. 한 달에 딱 그 시기에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불규칙해요.”(A1)

“전 배가 8개월까지 많이 안 나와서 잘 몰랐어요. 원래 생리불순이어서 속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에는 산부인과 안가고 그냥 종합병원 갔는데 그때 위장병이라고 그랬거든요.”(B4)

(4) 임신 후의 주변 지지 체계

임신 인지 후에는 지지체계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대부분 적절한 지지체계는 없었다. 임신 인지 후에는 가장 먼저 아이의 아빠인 남자친구에게 알렸으나 이들로부터의 반응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이들 미혼부 중에는 오히려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까지 일삼기도 했으며 (A3) 이들 중에는 처음에는 같이 키우기로 하고 나중에 부정적으로 바뀐 경우도 있다(C1)

“남자친구가) 무서웠어요...저한테도 좀 그랬어요. 현실 좀 보라고...아무래도 어린나이에...애기를 키우겠다고...솔직히 30대 결혼하신 분들도 애기 키우기 힘들어서 돈 좀 많이 벌여놓고 애기 낳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기가 그렇게 생겼으니...현실을 좀 보라고 어떻게 키울거냐고.”(C1)

주변의 지지는 대부분 원가족과 친구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다. 원가족의 경우는 언니(A1, B3, C1), 부모님(B2, B3, D1), 어머니(C3), 아버지(C1)가 있었고, 다른 경우 친구(B1, C4)가 C2의 경우에는 친구와 친구의 가족이 임신 후 지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 한부모의 지지 체계인 원가족과 친구 모두 낙태를 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는 임신 사실을 알고) 그냥 우셨어요. 아버지가 되게 욱하신 게 되게 심하시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되게 침착하시더라구요. 아빠가 이 시설도 다 알아봐주시고.”(B2)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인데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알아서 개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었나 봐요. 제가 임신을 했었다 얘기를 하다가 개네 부모님이 저희 아빠 돌아가신 것도 그런 것도 다 아니까 그러면 집으로 데리고 와라 혼자 어떻게 하겠냐 집에 와서 밥도 먹고 하면서 여기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그래 그러라고 해서 갔는데. (친구의 부모님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친구네 아빠분이 저한테 막 딸딸 이러면서 딸같이 해주시고.”(C2)

B2와 A3는 임신 한 사실을 초기에 알았어도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임신 말기에 원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초기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B2는 혼자서 낳기를 결정하고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나중에 우연히 알려진 경우이다. A3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 경우이다. D2의 경우는 임신을 해서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가족들에게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청소년 한부모들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집에서도 알고 그쪽 집에서도 안게 임신 8개월 때였어요. 부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친하고 그래서 더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입덧도 안 했구요. 겨울이라서 옷도 되게 두껍게 입고 있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눈치를 채서 알게 되었어요.”(B2)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니까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12월 달 쯤에 오빠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근데 저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시면서 낙태를 알아보시더라구요. 지워야겠다고.”(A3)

“(부모님을) 실망 시킬까봐 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까지 됐는데 야단보다는 상황자체를...제가 살도 안찌고 배만 나와서 그때부터 6개월 정도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네 집에서 살게 이려고 뛰쳐 나가버린 거죠.”(D2)

(5) 임신 관련 건강 문제

임신한 사실을 임신 초기에 알지 못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 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상황은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켰다 (B4, D2, C1). 이러한 취약한 노동 환경은 이후 청소년 한부모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출생한 아동이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육체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기에 남자친구, 남자 친구 가족, 그리고 원가족의 반대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심한 경우 임신 후 남자 친구 그리고 남자 친구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받고 있기도 했다(A3, C3).

“임신 8개월까지 미용일을 계속했어요. 맨날 구역질 하고 화장실 가고 그랬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 갔었는데 그때는 그냥 위 안 좋고 소화 장애 있다고만 했어요.”(B4)

“임신 거의 한 7~8개월 때까지 피시방 알바를 했어요. 담배 연기 막 나고 라면 먹고...”(D2)

“임신을 했을 때에도 맨날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배가 나와서 서빙을 할 수가 없어서 피시방이랑 편의점이랑에서 밖에 일할 데가 없는데 피시방에서 담배 연기 막 나도 일 할 수밖에 없었어요.”(C1)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한 경우는 A1, A3, B2, C1이 있었는데 이 중 B2는 육체적으로는 입덧도 안하고 건강하다고 했으나 출산에 대한 두려움 및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스트레스는 미혼부(A3, C1), 미혼부의 원가족과 친척(A1, C1)으로부터 오기도 했다. C3의 경우는 임신 중에 우울증이 있다고 진술했다.

“지금 출산할 거 생각하면 무서워요 지금은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B2)

“저는 애 낳기 전에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첫째 임신 했을 때에도 죽을까도 생각 했

있어요 시도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도 폭행당하고 폭력을 행사 하니까 임신한 상태로 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C3)

(6) 낙태에 대한 태도

청소년 한부모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처음 임신한 것을 안 시점부터 낙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C1, B2, D1), 두 번째는 처음에는 낙태를 생각했다가 초음파 사진보고 포기한 경우(B1, C4), 세 번째는 본인의 의지 혹은 아기 아빠의 강요로 낙태하지 않은 경우(C2, c3), 네 번째, 낙태를 원했지만 비용, 부모의 동의, 임신 말기 등 제약 조건으로 못한 경우이다(A3, B3). 각각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낙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

“저는 처음부터 지우겠다는 생각 안 해 봤어요.”(C1)

“임신 한 것은 초기부터 알고 있었지만 낙태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B2)

“딱 초음파 보면...움직이는 것도 보이고...”(D1)

* 두 번째: 처음에는 낙태를 생각했다가 초음파 사진보고 포기한 경우

“애 아빠는 형편도 안 되고 핑계만 대고 계속 지우라고만 했어요. 병원 처음 갔을 때도 저 혼자 갔었는데 솔직히 지워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병원 가고 심장 소리 들려주고 파일도 만들어주고 초음파 사진 주고 그러니까 막상 지우기가 좀 그런 거예요.”(B1)

“임신 했을 때 초기 때 지울까 말까 고민 엄청 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지운 애들도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지웠다고 해도 티도 안 나고 수술도 십분 안에 끝난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제가 안 지울 줄 알고 그 심장 소리를 들려줘 가지고...아 진짜 못 지우겠는 거예요.”(C4)

* 세 번째: 본인의 의지 혹은 아기 아빠의 강요로 낙태하지 않은 경우

“지우라고 했는데 고집을 해서 낳았어요. 제가 이제 그냥 유지를 했어요. 고집을 해서 유지를 계속 했는데 그때가 실수였던 거 같아요.”(C2)

“애기 아빠가 지우지 말라고 하고 낳고 나면 보내라고 그랬어요. 애기 지을 돈을 차라리 지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C3)

* 네 번째: 낙태를 원했지만 비용, 부모의 동의, 임신 말기 등 제약 조건으로 못한 경우

“낙태 알아봤는데 비용이 너무 크더라고요. 백만 원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미성년자였잖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서...”(A3)

“낙태는요 솔직히 낙태 생각 했었는데 그때 개월 수가 너무 많아서 낙태 할 낙태 못한 거예요.”(B3)

7) 출산 과정

(1) 모자 보건 상황

면접 참여자인 청소년 한부모들 중 출산을 한 경우는 A3, B3, C1, C2, C3, C4, D1, D2이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임신 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미숙아를 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A2, A3, C4). 이들 대부분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

“좀 일찍 낳으려고요. 제가 조산기가 있어서 아기를 36주째 되면 낳으려고 해요. 저는 먼저 나오는 문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일찍 낳으려고요. 시설에 없을 때라서 병원에 가서 바로 수술 했어요.”(A2)

“삼십사 동안 병원진료를 안 받다가 고운맘카드랑 맘편한카드 갖게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자궁 수축이 너무 심하대요. 잘하면 애기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수축 억

제제를 맞아야 된다고 해서 입원을 했거든요. 36주 때 딱 수축억제제를 끊자마자 진통이 시작하는 거 예요. 13시간 진통하고 바로 낳았어요.”(A3)

“엄마가 가고 그 다음날에 바로 양수가 터진 거예요. 시설에 전화해서 했는데 그 시설에서 산부인과 신촌에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해서 바로 갔어요. 바로 갔는데 그냥 거기서 양수가 너무 많이 흐르고 자궁 문이 아직 아예 안 열린 상태여서 위험한데 병원에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서 옮겼는데 제왕절개 해야 된다고 해서 유도분만 주사 맞으니까 갑자기 열려서 낳긴 낳았어요.”(C4)

“저 아가 출산했을 때 원래 안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아가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쪼그만한 게 들어올려서 봤어요. 얼떨결에...정말 아가가 이만하더라구요. 그거 보고 아가가 미숙아로 태어난 게 제가 흡연을 해서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미안하더라구요.”(A3)

(2) 출산 관련 정부 지원

출산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혹은 맘편한카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A3). D2는 미성년인데 부모 혹은 성인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경험했다. C1는 임신 관련 지원에 대해서 혼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병원비하고 진료비는 다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로 했는데도 부족해서 시어머니의 큰오빠 되시는 삼촌분이 내주셨어요. 산후조리는 시설에서 했어요.”(A3)

“집을 나와서 애기를 혼자 낳았어요. 제가 병원을 임신 했을 때 딱 7개월 때 한 번 가봤어요. 그때 고운맘카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미성년이라서 부모님의 사인이 나 동의가 있어야 했어요. 그때는 시설에 있지 않을 때라서 그것 때문에 병원도 못 갔어요. 부모님 있어야 된다고 하니깐 남자 친구 아는 사모님이 병원비 내주시고 분만카드 만드는 것 도와 주셨어요. 그 때 너무 무서웠어요. 돈이 없고 미성년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D2)

“보건소에서 주사 같은 것 산전 무료로 해주는 거 있고 고운맘카드로 병원비 내고
철분제도 받았어요. 이런 정보는 혼자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아냈어요.” (C1)

(3) 주변 지지 체계

청소년 한부모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임신에 대해 거의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했다. 임신에 대한 주변지지 체계가 부족한 이유는 원 가족과 미혼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D1, A2, B4), 해체 된 가족으로 인하여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B3, C2, C3), 가족에게 알렸지만 가족들이 출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경우였다(C1, A1, B2).

D1과 A2는 출산한 사실을 남자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B4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남자 친구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는 임신 사실을 알기 이전에 이미 헤어졌기 때문이다. 원가족이 모르는 경우는 임신한 사실에 대한 실망, 출산에 대한 반대 때문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당연히 주위로부터 출산과 양육에 지지를 받기가 어려웠다.

“아기 아빠하고는 자주 다투고 믿음직하지가 없어서 헤어졌어요. 임신 한 것 안 알
렸어요. 알리고 싶지가 않아서. 둘 다 학생이고 아직 믿음직한 그런 것이 없어서 그
랬는지.” (D1)

“애를 가져서 남자 친구하고 헤어졌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다가 그만 두게 되어서
부모님하고도 연락 안 해요.”(A2)

“얘기를 아무에게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임신 한 것을 양쪽 집 모두 몰라요...입양
보내면 따로 특별히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B4)

B3와 C2는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출산 이후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던 C3는 자녀 출산과 관련한 모든 행정 업무를 혼자서 해결하였다.

“퇴소하고 들어가는 곳은 아빠 집이에요. 엄마는 다른 아저씨와 동거하고 있어요.

엄마하고는 맨날 연락해요. 솔직히 엄마가 더 좋아요. 그런데 동거하는 아저씨가 아직 불편하다고 같이 사는 것을 싫어 한 대요.”(B3)

“애 태어난 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애기를 새벽에 낳고 몇 시간 뒤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아빠 장례식장도 못가고...”(C2)

“저는 애기 낳기 전부터 산전 진료비도 다 제가 했거든요. 병원비도 혼자서 다 하고 출생신고도 혼자 다하고 했어요.”(C3)

특히 임신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원가족과 미혼부의 가족으로부터 출산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C1의 사례에서 보면 남자 친구 가족의 반대가 원가족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1의 경우는 출산과 관련해서 남자 친구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2는 미혼부 원가족이 자신의 아들만을 보호하고 감싸 안으면서 뱃속의 태아를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였다.

“아빠도 처음에는 단호하게 지워라 이게 아니라 지워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키우겠다고 하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을 듣고 싶데요 그래서 말을 했더니 애기 아빠를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아빠가 막판에 허락을 해주셨어요. 낳아서 잘 키우라고요. 근데 중간에 남자 친구 집에서 다녀오시고 나서 안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C1)

“남자 친구 어머니한테는 애기 낳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 남자친구한테 불만불평 하나도 하지 말고 남자친구 말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임신부가 일하는 거니까 잘못해서 일할 때 애기가 어떻게 되거나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거를 자기한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해서 각서 쓰라고 해서 그것도 썼어요.”(A1)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은 안타깝다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진심 같지가 않았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 보다 본인 아들이 더 중요했을 테니까요.”(B2)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끌고 가서 지울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는 칠 개월쯤에 서울 올 때 알렸어요.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못 지우냐고 그러셨어요.”(D1)

“부모님이 지우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늦게 아서 가지고...그때는 지우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고. 양쪽 집에서도 입양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우리 둘 다 아기 직접 키우겠다고 우기는 베짖이 없는 거 같아요.”(B2)

한편,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가 양육을 선택한 D2와 B3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문자를 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얘기를 위해 태교를 잘 해라 이렇게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는 거 예요...그때 막 눈물을 쏟으면서 제가 엄마한테 연락을 했죠. 엄마는 저한테 오셔서 고생했다고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냐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얘기를 낳고서 위로해주는 말이 저희 엄마이셨던 거 예요. 그래서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갖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키우게 됐죠.”(D2)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그냥 바로 키우자고 그러셨어요. 네가 정 못 키우겠으면 언니 밑으로 봐도 된다고...”(B3)

(4) 시설에서의 생활

청소년 한부모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된 동기는 다양하다. 가정에서 미혼모를 보호할 수 없어서 보내는 경우(B3),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A1), 혼자서 인터넷 등을 찾아서 오는 경우(A2) 다양하다. D2와 같이 미혼모자 시설이 있다는 정보가 없어서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면접 대상 청소년 한부모 중 A1와 D2의 경우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시설 입소를 꺼렸던 경우도 있었다.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아빠에게 산부인과에서 알려줘서 처음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B3)

“산부인과 같은데 가서 낳으면 돈 나가잖아요. 그래서 남자 쪽 부모님들이 다른데 가 가지고 얘기를 낳게끔 해라. 네 자식도 아닌데 돈이 나가니까 그러셨어요. 그것 때문에 미혼모 시설 쪽으로 오게 되었어요.”(A1)

“혼자 인터넷 찾아보고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군데 다 찼렸어요. 수술을 했고 아기가 저도 일주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찾ند다고 했어요...그렇게 하니깐 자리가 있다고는 하는데 못 오게 하시던데.”(A2)

“시설이 있는 걸 몰랐어요. 시설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해서 예정일보다 한 달 더 일찍 낳게 되서 준비가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저도 입양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얘기를 키워요.”(D2)

“원래 미혼모 시설 들어오는 걸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적응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상담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쁘거나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닌 거 같아서 들어오게 되었어요.”(A1)

“시설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들어가서 밖에 함부로 못나가고 전화도 그렇게 되어있고 가뜩이나 전 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마냥 어린나이에 그냥 무서워서.”(D2)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후 청소년 한부모들의 반응은 시설에 잘 적응하는 경우(B1, B2, A3, B1, C1, D2)와 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A3, C2, B3)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러한 차이는 시설 자체의 문제 보다는 면접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쉽게 맺는 성격인 경우 시설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출 활동 등 개인적인 행동을 좋아하는 경우 시설 생활에 답답함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B1은 더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B2는 집에 있는 것 보다 더 만족하고 있었다. A3와 B1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 한부모와의 교류를 통하여 의지하고 정신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D2은 시설에서 양육을 하는 한부모들과 어울리면서 양육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면서 양육 자신감도 고취되고 있었다.

“오히려 여기 들어와서 밥도 제때 챙겨먹고 그래서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B1)

“네 여기도 괜찮아요. 딱히 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B2)

“지금 여기서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남자친구 상황도 그렇고 아가 상황도 그렇고 저랑 처한 상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요.”(A3)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해서 나중에는 서너 명 같이 우르르 가서 보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B1)

“시설에 있으면서 다른 언니들이 애기를 키우는 걸 보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주위에 있는 언니들도 하고 하니깐 저도 힘이 났어요. 양육하는 것 아무것도 몰랐는데 양육하는 언니들이 절 많이 도와줬어요. 상식적인 것 기본적인 것도 많이 알려주셨고 옷도 물려주고.”(D2)

C1은 시설에서 미혼모들과 교류하는 것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교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카페는 임신 기간 그리고 양육을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입양을 선택한 경우 지지 받을 수 있는 교류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같은데 가입을 했어요. 미혼모 카페나 어린 엄마들 카페나 가입을 해서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댓글을 달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연락을 하게 되고 한명 한명 해가지구 되게 많이 친해지고...실제로 만나본 애들도 있어요. 임신 중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애기 낳고 이제 키우기 까지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 길이 다르다 보니까...입양 보내는 애들이랑은 연락 잘 안하려고 해요. 양육하는 친구들끼리랑만 연락하고...”(C1)

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A3), 다른 사람과 쉽게 사귀지 못하는 경우(C2),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B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보다 다 언니들이고. 나이 많이 차이나면 뭐

서른 몇 살도 있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A3)

“낮을 많이 가려서 근데 가면은 말을 걸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걸어주는 거예요. 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요. 저랑 동갑인 사람이 진짜 한두 명 밖에 없어서 친해지기 어려운데.”(C2)

“미혼모 시설에 있으면서 이상한 사람을 많이 봐서요. 서로 맞춰 달라는 그런 것도 없고 청소도 구역을 나눠서 해서 하는데 다 같이 쓰는 거니까 자기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쓰는 건 더 깨끗이 해야 되는데.”(C2)

“저는 규칙적으로 있는 게 좀 답답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설을 두 번 옮겼는데 여기 도 답답해요. 모든 시설 자체가 저한테는 답답한 것 같아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애 기 낳고 3 7일 지내는 동안에는 못나가게 하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이것저것 놀러 다기고 싶어요.”(B3)

8) 출산 후 입양 결정 과정

(1) 가족의 양육 반대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반대는 미혼부의 가족과 원가족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모두 본인의 자녀를 위하여 신생아를 거부하는 행태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미혼부의 가족은 본인의 아들을 감싸기 위해 출산한 태아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A3, D1). 청소년 한부모의 원가족은 청소년 한부모의 미래를 위해 양육을 포기하라는 태도를 보인다(D2, C3).

“시부모님들이 아기를 이뻐하시긴 하는데요. 진짜 오빠랑 똑 닮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확실한 게 없다고 아가를 입양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세요. 입양 보낼 때마저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저도 두 달을 키웠고 제 새끼니까 정들 때로 다 들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A3)

“남자 부모님하고는 만나보지는 못하고 통화만 한번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일로 개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게 되고 저는 그만두게 됐는데 자기 아들 전학가게 됐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 예요. 저는 학교를 그만두게 됐는데. 확실히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D1)

“부모님이 그것을 다 받아드려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시설에 있으면서 다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뭐 부모님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보내는 친구들도 엄청 많았어요.”(D2)

“엄마도 아무래도 이제 손녀보다는 내 자식이 중요하니까.”(C3)

A3, A1, B2와 같이 남자 친구와 같이 키우겠다고 동의하고 난 후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양쪽 집안의 완강한 반대를 거스르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입양을 선택하게 된다.

“아가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오빠가 아가 낳은 거 보고 내가 키워야겠다고 절대 못 보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떠밀려서 아가를 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달을 키웠는데.. 정말 여기 들어와서 두 달 동안 지내면서 오빠랑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아가문제로 계속 싸우고 부모님 뺨에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입양을 보내자 그래서 오빠가 부모님을 한 번 더 설득을 해보겠다 했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오빠도 지치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A3)

“처음에는 같이 키우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알아버리셔 가지구.”(A1)

“아기 아빠와 저는 결혼할 생각도 있고 아기를 함께 키울 생각도 있는데 양쪽 집안에서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그냥 정리하기를 바라시죠.”(B2)

부모의 양육에 대한 반대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양육 의지가 꺾거나(B1), 양육하게 되는 경우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절망을 갖도록 영향을 미친다(A3, B1). 청소년 한부모들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양육 기술에서 미숙한 경우가 많아 부모로부터의 지지 부재는 양육을 포기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각을 하고 있긴 해요.”(A1)

“아기가 옆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입양을 보내야 되나 안보내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하는데 몸은 보낼 수 없었던 거죠. 머리로는 애를 입양을 보내야 한다고 정말 확신을 짓고 있었어요 몸은 애기를 못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본능에 따라 하기로 했어요. 이 애기를 보낼 순 없구나 이게 이런 게 그런 모성애구나 해갖고 이제 잘살아봐야지 하고서 결심하고.”(D2)

“애기 딱 봤는데 도저히 또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 갖고 거의 3주 동안 애를 데리고 거기서 있었어요.”(C2)

“다 들 마음이 여러 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려기간 일주일 동안 결정 못하면 일주일 더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일주일 더 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게 딱 결정이 나는 건 아닌 거 같아요.”(B1)

“애기 보면 되게 미안해요. 그니까 보러 가면 안 되는데.. 애기가 이제 낫을 가리니까.”(C1)

“아무리 그래도 내 핏줄이고 한데 보낸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핏덩이를 보낸다는 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C3)

“지금 보내고 나서 후회되긴 하죠. 내가 괜히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보내고 나서 그냥 차라리 빨리 입양 가는 게 낫겠다 마음 잡고 그랬는데 또 보러온다고 생각하고 사진보고 그러니까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C2)

(3) 경제적인 취약성

출산하고 나서 입양과 양육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첫 번째 요인은 A1과 C2 사례에서 보이는 것 같이 경제적인 제약이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 (A1).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이혼한 상태이거나 경제적으로 역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로 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C2).

“제가 남자친구랑 깨지고 애기를 키우면 어떻게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혼자 자립해서 생활하기가 솔직히 자신 없고 안 될 거 같아서 그럴 바에는 입양이 나올 거 같아서요. 적금을 많이 부어놨거나 돈이 많이 있으면 몰라도 혼자 자립해서 살 자신감도 없고 형편도 없고.”(A1)

“지금도 고민은 되는데 아빠 없어도 돈만 있으면 키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차라리 입양되기 전에 제가 좀 능력이 되면 데리고 올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엄마한테 애기를 잘 해봐서 돈 어떻게 안 되나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C2)

실제로 입양에서 양육으로 마음을 돌린 D2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필요로 인해 경제적인 자립 동기가 부여되고 자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은 애초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로서 자녀를 다른 가정 아이들 못지않게 키우고자 하는 욕구가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애기를 가졌을 때 애기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애기 옷 한 벌 못 사주고 장난감도 못 사주고 너무 우리 아기가 불쌍한 거 예요. 일단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우리 애기를 위해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빨리 능력을 키워서 애기한테 뭘 해주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 능력을 먼저 키우자.”(D2)

“관리비며 애기생활비며 제가 나가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합하면 식대 빼고 거의 한 80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 거 예요. 저축도 하고...대출비 갚으려고 적금을 또 하나 들려고 했는데 그것 까지는 못하고 그냥 애기 청약이나 제 청약, 애기 대학자금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만 딱 해서 완전 타이트하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번 달도 거의 마이너스거든요.”(D2)

C3와 같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난 후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자녀 양육 돌봄의 어려움으로 자녀를 다시 보육원에 자녀를 맡기는 사례로 있었다. 한부모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로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아기 아빠 가정으로서도 자녀 양육 부담은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보육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를 데려간 아기 아빠 원 가정 역시 경제적인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결국 양육을 포기하게 된다.

“아이 낳고 일단은 키우기는 했어요. 돌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게 육 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돌때까지 데리고 있었던 것도 제가 전부 다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시 보육원에 잠시 맡겨져 있는 상태였고. 혼자서 키운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그 쪽 부모한테서 애를 키우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안 맡는다고 나보고 데려가라고 아이를 집 앞에 갖다놓기도 하고...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C3)

(4) 가족의 양육 지지 체계 결여

면접 대상 청소년 한부모들은 주변에 자녀 양육을 도와 줄 가족이 취약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혼한 상태인 결혼 가정이고(C1), 경제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부모 모두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B4, C2).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도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오히려 도와 드려야 되요. 진짜 저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 보니까 혼자 키우겠다는 그런 친구들도 애기 아빠가 있고 부모님들한테도 조금씩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어요. 저는 진짜 시설에만 의지를 해서 자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데리고 오려고 했다가 포기 했어요.”(C1)

“부모님 알아도 못 키워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쁘시고 그러니까. 제가 미용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없거든요 많이 그래서 애기를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B4)

“엄마한테 얘기를 돌봐주면 안되겠냐고 그랬는데 엄마가 얘기를 못 봐요. 엄마는 지금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C2)

면접 대상 청소년 한부모들은 부모로부터의 지지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C3와 D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지도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에 몇 번씩 깨고 하면서 애를 본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구요. 그래도 힘들어도 했었는데 그 당시 할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애기가 밤에 울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아무리 손녀라도 싫어해서 제가 일월달인가 할머니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혼자 방을 잡아 가지고 살았어요.”(C3)

“뭐든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저희 애기가 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전부 다 애기 아빠 할머니나 이렇게 다 오시는데 저는...그땐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D1)

한편, B3과 같이 입양을 선택했다가 양육으로 결정하여 취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가족들로부터 양육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C1은 주변의 양육하는 친구들을 보았을 경우에도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자신과는 달리 아기 아빠 혹은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언니 오빠도 건강하게 봐준다고 하시니까...엄마도 오시는 족족 맨날 봐주신다고.”(B3)

“친구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요. 애기 아빠가 있고 부모님이랑도 같이 키워요.”(C1)

(5) 부족한 양육 기술 및 자신감 부족

C2와 B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소년 한부모들은 신생아 자녀를 키우는 기술에 대해 특히 취약하다. 부모 혹은 주변의 친지로부터 신생아 양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청소년

한부모들이 양육 기술이 부족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양육 기술의 결여는 자녀 돌봄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녀 양육을 포기 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도 작용한다.

“저는 그 당시에 키우고 싶긴 했는데 애가 새벽에 울고 하니까 적응도 안 되고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애 태어난 날 아빠 돌아가시고 해서 되게 막 충격도 받고 해서 괜히 애한테 짜증도 내고 그랬었는데.” (C2)

“애기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냥 애기가 이유도 없이 보채고 울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여기는 시설이라 다른 애기도 있고 제 애기 우는 것 때문에 그 하나로 다른 애들도 울까봐 조바심이 났던 거 같아요.”(B3)

이혼 가정에서 자라난 A3의 경우 부모 됨에 대한 자신감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경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와 유사한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불우한 청소년기를 지내 왔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 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됨의 자신감 결여는 입양을 보내면 본인이 키우는 것 보다 더 잘 살 것이라는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1년 사귀면서 맞고 살았는데 애기를 같이 양육할 자신이 그때부터 없었어요. 애기가 뱃속에 있는데도 때렸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양육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혼인신고도 당장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새아빠 친아빠한테 많이 맞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A3)

“네 제 밑에서 크면 저랑 똑같은 딸이 될까봐 겁이나요. 오빠랑 같이 양육할 자신도 없고 또 제 아이가 저처럼 안 크겠다는 보장도 없고 제 2의 ***이 나올까봐 겁이 나고.”(A3)

(6) 입양에 대한 기대

입양에 대한 기대감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자녀는 물론이고 청소년 한부모 본인 자신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입양을 보내는

것에 대한 변명, 죄책감의 감소로 작용하여 입양 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입양을 선택한 면접 대상자의 대부분이 자녀를 입양을 보내면 좋은 가정에서 잘 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C2). 특히 본인이 키우는 것보다 입양 부모가 키우는 게 아이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B1, C3). 이러한 입양에 대한 기대감은 본인의 불우했던 청소년기(C2), 한부모로서 자신감 결여(C1), 경제적인 어려움(B4)으로 인해 본인이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하고 있었다.

“원래 처음에 키우려고 했었는데 애를 위해서는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못살지는 않잖아요.”(C2)

“좋은 부모님 만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입양 보냈을 때 또 저보다 좋은 부모 만날 수도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입양 하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B1)

“그래도 나보다는 좀 잘해주지 않을까...그렇잖아요. 살아가는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한 거.”(C3)

“애한테 좋은 쪽은 어떻게 보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친엄마랑 있는 게 좋지만 애가 못살고 저처럼 사는 게 저는 싫으니까. 제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고.”(C2)

“제가 시설 같은 것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애기가 기고 웅알이하고 말하고 걷고 뛰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아빠가 없냐고 물어보고 전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절대 막 엇 나갈거다 엇나가지 않을거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그거를 케어해주고 잡아줄 수 있는 양부모를 만나서 생활하는 입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C1)

“제가 키울 생활 여건도 안 되고 그냥 좋은 부모 만나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경제력이 있어야 애기 입양할 수 있는 것 맞죠? 저한테 있는 거 보다 더 잘 살지 않을까요? 저는 혼자 키워야 하잖아요.”(B4)

입양이 청소년 한부모 본인들에게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혼 출산 자녀가 없는 것이

미래 자립적인 생활에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타나고 있다(B4, C2, D2).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을 하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입양이 빨리 되어야 저도 또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 입양 될지도 모르고 저도 계속 이러면 저도 계속 일하는 내내 불안하고 그러니까.”(B4)

“엄마는 제가 딸이고 또 어리고 하니까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거 포기를 해야 된다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고등학교 졸업도 못해 검정고시도 보고 해야 하는데 애한테 그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C2)

“자기가 그리고 놀고 싶은 마음에 어리니깐 내 인생에 지금 애기를 키운다기보다는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많아요.”(D2)

입양을 선택한 면접 대상자의 대부분이 입양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징적인 사항은 청소년 한부모 자신들이 경험했던 불우한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A3은 어릴 때 받은 가정 폭력을 기억하면서 가정 폭력이 없는 가정을 원하고 있었고, 사랑이 없었던 가정에서 성장한 C1은 사랑을 충실히 받을 수 있는 가정에 아이가 입양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C3는 자신의 평범하지 않았던 가족생활로 인해 평범한 집에서 자녀가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한부모들의 원가정 파괴, 불우했던 아동청소년기가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희망을 갖도록 영향을 준다고도 할 수 있겠다.

“제가 하도 많이 맞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아가를 정말 공주같이 오냐오냐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달 동안 그랬거든요 오냐오냐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부모였으면 좋겠어요. 따른 거 바라는 거 없고 아가한테 손찌검만 안했으면.”(A3)

“저는 부족하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집에 입양 갔으면 좋겠어요.”(C1)

“좋은데 갔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집 그냥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그냥 부모님 다 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끔...”(C3)

입양 부모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 C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입양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강화하고자 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A3는 임신 기 동안 본인의 흡연으로 인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친부모도 애기를 정말 때리면서 키우고 되게 원망도 하고 그러는데 입양한 부모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정말 때리며 키우지는 않더라도 버릴 수도 있는 거고...정말 자기가 낳은 자식이란 차별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얼마나 어렵게 입양을 했는데 그렇게 버리겠냐고 생각을 고쳐먹었어요.”(C1)

“많이 걱정하죠. 근데 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일단 아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외관상으로나 문제가 없긴 했는데 솔직히 크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 흡연 하나 때문에 크면서 문제 생겨서 입양 간 부모한테 미움 받을 까봐 그것도 염려스럽고...딸은 엄마를 많이 닮잖아요. 그래서 입양 부모한테 맞고 살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해요.”(A3)

(7)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결여

C1과 같이 정부 지원으로부터 사각 지대에 속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이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D2와 C4는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받는 금액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역시 양육 선택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친구들한테 보면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 그런 거 받아서 잘 키워요. 제가 아기를 데리고 오겠다고 마음먹고 알아봤어요. 근데 저는 해당 되는 게 없었어요. 언니가 지금 수입이 있고 아빠도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해서...”(C1)

“나라에서 이렇게 좀 정책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준다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애기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청소년 한부모로 등록을 하면 매달 양육비가 15만원이 나와요.. 이거 받고는 애기를 같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D2)

“경제적인 문제죠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 문제인거 같아요. 아무리 미혼모라고 해도 지원받는 돈이 얼마 안돼요. 2인 가족 채택 금액이 오십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이 오십 얼마가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금이 별로 안 나와요.”(C4)

D2는 한부모라는 피해 의식으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었다. 한편 양육을 선택하여 직접 자녀를 키우고 있는 D1의 경우 자신의 양육 의지만 있다면 정부 지원과는 무관하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 솔직히 사고를 쳐놓고 지원해달라는 하는 것도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D2)

“저도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요. 정말 키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든 키울 수 있을 텐데...왜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아기 키울 조건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D1)

9) 입양 제도 관련

(1)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

최근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입양절차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자녀를 출생 신고해야 하고 출생 신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있다는 기록이 남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면접 대상자 대부분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입양 보내기 전에 자녀를 낳고 나서 일주일 동안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A1, B1, B2). 이러한 입양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시설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시설 담당자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A1).

“애기 낳으면 호적에 제 밑으로 올리고 애기를 일주동안 데리고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입양 기관에 애를 인수 해줘야 하고 아기가 양부모한테 가면 양부모한테 인수된 이후에 등본 상에서 사라지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사라진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원장님께 안 물어봐도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A1)

“이제 정확히는 모르고요, 일주일 숙려기간 있고 그 기간에는 제가 키우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출생신고도 무조건 하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 알고 있어요.”(B1)

“그냥 숙려기간 7박 8일쯤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입양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아는 건 별로 없고 입양 결정 내려지면 그때 상담을 따로 한다고 들었어요.”(B2)

(2) 출생 신고 관련 의견

출생 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점은 아이를 낳은 것을 모르고 있는 원가족에게 알려지는 사실(B1, B4, D1) 그리고 취업할 때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차별 문제(B4, B1) 등 입양을 보내고 나서 당장에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청소년 한부모의 기록이 남게 되어 훗날 자녀가 다시 찾아 올 수 있으며 새롭게 꾸린 가정이 파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참 후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걱정을 보이지 않았다.

“출산일은 다가오는데 부모님은 모르고 계시고 낳아가지고 출생신고는 해야 되는데 출생 신고 하고 나서 부모님이 서류 떼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류 떼는 일이 없어야 되고...그래서 출생신고 하기 전에 등본 많이 떼놓고 가라고 그런 얘기 우스개로 많이 해요. 부담 되는 게 좀 있죠.”(B1)

“나중에 부모님한테 걸릴 수도 있죠. 서류상에 남으니까... 부모님한테 걸릴까봐 제 일 걱정 되요. 출생 신고 해야 되잖아요. 등본 상에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관계증명서에만 나오고...주소를 제가 부모님이랑 따로 해놓으면 부모님이 뽑으면 제 등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주소 옮기려고 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이 제 것을 뺄 수 없다고 했지만 애기 입양을 가야 그게 없어지니까.”(B4)

“부모님 모르게 방학동안 잠깐 어디 간다고 하고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에 나중에 그거 있으면 부모님도 알게 될 거고...”(D1)

시설 퇴소 후에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 B4는 취업 시 요구하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 미혼인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임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리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해 놓으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B1은 취업 시 회사에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애가 빨리 입양이 안 될까봐 가족관계 증명서는 미리 떼어 놓으려고요. 많이... 서류는 3개월 이내 것이면 되요. 다른 직장가면 떼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려고요. 등본은 내구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는 데도 있고 안내는 데도 있어요.”(B4)

“양육을 하게 되도 엄마 성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키웠을 때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 서류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런 거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B1)

한편, B2와 C1은 출산한 자녀를 신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혀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다.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 들어오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건 당연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선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가 낳은 아이니까.”(B2)

“저는 제 아이가 제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것이 불편하거나 찝찝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요. 뭔가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같이 있다 그런 느낌이 저는 좋아요.”(C1)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업한 D1과 C2는 미혼인데 자녀가 있다는 사실에 당당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직장의 반응은 직장마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할 때 등본 정도 요청해요. 저는 뭐라고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런 데가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뉴스 보면 불이익도 있다고 그러던데...저는 좋은 사람들만 만났

(3) 입양 숙려제도에 대한 의견

실제로 입양 숙려 제도는 입양을 선택했던 청소년 한부모로 하여금 양육으로 마음 바꾸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B1, B3, A2). 임신 중에 입양을 계획하고 있었다가 출산한 자녀를 보고 그리고 숙려기간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떼어버리지 못하는 모성애가 큰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입양을 보낼 것으로 마음을 굳힌 B4의 경우 숙려기간 동안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숙려기간 지나고 나서 입양 하려고 했다가 양육으로 바뀌어서 키우는 애들도 있어요. 입양 보내려고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못 보내겠다고 다시 데리고 와서 키우는 애들도 있고요. 일주일이어도 아예 안보고 입양을 보내는 거랑 조금이라도 보고 입양을 보내는 거랑 다른 거 같아요 아무래도 다들 마음이 바뀌어서...”(B1)

“입양 숙려제도 효과 있어요. 맨 처음에는 애기 안보고 그냥 바로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입양 숙려제가 있다고 해서 애기를 키우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막 처음에 애기 보자마자 아 양육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애기 키우다 보니까 입양 쪽에 생각이 안가고 그러다가 양육을 선택하게 되었어요.”(B3)

“입양 특례법이 바뀌고 일주일인가 데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바엔 힘들어도 그냥 키우는게...”(A2)

“숙려기간 그런 거 없는 줄 알고 그냥 낳고 바로 보낼 생각이었는데 꼭 숙려기간 지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숙려기간 동안에 애기 보고 막 밥 주고 이러면 정 생긴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예요.”(B4)

그러나 자녀 양육을 임신 때부터 결심한 청소년과 달리 숙려기간 중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B3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애기를 데리고 퇴소하는 날 애기를 이혼한 엄마에게 맡기고 친구들과 나가서 어울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로 보여진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나 의지 없이 순간적인 기분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었다.

“오늘 제 생일이라서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애기는 오늘 하루 봐주신다고 엄마
가.”(B3)

자녀를 입양 보내려고 마음을 굳힌 A3, B2, B4는 입양숙려제도가 오히려 정신적인 부담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B2는 아무리 숙려 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토로 하였다. B4는 기간을 줄이거나 선택제로 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입양 숙려제도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데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아가를 데리고 있다가 입양 보내는 자체가 맘에 안 들어요. 여기에서 일주일 키우고
보내는 사람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두 달 키운 저는 너무 힘들어요.” (A3)

“입양 숙려제도 좋은 것만은 아닌 거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양육을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본인도 얼마나 불편 하겠어요? 별로 좋은 것
만은 아닌 것 같아요.”(B2)

“숙려기간이 선택제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꼭 다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으면 기간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하고 싶은 사람
은 입양숙려 기간을 안 지낼 수 있게 선택해서 하는 거면 좋겠어요.”(B4)

(4) 공개 입양에 대한 의견

입양 보낸 자녀에 대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A3와 C1의 경우 입양 동의서에 본인 정보 공개를 허락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출생 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정보가 입양 보낸 아동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양 동의서 쓸 때 저에 대해 정보 공개 체크하는 게 있어서 다 체크 했어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이번에 입양 특례법이 바뀐 게 입양 간 아이들이 엄마아빠를 찾

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나중에 만나주러 오는 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친엄마 아빠 원망만 안 한다면...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A3)

“저는 버린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애기가 저를 찾았는데 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정말 버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정보를 아기에게 공개를 할 거예요.”(C1)

이 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경우에도 남편에게 미혼 시절에 아이를 낳아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애기를 키우던 안 키우던 애기를 할 거예요. 저 같은 애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거는 안 되겠죠.”(B1)

“저는 나중에 결혼 할 때도 맡은 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 맡을 할 생각이예요.”(C1)

수동적인 입장이지만 B1, B4는 입양 보낸 자녀가 훗날 자신을 찾아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낸 C3는 먼저 연락하지는 않고 있지만 자녀들의 근황에 대해 입양 기관에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가 보고 싶을 것 같긴 한데...나중에 찾아주면 좋겠죠.”(B1)

“전 만날 생각은 있는데 제가 따르는 못 찾을 것 같아요. 먼저 만나자고.”(B4)

“연락을 해서는 안 되죠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기관에 가끔 물어보기는 하는데 저한테 이제 한 가정에 둘 다 입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C3)

하지만 이러한 미래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다. 따라서 훗날 입양인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는 면접 대상자들에게 찾아오는 경우 실제로 면접 대상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렵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이상적인 상황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은 이상적인 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 시설 퇴소 후 생활

(1) 주거 계획

아이를 입양 보내든 직접 양육을 하든지 출산 이후에는 미혼모자시설을 떠나야 한다. 양육 혹은 입양 어떤 것을 선택하였든지 청소년 한부모들은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양육하기로 결정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갈 수 있지만 시설 수와 정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들은 그나마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에 들어 갈 수 없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들은 정책의 사각 지대에 속하게 된다. 입양을 선택한 C2와 A3는 원가정의 해체로 인해 가족에게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엄마는 오라고 하죠. 근데 내가 아저씨 댐에 불편하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일을 가면 잘 만나진 않을 거다 하세요. 그래도 내가 어린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이도 있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도.”(C2)

“퇴소하면 집은 아직 모르겠어요.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죽어도 싫어요. 오빠랑 같이 사는 것 얘기 해보려하는데 같이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A3).

양육을 선택한 B3, D1은 주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3는 이혼한 엄마지만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신 초기부터 양육을 결심한 D1은 초기부터 양육 계획을 세워 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역시 양육을 선택한 A2는 아직 주거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래도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니까 엄마 집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B3)

“저는 다행히 임대주택이 돼서...시설에 있으면서 사무일 하면서 돈을 좀 모았어요.”(D1)

“아기 낳고요 바로 나가서 월세라든지 얻어서 살려고 해요 지원 되는 게 몰라서 그렇지 알아보면 많더라구요...한부모 가족 책자를 보내 제가 알고 있는 거 말고도요. 엄청나게 많더라구요.”(A2)

(2) 시설을 통해 받는 지원

입양을 선택한 A3와 C2는 시설에서 나가면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A3는 입소하고 있는 동안 미리 신청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이미 미혼모 시설에서 퇴소한 C2는 검정고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입양 보낸 한부모들을 지원하는 시설에 입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시설에 구월 말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입양을 보내면 육 개월 이거든요. 아가를 양육하면 일 년 이구요. 시설을 나가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지금 시설에 주는 도움 말고 밖에 나가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여기에서 신청을 해놓고 선생님을 구하고 퇴소를 해서 방문 검정고시 수업을 듣는 방식도 있어요.”(A3)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 검정고시 지원 되는데 지금 나와 있으니까...근데 거기 선생님이 나중에 생각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그 입양 보내는 엄마들이 가는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뭘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또 거기 가면 제가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C2)

D2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시설을 통해 대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혼모시설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C3는

공동생활은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D2는 또한 미혼모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등 센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계를 밟아 나가야 시설 간의 이동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가 미혼모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됐던 거지 제가 밖에 있었다면 돈 될 수 있는 게 청소년 부모 15만원밖에 없을 텐데 그걸로 모든 걸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기저귀랑 분유랑 다 지원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집 주거가 생기게 되고 먹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된 거지 제가 밖에 있었으면 될 수 없었어요.”
(D2)

“공동체 생활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잖아요. 어긋나는 사람들은 빠뜨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설에 못 들어가면 혼자서 다 자립해야 되는 건데 그게 돈이 만만치가 않잖아요.”(C3)

“보통 공동생활가정이 연결이 되어있어요 거의 센터랑 그러니까 센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밖에서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기 힘들어요.”(D2)

A3의 경우 정부로부터 한부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혼인 상태로 아기를 키우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한부모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 양육을 선택하면서 아이를 방치해 둘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준다.

“출생신고는 제 앞으로 했어요. 오빠 쪽으로 올리면 제가 센터에도 못 있고 도움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인신고를 자체를 하면 센터에 못 있어요. 미혼모들은 아가를 데리고 나가면 정부에서 돌보미 서비스랑 뭐 그런 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A3)

(3) 자립 생활

① 임신 전의 직업 생활

청소년 한부모들이 임신 전에 일하던 직장은 대부분 비숙련직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일은 고된 임시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일이었다(A1, B1, A2, C2). 이러한 열악한 노동 시장에서 일하게 된 원인은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낮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할 만한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훗날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A1과 C3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의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파티쉐 쪽으로 해서 빵이나 케익을 만들어서 납품해주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고. 힘든데 그만큼 돈은 적은 편이라서 그거를 하다가 2개월 일하다가 그만두고 칵테일 만드는 거 있었거든요 빠텐더...”(A1)

“임신 전에는 놀이동산에서 일했는데 성수기 때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돈은 많이 받지만 몸이 힘들고 비오는 날이나 눈 많이 오고 춥고 이러면 손님 없는 날은 또 출근을 안 시켜요. 그녀가 최소인원만 출근 시키고 그러니 비수기 때는 돈을 확실히 못 받아요. 장마철 이런 때는 백만 원 못 받을 때도 있고 백만 원 그 선에서 월급이 일정하지가 않았어요.”(B1)

“예전에는 미용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무척 힘들고 일하는 시간도 너무 길어요. 하는 일에 비해서 돈벌이도 너무 적구요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조건도 너무 안 좋았어요.”(A2)

“그냥 호텔에서 서빙 같은 거 잠깐 알바 같이 했었어요.”(C2)

② 학업에 대한 욕구

청소년 한부모들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려는 욕구가 강했다(C2, C3 A2). 이는 현실적으로 직장을 구할 때 고등학교 학력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3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학력까지는 마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일단은 검정고시도 빨리 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C2)

“기술 배워놓고 지금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 따고 이제 고등학교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회사는 못 들어가도 이제 차분히 공장이나 다니면서 돈이나 모아가 지구 가게 차려서 저도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네요. 평범하게...”(C3)

“시설에서 있으면서 제가 못 배운 거 배울 만큼 배우면서 갈 곳이 없으면 배우면서 기관에 있으려고 해요.”(A2)

D1의 경우 검정고시 비용 지원보다는 일반 학교에 다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D1은 임신 이후 다른 학교에 전학하려고 하였으나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이다.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으로 정규학교 졸업을 선호하고 있었다.

“검정고시비 지원보다는 학교 다니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검정고시 지원하는 거로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검정고시라는 게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안 좋잖아요. 회사에 서류 낼 때 다들 학력 증명서 요구 하니까 서류상에 고졸 합격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검정고시라고 딱 돼있어요.”(D1)

C1과 C3는 검정고시 이상의 대학교 교육까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1은 자녀를 입양 보낸 경우로서 학업에 대한 욕구는 강했으나 정부로부터 학업 수행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시설에 있을 때 검정고시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D1은 현재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학교에 가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라서 공부가 제일 하고 싶어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 복지사를 하고 싶어요. 알아봤는데 대학을 나와야 한 대요. 8월 달에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에서 퇴소해서 검정고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시설에 있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얘기 보느라고 검정고시 준비 못 했어요.”(C1)

“전 대학 갈 거 예요. 그냥 전문학교이라도 갈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보면서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되더라고요. 일단 그냥 질러보고 휴학 하더라도 반년만 다니고 휴학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해보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전공은 공무원 생각하고 있어요.”(D1)

③ 돈을 벌고 싶은 욕구

학업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돈을 벌고 싶은 욕구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C2는 경제적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A2는 시설에 머물고 있는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A3의 경우 남자 친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욕구에서 돈을 벌고자 하고 있었다.

“뭘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은 아르바이트 해서 제가 돈 모아서 나중에 하고 싶은 것 하려고요. 일단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 밖에 없으니까 해서...아이를 데려 오든 안 데려오든 간에 돈은 어차피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 일단은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C2)

“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 데요 여기가 첫 번째 시설이고 두 번째 중간의 시설이 있데요. 여기서도 제가 있을 만큼 있다가 돈을 벌수도 있데요. 꾸준히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여기서도 모으고 또 모자 자립 시설에서도 1년 이상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A2)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요? 돈 벌고 싶어요. 뭐든 해서 돈 벌고 싶어요. 오빠가 혼자 돈 버니까요 잘난 척 되게 많이 해요.”(A3)

④ 희망하는 직종

학업과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들이 실제로 희망하고 있는 직종은 바리스타(B1), 네일 아트(B3), 병원 코디네이터(B2), 피부 미용(C2), 제빵(A1), 헤어(A1), 드러머(A1) 등 대부분 단순 기술직에 해당하는 비전문적인 직업들이었다. 대부분의 직종은 미혼모자시설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직업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이러한 직종을 원하는 것은 시설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업 교육이 이러한 비전문적인 기술

직종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교육 정도와 직업 경력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예로 C3의 경우 좀 더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 컴퓨터 기술을 배우려고 하였으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피부 미용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희망하고 있는 직종은 임신 전에 일하던 단순 아르바이트 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춘 직업이라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자녀를 혼자서 양육해야만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직업 교육 같은 것 받잖아요. 계좌계 카드 만드는 것도 있고 바리스타 자격증 가지고 카드 만들면 여기 아래 카페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쪽 카페나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B1)

“일단 학업부터 따고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려고 해요. 원래 제 빵을 조금 배웠었는데 네일 아트 쪽으로 하려고요.” (B3)

“원래 학교 다니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직업교육 받는 거 받고 있고요 병원코디네이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B2)

“컴퓨터를 좀 배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머리가 나빠서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좀 배울까 해요. 네일 보다는 피부미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C3)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제과쪽이다 보니까 빵 만들고 그 쪽으로 못할 때에는 헤어 쪽으로 배우는거...옛날에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으니까 아니면 드럼 같은 거..드러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배우고 싶어서 라이브 카페에서 서빙 했던 적이 있거든요 흥대 가서 드럼 배우고 싶어요.”(A1)

실제로 양육을 선택한 선택 경우 D1과 D2는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원하고 있었으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고 말했다. D1은 일반 사무직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고 또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에는 본인의 경력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사무직에

취업한 D1은 인턴 혹은 아르바이트로 근로하여 직업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검정고시 따서 너무 막 자신감이 엄청 있는 상태에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다 될 것 같을 것 같았는데...고작 검정고시 따고 뭐가 되겠어요. 나는 무조건 안정적이고 무조건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을 무조건 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 회계가 된 거예요.”(D2)

“일반 사무직은 일자리가 적고 다른걸 보자면 경력이나 이런 걸 좀 따지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보면 전문대졸 대졸 이렇고...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분 회사에서 일 년 동안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무역회사에서 인턴으로 일 년 일했어요. 그러고선 사무 알바로 칠 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총 일한 건 일 년 칠 개월 정도 되요. 그러다가 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에 취업해야 되요.”(D1)

⑤ 진로 선택 문제

청소년 한부모들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 의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A2, C2, D1, A3). 본인이 어떠한 직종에 적성을 가지고 있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교 중퇴 등 불안정한 학교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을 탐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막상 일을 하려고 해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요. 시설에서 알선해 주는 네일아트, 바리스타, 제빵 같은 것은 싫어요.”(A2)

“저는 시설에서 맨날 잠만 자서... 시설에서는 배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 모르겠어요.. 뭐하려고 하면 얘기해서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거기 가서 제가 적응도 못했고.”(C2)

“일자리는 많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D1)

“저는요 미용도 해보고 싶구요. 유치원 선생님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장리 희

망 정말 많았어요.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포기가 빨라요 검정고시도 포기 안하면 정말 다행인거예요. 제가 될 제일 재밌어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A3)

(4) 미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

미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D1은 혼자서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C2는 입양을 보내고 아기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 친구를 사귀고 있는 경우이며, D2는 아기 아빠와 연락을 하고 있는 관계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D1의 경우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가족 안에서 아빠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향후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남편을 원하고 있었다. 현재 아기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 C2의 경우 남자 친구는 다른 남자의 핏줄인 C2에 대해서 탐탁치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D2는 아이를 핑계대고 연락하고 결혼하자는 아기 아빠를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릴 때는 아기가 아빠를 엄청 찾았어요. 지금은 아빠를 부정하는 거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있으면 한명은 혼내면서도 한명은 다독여 줄 수 있는데 저희 애기는 계속 혼나고만 있어가지고...좋은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은 사람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애기한테 잘해야 하구요. 자기 애기 처럼 봐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D1)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애도 아니고 애 아빠가 딴 사람인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처음엔 같이 키워주겠다 한다더니 솔직히 지 애 아닌데 같이 키워주기도 힘든 거죠...애 때문에 애기하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시설 애기 보러 오는 거 애기 하긴 했는데 별로 맘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지 애기면 상관없는 데 남의 남자 애기해서 하는 게 맘에 안 든다고.”(C2)

“지금은 연락 오는데요. 가끔씩 그런 협박해요. 저한테 같이 살자고. 애기를 데려가겠다고 할 때마다 정말 화가 벌컥벌컥 나요. 자기랑 안산다고 하니깐 애 데려가겠다

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무서워요.”(D2)

11)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 필요한 지원 정책

① 경제적인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지원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지적하였다. D2는 경제적인 안정성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제 또래 사람이 임신 했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더 임신되기 전에 낙태를 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중에 키워봤자 내가 행복하기는 하지만 그게 잘살지 않은 이상 애기고 나고 둘 다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안타깝잖아요.”(D2)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가 처한 상황과 의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C2과 B1은 자녀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한 경우이다. 두 사례 모두 경제적인 지원을 제일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자녀 양육하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제일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거고.”(B1)

“일단은 돈이 제일 문제겠지요. 왜냐면 애한테 돈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애 키우는 양육수당이라고 한 달에 몇 십만 원 나오는데 그거로도 모자라죠. 애한테는. 미혼모가 혼자서 집에서 키운다는 거는 양육수당이나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해도 생활을 못하죠. 요즘 이백삼백 벌어도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다는 시기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C2)

B3와 C1은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사례이다. C3는 자녀를 양육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입양을 의뢰한 경우이다. C3는 양육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유 값과 기저귀 값이 부담스러웠

다고 말했다. 한편 B3와 C1가 양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는 대목에서 다른 부모가 자녀에게 지출하는 만큼 본인들도 지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발견되었다. B3의 경우 장남감을 새로 사주고 싶어 했고 남이 입었던 옷을 아기에게 입히고 싶지 않아 했다. D2는 아기 보험을 가입해 주거나 자녀의 보육 교사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해 줄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한부모가 혼자서 버는 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것을 아이에게 해 주려는 욕구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욕구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존감이 낮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해석될 수 있다.

“솔직히 많은 돈은 못 버는 상황이었고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이고 게다가 이제 일은 해야 되는데 아기는 분유를 먹어야 되고, 보육료는 그렇다고 치는데 분유 값 기저귀 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C3)

“아무래도 지금 애기용품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샀는데 몇 개 안 샀는데 20만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나중에 애기 장난감 같은 거 살 때도 돈 엄청나게 나갈 거고, 애기 옷 하나 사는데도 한 벌에 몇 만원씩 하나까. 그렇다고 남이 입었던 거 입힐 수는 없고.”(B3)

“그때까지도 보험을 못 들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애기보험을 정말 들어주고 싶었어요...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이상 추석 명절 선물 좀 줘야 돼요 비교 되거든요 우리 애기만 안주면...아무래도 엄마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도 해줄 수 없는데.”(D2)

D1과 A1은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D1의 경우 의지가 있는 경우 정부 수급 없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A1은 입양 보내는 경우 별다른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지 않았으며 아기가 있는 경우 약간의 지원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의지 차이 아닐까요? 저도 그냥 집에서 애기 키우고 있으면서 일 안하고 수급 받고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핑계부터 찾고 있잖아요.”(D1)

“애기 입양 보내고 나갈 때에는 지원을 받기 싫어요. 집도 있고 그리고 제가 몸도 성하고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 일자리 알아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좀 어렵다 한들 자기가 일해서 돈 벌고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애기를 데리고 나가면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것이 한 달에 되게 많이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다 지원 받는게 아니라 제가 사서 쓰되 조금씩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어요.”(A1)

② 미혼모 시설 확충

면접 대상자의 대부분이 미혼모 시설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B3, D1, D2, C1). 미혼모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 시간의 연장(B3, D1, C1) 혹은 미혼모들 간의 텃새 문제(C1)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모자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가려면 두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사람이 많아서. 여기서도 못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리가 없어서.”(B3)

“여러 군데 대기를 해놓고 먼저 연락이 오는 데로 들어가요. 사람이 많으니까는 자리가 없을 때가 꽤 있어요. 저 시설에 있을 땐 엄청 없었어요. 그 때 한참 엄마들이 애들 키우고 싶어 해 가지고...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인원을 못 받게 되니까.”(D1)

“미혼모는 엄청 많은데 시설이 없어요.”(D2)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그거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에도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공동생활가정도 한번 들어가면 2년 3년씩 오래 기다려야 되요. 자기 아기 보호하느라고 텃새도 심한데 그거 없애려면 기관이나 시설들을 좀 더 많이 지어야 할 것 같아요.”(C1)

D1의 경우는 일년 간 더 있을 수 있었으나 임대주택을 얻게 되어 나오게 되었다. D2와

D3는 낙인 효과 때문에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C3는 미혼모시설 보다는 일반적인 사택에서 가정집을 꾸며 거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모자 보호 시설에 원래 이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으로 일 년 더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연장했는데 다행히 임대주택 되가지고 바로 나왔어요.”(D1)

“모자원 같은데 그것도 하늘에 별 따기라지만 제가 운 좋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들어가기 싫거든요. 우리 애기가 나중에 커서 중고등학생 됐는데 우리가 모자원에 살면 애기가 친구들 데리고 올수도 없고 친구들도 집에 초대도 못하고 엄마가 한부모인 것도 다 알 텐데. 그래서 모자원에 산다는 거 싫어요.”(D2)

“미혼모들은 시설에서 지내야지 지원을 다 해준다고 하고. 시설에서 직업도 교육도 다 시켜주고 한다고 하는데. 전 다르게 생각해요. 미혼모 집에서 꼭 살아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 시설 안에서만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차라리 사택 같은 것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가정을 꾸며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프로그램이 나 이런 거는 이제 직접 거기 가서 배우거나 하면 되는데.”(C3)

③ 사회 문화 개선

B3, D2, B1은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B3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부모라고 비난받은 경험이 있었다. B1은 낙태가 불법이고 한부모의 양육을 정부가 지지하고는 있지만 주변에서는 여전히 한부모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D2는 미혼모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는 것을 주장하였다.

“저는 편견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애기를 안고 오는데 애기 엄마냐고 이렇게 맨 처음에 물어보다가 좋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뒤에 가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임신 했을 때에도 쳐다보는 시선이 많으니까 배에 맨날 힘을 주고 그러니까 애가 지금 미숙아로 거의 태어나고.”(B3)

“책임질지 못할 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미 저질러진 일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또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태도 법으로 못하게 해놨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낙태 안하고 낳아서 키운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B1)

“미혼모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을 딱 차별하는 단어인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미혼 모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잖아요. 미혼모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야지 저희가 사회에 같이 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미혼모는 미혼모라고 말하지만 기혼모는 기혼모라고 안 하잖아요 똑같은 엄만데 미혼모는 미혼모라고 하고.”(D2)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받는 피해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 한부모들이 또래 집단에 어울리지 못하며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D2와 B1은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D2은 한부모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아이에게 까지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B1는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가정과 비교하여 아빠가 없는 본인의 가족 관계를 아기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나는 당당하지만 저희 애기가 피해를 입는 거죠. 저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기가 피해를 입어요. 애기가 손가락질 받고 보는 인식이 그러니깐 어쩔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D2)

“애가 크면서 왜 나는 아빠 없어 라고 애기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좀 힘든 거 같아요.”(B1)

B3는 학부모 모임에서 따돌림을 받을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D1은 한부모라는 사실을 밝힌 후 또래 엄마들로부터 연락이 끊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좀 걱정인 게 애가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부모 모임 하잖아요. 거기서 애기 엄마들 사이에서 욱하지 않을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애기가 벌써 있냐. 이런 말 들을까 좀 걱정인 게 많잖아요. 막 뒷담화 같은 거 많이 하니까.”(B3)

“동네에서 있는데 애기 엄마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연락도 하고 지내자고 그래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했는데, 혼자 키운다고 얘길 했더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D1)

D2는 취업할 때 검정고시 합격과 한부모라는 사실을 알려지고 나서 편견적인 시각을 받았다. 이러한 편견으로 인하여 D2의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제가 취직할 때도 면접을 여러 군데 보고 했어요. 제가 자격증이 좀 많이 있어서 솔직히 좀 자부심이 있긴 했었거든요. 처음 첫 면접 봤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 검정고시에다가 애기가 있다고 하니깐 막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껌 좀 씹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D2)

④ 가정위탁제도

지금 당장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자녀를 잠시 맡아 키워주는 위탁 시설 혹은 위탁모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직접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B2의 경우 이러한 위탁 기관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C1의 경우 위탁모에게 자녀를 맡겨 두는 것은 부모로서 책임감 없는 행동이며 아이에게 오히려 혼란만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애기를 맡겨놓고 입양은 안 보내는데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될 때까지 애기를 봐주는 그런 시설은 없죠? 그런 데가 보육원이예요?”(B2)

“위탁 하시는 분들이 애기가 크면 클수록 그분들 보고 자랄 거고...부모로 생각을 하면서 자랄 텐데 제가 가끔씩 가서 지금처럼 내가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애기가 솔직히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솔직히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C1)

(2) 복지 정책에 대한 견해

C1은 주변에 부정으로 수급 받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D2은 수급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기색도 나타냈다. 본인이 일하면서 기초수급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기색도 비쳤다.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돈이 가야되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쳐서 지원 다 받고...그런 거 보면 좀 그래요.”(C1)

“기초생활수급자 받으면서 놓고 있는 엄마를 보면 제가 볼 땐 솔직히 좀 한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놓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또 한편으로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밖에 안되나 싶기도 들고 해요.”(D2)

“마음 같아선 차라리 그냥 나도 다른 엄마들 그냥 편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하면서 매달 칠팔십 받으면서 놓고먹지 내가 뭐 하러 여기 뻘뻘하게 생활하면서 일을 하나 생각도 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쌀이건 뭐건 그냥 다 지원되고 의료비도 저까지 다 지원되고 돈 드는 게 없고 그냥 칠팔십만 원씩 나오잖아요.”(D2)

양육모인 D2는 현재 차상위계층 지원과 한부모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경력이 쌓이면서 월급이 올라가고 있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지금까지 받아 왔던 모든 지원을 다 못 받게 된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의 차상위계층 지원과 한부모 지원이 어느 정도 저소득층 한부모 자립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암시되고 있다.

“한부모 수당 15만원도 제가 예전엔 적다고 불평을 했었는데 나와서 보니깐 이것만 큼 이라도 저한테 너무 소중한 돈 인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끊기게 생겼거든요. 월급이 조금만 오르면 차상위계층 떨어지고 한부모 계층 떨어지고.. 한부모가 떨어지게 된다면 15만원을 못 받게 되요. 세금내고 나면 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D2)

“제가 일한지 6개월 되었는데요 제일 걱정이 곧 있으면 월급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끊기잖아요. 진짜 한부모가 끊기면 모든 게 안 되요 순위에서 밀려나요. 희망플러스 통장을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회계사님한테 제 소득 조금 신고할 게요. 하면 할 순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뒤로 월급 빼는 건 불법이잖아요.”(D2)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어야지 차상위계층이 되요. 그래서 한부모 혜택도 받고

역시 미성년이었으며 부모가 아이 관련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입양 절차에서 문제가 되었다.

“입대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 제가 미성년자라서 계약이 안 되네요. 한부모라서 신청자격은 된 건데 계약은 미성년자라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라서 저희 엄마가 대신 왔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법정 친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부모라고 넣으라고 하면서 저는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는 게 말이 안돼요.”(D2)

“그래서 일단은 보내고 2주 뒤에 입양 시설에서 전화가 와서 남자친구 동의를 갑자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일이 안 지나서 만으로 19인거예요 저하고 똑같이...개가 아빠한테 말을 못 하겠대요. 누구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싸인 하면 되는 거라고 남는 거 아예 없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연락을 주겠다고 근데 이삼일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게 저희 둘 문제가 아니라 얘기가 입양을 못가는 거잖아요.”(C4)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D1과 D2는 부모 역할,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 했다. D2는 이러한 상담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D1은 상담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여기고 있었다.

“심리 상담 이런 것 좀 받아보고 싶어요. 애기랑 같이. 구회에서 하는 건데 일회는 무료인데 이회부터는 이만 원씩 내야 해요. 이렇게 내는 그것도 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건강관리 지원 센터에서도 상담 받았어요. 그게 구마다 또 프로그램이 달라서 무료를 해주는 데가 있긴 한데 너무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서...”(D2)

“상담 서비스는 제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요. 바로 나올 수 있는 바로 해결책이야 없겠지만 상담 받고 나서도 한번 도 속 시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보라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생각 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냥 뻘한 얘기하고...뭘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어떡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겠으니까.”(D1)

제 V 장



결 론

1.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
2. 향후 정책 방안

제 V 장 결 론

1.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는 등 입양에 대한 법과 제도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 입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가 갖고 있는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 후의 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재 입양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입양 제도 변화와 관련한 정책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결과, 최근 입양 관련 제도의 변화,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및 시설 전문가 FGI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 단계부터 입양과 양육의 선택에 이르는 과정과 각 과정의 단계에서 직면하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토대로 양적 자료 분석과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입양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전문가 FGI에서 도출된 결과는 입양 아동과 관련한 최근의 법 개정이 당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현실성 있는 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의 지나친 정보 공개 그리고 취업 시 요구하는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입양숙려제도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양적 분석에서는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들과 입양을 선택하지

많은 청소년들을 비교 분석하여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양상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양적인 분석을 통해서 파악되기 어려운 보다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하여 파악하였다. 입양을 둘러싼 청소년 한부모 현황 분석 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인구 사회학적 특성, 가족 환경 특성, 임신 및 출산에서의 특성, 입양 혹은 양육 갈등 특성,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시설 퇴소 후 생활, 정부 정책 관련 사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족 환경 특성

양적 분석 결과,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 환경 특성은 입양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모의 이혼, 별거 등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므로 나타났다. 가족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가출 또는 학교 중퇴를 하고, 가족과 학교로부터의 이탈이 미혼부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가족과 학교와 같은 제도권으로부터의 이탈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미혼부와 만남을 갖고 그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원가족 해체가 청소년 한부모 그리고 입양을 보내는 아동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한편, 심층면접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해체된 가족 안에서도 어느 정도 부모나 형제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초기에는 입양을 고려하지만 결국에는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혼부와 관계를 볼 때 청소년 한부모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 하에서 역시 유사하게 자립적이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미혼부들을 만나게 된다. 미혼부의 경제적 취약성과 무책임성으로 인해 그 만남은 곧 해체되지만 의존의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또 다른 책임감 없고 경제적으로 자립적이지 못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입양이라는 악순환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은 모든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임신하기 이전에 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많았지만 임신 중에 학교로부터 퇴학당한 경우도 있었다. 가족과 더불어 학교라는 또 다른 제도권으로부터의 이탈은 청소년 한부모가 경제적인 자립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반을 쌓는데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하지만 검정고시 합격은 정규적인 학교 졸업과 비교하여 취업 시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청소년 한부모 원가족과 미혼부 가족이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과 양육을 반대하는 모습에서 한국 가족 구조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보수적 양상이 드러나고 있었다. 임신하고 있는 혹은 출생한 자녀가 원가족 그리고 미혼부 가족의 혈육이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는 출산과 양육을 하겠다고 말하면 가족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한다. 결혼이라는 제도권 내에 속해 있는 자녀를 보호하면서 결혼 제도권 밖에 있는 손자녀를 거부하고 버리는 모습에서 법률혼 관계만을 강조하는 한국 가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적자”에 대한 관념이 지배적이고 혈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결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표 V-1 주요 분석 결과: 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 환경 특성

구분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인구 사회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입양 경험 있는 청소년이 입양 경험 없는 청소년에 비해 낮음 취업 여부는 입양 경험 있는 청소년이 입양 경험 없는 청소년에 비해 낮음 학업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두 집단에서 모두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은 대부분 미성년 시기에 자녀를 출생하였음 〈학교 생활〉 학교 중퇴 후 아르바이트를 경제적 수단으로 삼음 부모의 지지 부족,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학교 중퇴 출산 이후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 거절 경험 임신 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임신과 출산 이후 친구들과 소원해 짐
가족 환경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반수 이상이 저소득층 부모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10% 미만 과반수 이상이 가정 내에서 양친이 부재하고 가족 해체를 경험하였음 청소년기 피해·가해 경험 건수는 1인당 약 2.7건 내외 초등중학교 시기 가장 부족했던 지원으로 경제적인 지원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족〉 가족의 해체, 빈곤한 가정, 대화 없는 단절된 가정 가정 폭력 및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 불안정한 가족 해체가 가출 및 학교 중퇴로 이어짐 〈미혼부〉 학교 중퇴 및 가출 시기에 미혼부와 만남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미숙하며 독립적이지 못함 잡은 다툼으로 인해 대부분 헤어진 상태 〈미혼부 가족〉 결혼 가정인 경우가 많으며 가정 불화가 있음 면접 대상자와 아기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형제 자매 관계〉 형제 자매도 학교 중퇴 및 가출한 경우 많음 연락을 끊고 사는 경우와 불우한 형제 자매와 독립하여 함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경우도 있음

2) 임신 · 출산에서의 특징

입양을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임신은 전혀 예기치 않고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피임에 대한 준비가 없었으며 피임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황이었다.

양적 분석 결과 낙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도 3명의 면접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한번쯤 고려해 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를 고려한 이유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즉, 불법 낙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우선적으로 막는 것부터 필요하다.

심층 면접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 기간 동안 주변지지 체계의 결여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한 임신부의 건강 상태는 이후 조산과 미숙아 출생으로 이어져 모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생 아동의 신체적 그리고 발달적인 장애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산모가 임신기에 겪는 각종 스트레스는 임신 우울증 및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임신 이후 출산을 앞두고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 한부모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생활에 잘 적응하고 동료 집단과 잘 어울리는 청소년의 경우 시설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며 동료 집단으로부터 정신적인 지지를 얻고 정보를 교환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료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시설 생활에 불만을 토로하고 시설에서의 이탈과 동료 집단과 마찰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양육 간 갈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양적 분석 결과에서는 입양을 선택한 것이 대부분 본인의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층 면접 결과를 보면 입양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환경적인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 선택은 원가족 및 미혼부 가족의 반대, 미혼부의 지지 결여, 경제적 취약성, 양육 및 부모됨에 대한 자신감 부족, 정부 지원에 대한 낮은 기대감 등 주어진 환경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요된 선택”을 받아들이는 본인의 선택 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신의 불우했던 청소년기, 부모됨과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 결여는 본인이 직접 키우는 것 보다 입양 보낸면 자녀가 더 잘 살 것이라는 입양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역시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분석 및 질적 분석 결과 모두 입양 보낸 후에 대부분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입양 보낸 후에 자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본인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입양을 선택했으나 자녀에 대한 모성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분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임신·출산에서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자발성은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입양 경험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강한 부정적 반응 • 출산 자발성은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입양 경험 있는 청소년에 비해 강한 긍정적 반응 •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지 않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 유사하게 공유 • 혼인 여부와 무관한 출산의 정당성에 대해 입양 경험 청소년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p><임신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관계는 자발적이었으나 예기치 않게 임신 • 피임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피임 실패 발생 • 임신한 것에 대해 늦게 인지함 • 임신 후 지지 체계의 부족 • 건강에 부적절한 환경 (흡연, 노동환경) • 낙태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남 <p><출산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산 및 미숙아 출산, 위급한 상황에서 출산 • 보호자 부재 미성년인 경우 정부 지원 카드발급에 문제가 있었음 • 입양 선택 한부모는 주변에서 출산·양육 반대 및 지지 체계 결여 • 양육 선택 한부모는 주변의 지지가 있었음
입양·양육 갈등에서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경험 청소년은 다양한 가정 및 친가정 양육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 양육 및 부모됨에 대한 낮은 자신감 <p><입양에 대한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경험 청소년은 입양에 대해 높은 긍정적인 태도 • 입양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 입양 결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 • 입양 후 약 40%가 정신적 후유증 경험, 전문적인 치료 받은 경우는 10% 미만 	<p><친가족 양육의 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부 가족은 본인의 아들만 감싸고 출생한 아이는 혈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양을 중용함 • 원가족은 청소년 한부모 미래를 위해 양육 반대 <p><양육 포기의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인 취약성 및 자립 능력 부족 • 가족으로부터 양육지지 체계 결여 • 부족한 양육 기술, 자녀 양육 및 부모됨에 대한 자신감 부족 •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짐 •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결여, 지원 수준에 대한 낮은 만족도 •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3)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입양 허가제도에 따른 출생신고와 입양 숙려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 관련 제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제도에 대한 정보는 미혼모자시설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허가제도에 따른 출생신고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한부모 개인 정보가 입양인에게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의 개인 정보가 “친양자입양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성인이 된 입양인이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친모를 찾아 올 것이라는 먼 미래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았다.

청소년 한부모가 출생 신고에 대하여 우려하는 사항은 임신과 출산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 혹은 취업할 때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여 미혼으로서 자녀를 낳은 사실이 공개되는 일에 대한 것들이었다. 즉 출생 신고와 관련해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시설을 출소하고 나가서 당장에 닥치게 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었으며 먼 훗날 미래에 불확실하게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친생모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문제들은 입양 보낸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인 지금부터 약 2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이라 어떠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인지는 현재 시점에서 선불리 예상하기 어렵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사항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입양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알고 나중에 성인이 된 입양인이 찾아와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도 있었다는 것이다. 즉 친생모와 입양인 사이에서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청소년 한부모들이 원하고 있었다.

출생 신고와 관련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부당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등록할 때 친모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친부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친부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친모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 양성 차별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 상에서의 양성 차별 문제는 모든 청소년 한부모가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입양숙려제도가 입양을 포기하고 양육으로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들은 이러한 숙려기간이 고통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양적 분석 결과에서는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 숙려 기간이 길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질적 분석에서도 입양을 보낼 것으로 마음을 굳힌 출산 전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숙려 기간에 대한 부담감을 표명하였다. 입양 숙려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은 자녀 양육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숙려기간 동안 순간적인 기분으로 양육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발견되었다.

표 V-3 주요 분석 결과: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구분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입양을 경험했거나 경험하지 않은 두 집단 모두 높음 (입양허가제도 약 70%, 입양속려제도 약 80%) • 입양속려기간에 대해서 입양 경험 청소년은 길다고, 입양 경험 없는 청소년은 짧다고 인식함 • 입양속려제도에 대한 개선점으로 입양 경험 청소년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 국내/해외 입양 간 유보적인 태도 • 자녀 입양 보낸 후 가장 필요한 지원은 아이에 대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허가제에 따른 출생신고 및 입양 속려제도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음 (입양 허가제) • 출생 신고에 대한 우려는 출소 후 당장 닥칠 문제들 (부모에게 알려짐, 취업 불이익 등) • 본인에 대한 정보 노출 및 성인이 된 자녀가 다시 찾아 올 것 등 미래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고 있었음 • 출생신고 시 양성차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함 (입양 속려제도) •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양육하도록 마음을 바꾸게 하는데 효과적 • 양육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순간적으로 양육 선택하는 문제가 지적됨 • 양육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한부모들에게는 부담 (공개 입양에 대한 의견) • 본인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함

4) 퇴소 후 생활에 대한 의견

한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미혼모자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한 한부모 지원은 특히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국내 한부모 지원 정책은 모성 지원의 차원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를 입양 보낸 “과거 한부모”는 정부의 한부모 지원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 정책의 관점에서 자녀를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들도 학업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모성 지원 차원에서의 정책이 아닌 청소년 정책 그리고 여성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 시설을 퇴소하고 나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학업의 지속과 취업이다. 국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는 학교를 중퇴하였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검정고시 합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통해 지원 받는 직업 교육은 대부분 단순 기술직에 해당하는 직종이라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는데 청소년 한부모들은 본인의 적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따라가기에 능력과 의지가 약해 보였다. 자립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면접 대상자 중에서 소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표 V-4 **주요 분석 결과: 퇴소 후 생활**

구분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시설 퇴소 후 생활	-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중퇴하고 취업 경험이 취약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이 약함 • 검정고시 보다는 학교로의 복학을 희망 • 돈을 벌고 싶은 욕구는 강하나 희망하는 직종은 단순 기술직, 전문 직종을 갖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음 • 본인 적성에 대한 인지 부족 • 미래 결혼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입양 선택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퇴소 후 돌아갈 집이 마땅하지 않으며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 <양육 선택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한 시설을 통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

면접 대상 청소년 한부모 대부분은 미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미혼 출산에 대해서도 향후 배우자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한부모가 본인 개인 정보를 입양 보내는 자녀에게 기꺼이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들의 이러한 바람과 희망에도 불구하고 미혼부와 헤이지고 난 후 만나게 된 새로운 남자들은 미혼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청소년 한부모가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한부모가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미혼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남자와 다시 어울리게 되고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들이 또 다시 미혼부와 비슷한 수준의 남자와 어울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여 자녀를 입양을 보내게 되는 악순환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5) 정부 정책 관련 사항

정부 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양적 분석을 하여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청소년 한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를 분석하였다.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입양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와 비교하여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녀를 양육할 것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따른 본인의 필요에 의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보를 보다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 탐색에 대해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반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이러한 공적인 지지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 양육을 결정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이러한 공적인 지지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입양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 어느 방향이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자녀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급한 욕구인 자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인 한부모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복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인지도가 있을 때 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보다 많은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상담과 위기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접에서도 면접 대상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역시 자녀 교육과 취업에 대해 적절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된 바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입양과 양육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주거 환경이다.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원가족과 미혼부와의 단절로 인해 미혼모자 시설을 퇴소하여 돌아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다. 대부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으로 가지만 정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시설 수의 부족과 함께 공동 거주지와 같은 보다 다양한 유형의 주거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거 욕구가 다양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 위탁 제도는 현재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때 까지 자녀를 맡겨두고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 질 때 양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모와 친생자 간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고 있지만 부모의 반대 그리고 본인의 자립성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면접 대상자 중에서 가정 위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또 다른 면접자는 위탁모 양육이 자녀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지적하였다.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제적인 취약성과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기대 수준과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었다. 면접 대상 청소년 한부모 중의 몇몇은 자녀 양육에 대한 욕구가 중산층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욕구 수준으로 인해 정부의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현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양육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자신들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볼 때 현재의 정부 지원을 가지고는 자녀를 키우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면접 대상자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양육을 선택한 면접 대상자는 사무직 아르바이트로 일해서 받는 본인의 월급과 현재 지원되는 정부 정책으로 만으로도 충분히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한부모 지원 정책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의지를 꺾고 복지 수급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면접 대상자 중의 한명은 복지 수급과 자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본인의 월급이 인상되는 경우 그 동안 받아오던 수급 지원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신청 주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면접 대상자들은 동사무소로부터 제도를 이용해 보라는 권유를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다고 토로하였다. 가족 혹은 또래 집단과 같은 사회적인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혼자서 자녀 양육과 근로라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취득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V-5 주요 분석 결과: 정부 정책 관련 사항

구분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정부 정책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자녀 양육 관련 정책 인지도는 입양 경험 없는 청소년이 더 높음 일반적인 한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0% 내외 청소년 지원 정책 중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지만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의 질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이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됨 미혼모 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유형의 공동거주지 희망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자녀의 건전한 발달, 또래 엄마 집단과의 어울림, 취업에 불이익 가정위탁제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복지 정책에 대한 의존도 및 근로 의욕 저하 지자체 전달 체계 및 미성년으로서의 제약 요인

청소년 한부모들이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한 개선 사항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이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취업 시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전한 발달,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져 결국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청소년 한부모와 그들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들이 미성년인 경우 미성년이기 때문에 직면하고 있는 제약 조건들이 지적되었다.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들은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결혼 가정이라 본인을 지지해 줄 적당한

보호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한부모 본인뿐만 아니라 헤어진 관계의 미혼부도 청소년인 경우가 있어 미성년자로의 제약은 더욱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에 정부 제도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성년인 청소년 한부모들을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향후 정책 방안

본 절에서는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최근 입양 제도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인 입양 허가 제도와 입양 숙려 제도를 중심으로 모색하고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입양과 양육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쟁점 사안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한부모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능력 강화, 현대적인 맥락에서의 가족 기능 강화, 사회적인 인식 개선 방안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입양 허가 제도

새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를 막론하고 신고 되어 등록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입양 허가제에 따른 출생 신고 문제는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하여 아동을 출생 신고하여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출생과 함께 신고 되고 등록되어야 한다는 인권적인 시각에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문제의 본질은 아동의 출생 신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생 신고에 있어서 양성 차별, 가족관계등록법에서의 지나친 정보 공개, 친양자관계등록부상에서의 친모에 대한 개인 정보 공개 문제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취업 등의 경우 서류 제출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사회적 관행의 문제이다. 현재 입양 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출생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이러한 관행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입양과 양육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배경에는 법적인 체계에 있어서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깊게 내재되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등록할 때 친모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문제, 과거의 결혼 관계 및 자녀 관계에 대해 필요 이상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해 주기에는 한계가 많다. 결혼 및 개인 삶의 행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 역시 시대 상을 반영하여 변화될 필요가 있다.

취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행정 처리에 필요한 부분만을 요청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의 복지 제도와 관련하여 부양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재 부양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면 된다. 과거에 결혼을 몇 번 하였는지, 자녀를 낳은 적이 있는지 등 실질적인 행정 처리와 무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요청을 사양하고 이러한 요청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친양자관계등록부 상에서의 친모에 대한 정보 공개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친모가 허락하는 경우 그리고 허락을 하는 만큼 만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인이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친생 부모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보호 받을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친모가 동의하지 않는데 입양인이 친모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찾아오는 경우 입양자와 친모 간의 건강한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현행 입양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친양자관계등록부는 입양특례법에서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입양인이 친모의 인적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입양 숙려 제도

친생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입양 숙려 제도의 근본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 방법론은 보다 실효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입양 숙려기간은 고통의 시간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고통을 줄여주고 청소년 한부모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자녀를 직접 키울 때 정부나 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임신 초기부터 제공하여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학습 지원, 기술 교육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원가족의 압력에 의해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바 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과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입양숙려기간 동안 제공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들이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설에서 산후조리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비용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 위탁 제도는 입양 숙려기간 동안 입양과 양육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유용한 해결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적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직접 양육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반대, 경제적인 취약성 등으로 인해 양육할 여력이 되지 않아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어느 정도 자립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자녀를 맡아 키워 줄 수 있는 지원 체계는 이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가정위탁제도의 활용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와 친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위탁모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한 멘토링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부모 기술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조손 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탁하여 돌봐 주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가정위탁모들을 활용하되 조손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과는 다른 욕구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아동과 청소년 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아동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지 않기 위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 위탁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및 자녀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시켜 청소년 한부모와 아동 간의 친생 관계가 잘 유지되면서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입양을 보낸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입양을 보낸 청소년들은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부모 지원이나 학교를 통해 수행되는 일반 청소년 대상 지원 정책 모두에서 사각지대에 해당하고 있다.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일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밖에 없다. 하지만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들은 일반 취약 계층 대상 복지 지원이나 취약 성인 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사각 지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양 보낸 청소년을 어떠한 제도권의 틀 안에서 흡수하여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원 혹은 여성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교라는 제도권 밖에 속해 있고 성인 여성에 비해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혹은 학교 편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에 편입할 경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입양을 보낸 경험에 대해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립 지원 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들이 또 다른 원하지 않은 임신과 입양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학교로의 편입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청된다 하겠다.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후관리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입양 보낸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정보를 받아 보기를 원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 않는 사람도 많고 더 이상 입양 시설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여성들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여 이들의 정신적인 후유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한부모의 발생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잇달아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입양을 보낸 후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혼 임신과 입양의 반복은 한부모 여성 자신에게도 불행이지만 입양 대상 아동을 계속 발생시키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한 성장과 입양 대상 아동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청소년 한부모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청소년 한부모의 문제를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성교육 및 피임 방법의 전달,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및 상담, 중퇴 및 퇴학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 한부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남녀 간의 성관계는 자유롭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매우 낮은 네덜란드의 경우 학교 내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교육은 특히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윤정 외 2012). 예기치 않은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성교육의 내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 교육을 통해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 보다 생물학 교과서 등 정규 과목을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관련 있는 정규 교과 과목을 통해 성에 대한 가치, 실제적인 피임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제공과 더불어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 전에 제도권 학교에서 이탈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한부모들을 학교 안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교 차원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를 “일탈 청소년”이 아닌 “취약 계층” 청소년으로 인식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임신하게 된 배경에는 가족의 해체와 가족으로부터의 단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이러한 취약한 환경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 내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발생한 경우라도 학습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본래 목적은 높은 성적과 좋은 점수를 보이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 한부모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본다.

5)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능력 강화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경제적인 자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적인 자립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건강한 성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리고 무능력한 남성에게 의존하여 또 다른 원하지 않는 임신하는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검정고시 지원과 기술 교육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술 교육에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보수가 지원되어 경제적인 자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적성과 취향을 살려 주기에는 획일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교 생활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 위주의 직업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 교육을 전달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세분화 하여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로 활동과 기술 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들이 복지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와 고용이 선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를 적용하여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의 세액을 환급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6) 현대적인 맥락에서 가족의 역량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맥락에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족의 역량 강화는 신사회적 위험이 도래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가족 해체 및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등장하게 되는 가족 해체 및 다양한 유형의 가족은 우리 사회가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이면서 동시에 보수적인 국내 상황에서는 적용하기에 역부족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 해체는 대부분 빈곤, 폭력, 학대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어 가족 해체 자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충격 및 고통으로 연결되고 있다.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불행한 가족 해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가족 해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해체된 가족과 재구성된 가족 안에서도 가족 구성원들 간에 상호 지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가족 해체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은 더욱 많이 우리 사회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문제도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적자”의 개념을 사회 변화에 따라 현대적인 의미에서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불법 낙태, 영아 유기, 해외 입양 등 청소년 한부모와 입양을 둘러싼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본다.

7) 사회적인 인식 개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낙태 금지, 해외 입양 감소, 양육모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무색할 정도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도 부정적인 경향이 크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도 국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된 것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부진한 실정이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이들이 사회 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만큼이나 중요하다.

입양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입양에 대한 홍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입양에 대해 청소년 한부모가 막연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입양인이 입양 가족과 행복한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파양으로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입양에 대한 올바른 현실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영실 (2002). **미혼 양육모! 어떻게 도울까**. 서울시 여성복지 연합회 제7회 서울시 여성복지 세미나.
- 강은숙, 김은나, 이숙자 (2010). **미혼모의 아기장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계간사회복지, 187, 106-127.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제6차(201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발간등록번호 11-1460736-000038-10). 충북: 질병관리본부.
- 김만지 (2000). **미혼모 스트레스의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숙 (2006).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6(2), 3-36.
- 김미숙, 박민정, 이상헌,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 (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정책00-10).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 (2003). **한국의 빈곤정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와 쟁점: 가족부양 '범위' 및 '부양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9, 193-223.
- 김유순, 김은영, 원혜경, 이성희 (2008). **청소년 미혼모 현장조사연구를 통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서울: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김혜영, 윤홍식 (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44(1), 5-51.
-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연구보고 2009-10).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2010). **십대청소년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경험: 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한국여성학, 26(4), 101-131.

- 김혜영, 이미정, 이택면, 김은지, 선보영, 장연진 (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연구보고 2010-56). 서울: 여성가족부.
- 남미애, 홍봉선 (2011).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부모됨의 경험과 의미: 시간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3), 141-170.
- 노충래, 김원희 (2004). **시설거주 미혼모의 입양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7, 49-79.
- 노충래 (2012). **헤이그 입양협약과 관련된 아동복지의 과제**. 아동과 권리, 16(2), 30-340.
- 도미향, 정은미 (200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2), 1-11.
- 박복순 (2004).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민사법연구, 12(2), 27-66.
- 박숙희 (2001). **미혼모의 아동양육에 관한 연구: 미혼모 보소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미영 (2000). **미혼모 발생 요인 분석: 미혼모집단과 비교집단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3.5.24.).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보도자료.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86755&page=1에서 2013년 6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3.4.5.). **입양숙려기간, 최대 70만원 지원**. 보도자료.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84588&SEARCHKEY=TITLE&SEARCHVALUE=입양숙려기간에서 2013년 6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3.8.). **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보도자료.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67631&SEARCHKEY=TITLE&SEARCHVALUE=아동입양에서 2013년 6월 10일 인출
- 사연경 (2002). **한국 미혼모 아동 양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청구논문.
- 석광현 (2012). 국제입양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의 제 문제: 입양특례법과 헤이그입양협약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6(3), 365-418.
- 성영혜, 한성심 (1996). 한국 가족법상의 혼인의 출생자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1(1), 118-130.
- 송다영 (2006). 미혼모가족을 위한 사회권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회투자 국가로의 전환과 사회복지 노동시장, 327-333.
- 신운정 외(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재진, 김지혜 (2006). 시설미혼모의 양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동과 연구, 10(4), 605-624.
- 여성가족부 위드맘(2013). (<http://withmom.mogef.go.kr/>)
- 유희정 (2001). 부모의 이혼과 부모간의 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2), 57-78.
- 윤미현, 이재연 (2000). 10대 미혼모의 유아입양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2(1), 67-82.
- 윤홍식 (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상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 이명순, 박주현 (2008). 입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13(3), 187-205.
- 이미정 (2008),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7차 여성정책포럼.
- 이숙희 (2006). Triangulation 방법을 이용한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관련 건강상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0(2), 180-188.
- 이재정 (2003). 양육미혼모의 욕구에 대한 질적 분석과 사회복지실천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수 (2003). 미혼양육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주 (2011). 원가족이 경험한 양육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143-175.

- 정경순 (2008).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 아동간호학회지, 14(2), 186-194.
- 정용순 (2003). **미혼양육모에 대한 사회적응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제석봉, 석창훈, 차명진, 이해정, 윤희정 (2008). **학생미혼모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하반기 정책연구 2008-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천혜정, 배선희, 송말희, 송현애, 전길양 (2002). **미혼모 보호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본 10대 미혼모의 교육요구도와 시설운영에 관한 연구 양육결정체험**. 대한가정학회지, 40(9), 63-78.
- 최승희 (2002). **10대 미혼모에 대한 임상적 개입의 필요성**. 사회과학연구, 6, 61-71.
- 최승희 (2003). **자녀를 상실한 미혼모들을 위한 슬픔완화 지지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한국아동복지학, 16, 251-276.
- 최승희 (2008). **입양으로 자녀를 상실한 미혼모들의 슬픔 연구**. 사회복지연구, 36, 203-225.
- 허남순, 노충래 (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헤이그국제사법위원회 (2011). http://www.hcch.net/index_en.php.
- 홍순혜, 김혜래, 이해원, 변귀연, 정재연, 이상희 외 (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광주: 국가인권위원회.
- Blanton, T. L., & Deschner, J. (1990). *Biological mothers' grief: The postadoptive experience in open versus confidential adoption*. Child Welfare, 69(6), 525-535.
- Chosun.com (2013.4.1.). **입양 막는 입양특례법...월평균 120건서 5건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503785> 2013년 6월 10일 인출
- Donnelly, B. W., & Voydanoff, P. (1996). *Parenting versus placing for adoption: Consequences for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45, 427-434.
- KBS NEWS 12 (2012.9.7.). **불법입양 부추기는 입양법...미혼모들 눈물**.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32024&retRef=Y&source=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ty.top&where=nexearch&ie=utf8&query=kbs불법입양부추기는입양법&에서 2013년 6월 10일 인출
- Roles, P. (1989a). *Saying goodbye to a baby: The birth parent's guide to loss and grief in adoption*. Washington: CWLA.

- Roles, P. (1989b). *Saying goodbye to a baby: The counselor's guide to loss and grief in adoption*. Washington: CWLA.
- SBS (2012.9.13.). 출어든 입양 아동... '베이비 박스'로 간 사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35480>에서 2013년 6월 10일 인출
- Simone, M. D. (1996). *Birth mother loss: Contributing factors to unresolved grief*.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4(1), 65-76.
- Tracy, E. M., & Whittaker, J. K. (1990). *The social network map: Assessing social support in clinical practice*. *Families in Society*, 71, 461-470.

Abstract

Research on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Youth Single Parent Family II: Policy Recommendation for Youth Single Mothers faced with Changes in Regulation on Child Adoption

In Korea currently child adoption policies has strengthened children's rights in conflict with right of single mothers. In such policy changes, this study seeks policy recommendation for youth single mothers who face with choices between sending away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raising them on their own. This study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a survey of 378 youth single mothers.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3 youth single mothers. Several important features of single mothers were examine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ackgrounds of families, events on pregnant and child births, choices on sending away their children for adoption, lifes after leaving out welfare facilities, and opinion on the government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direction for child adoption policies such as regulations of permission on child adoption and deliberation on child adoption. As fundamental answers for solving complicated issues relates to single mothers this study suggested prevention of unwanted pregnant, improving independency of single mothers, empowerment of families, and changes of social norms toward single mothers

Keywords: youth single mother, Hague Adoption Convention, Act on Special Cases and Procedure of Adoption, Regulation on mature deliberation on child adoption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유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가지 종단부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 · 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 · 김형주 · 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 · 강석영 · 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 김나연 · 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 · 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 · 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남미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재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나다 순)

감 수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장)

연구보고 13-R17-2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998-1 94330

978-89-7816-923-3 (세트)